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46-14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 5





# 목 차

## 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요

1. 농안법의 역사 ..... 1
2. 농안법 이전 법령과 개정 주요골자 ..... 2
3. 농안법의 구성 ..... 5
4.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 ..... 6

## II.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1. 농수산물 주산지 지정 등 ..... 8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 10
3. 계약생산 ..... 13
4. 자조금 제도 ..... 18
5. 가격예시 ..... 23
6. 정부비축 국내수매사업 ..... 24
7.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 25
8.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 ..... 28

## III. 정부비축사업 일반현황

1. 정부비축사업 연혁 및 정의 ..... 41
2. 정부비축사업 운영체계 ..... 42
3. 정부비축사업 추진현황 ..... 43
4.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 45

# 목 차

IV. 정부비축 국내수매사업 .....	50
V. 정부비축 수입판매사업 .....	52
VI. 농수산물도매시장	
1.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분류 .....	58
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	63
3.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	64
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 .....	69
5.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72
6.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75
7.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78
8. 공공출자법인의 설립 .....	79
9. 중도매인의 허가 .....	80
10. 시장도매인의 지정과 영업 .....	87
11.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	93
12. 매매참가인의 신고 .....	95
13. 경매사의 임면 .....	96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	99
15. 출하자 신고 .....	102
16. 수탁판매 원칙과 매매방법 .....	103

# 목 차

17. 거래의 특례 .....	111
18. 수탁의 거부금지 가능사유 .....	113
19. 출하대금결재 .....	114
20.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117
2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120
22. 하역업무 .....	123
23.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126
24. 도매시장 등의 평가 .....	127

## **VII.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 공판장의 개설·운영 .....	131
2.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운영 .....	135
3. 산지유통제도 .....	139
4. 농수산물유통기구 정비 .....	143
5.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	145
6.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	147
7.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운영 .....	153

# 목 차

## VIII.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1. 기금의 설치 .....	155
2. 기금의 조성 .....	158
3. 기금의 운용·관리 .....	159
4. 기금의 용도 .....	160
5. 기금의 회계기관 .....	166
6. 기금의 운용계획 .....	168
7. 결산보고 .....	170
8. 기금의 손비처리 .....	172
9. 여유자금의 운용 .....	173

### < 별 첨 >

1. 농안법관련 판례 .....	175
2. 농안법관련 주요질의 및 유권해석 .....	193
( 농림수산물식품부 )	
3. 농안법관련 질의응답 .....	219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요

## 1. 농안법의 역사

국내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농협 및 수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당시 그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고급화의 요구가 커지면서 시장거래가격도 높게 형성되었다. 특히 고추, 마늘, 양파중심의 필수양념류의 가격이 일반 물가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정부차원에서의 농수산물가격안정 시행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에 그동안 시행되어온 『중양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축산법, 양곡관리법 등 농수산물유통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유통개선사업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 연혁

### 변천과정

- 1951년 6월 22일 『중양도매시장법』 제정
  - 전문 16개,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 상공부에서 시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
- 1973년 2월 6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업무를 상공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전문 37개 조문)
- 1976년 12월 3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전문 68개,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개정

### STORY

### “결혼반지 대신 고추를...”

1970년대 후반에는 고추를 비롯한 마늘, 양파 등 필수 양념류의 가격 폭등이 아주 심하였는데, 고추값이 600g당 1만원으로 당시 자장면 한 그릇 값이 2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가격이었다.

이렇게 가격이 치솟다 보니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 대신 고추를 끼워주는 만화가 신문에 등장할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는 고추를 ‘금(金)추’라고 불렀다.

## 2. 농안법 이전 법령과 개정 주요골자

### □ 조선총독부가 시장규칙 제정(1914년)

- 시장조사사업 실시(1913 ~ 1917년)
- 시장을 4종류로 구분하고 시장의 개설과 감독, 상권 장악기도
  - 1호시장 : 한국의 전통시장(정기시장)
  - 2호시장 : 공설시장(일용품시장)
  - 3호시장 : 청과물·수산물의 경매식 시장 및 땔나무 시장→오늘날 도매시장
  - 4호시장 : 곡물과 유가증권 거래시장
-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기나라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부산중앙도매시장 개설(1935년) \* 일본은 1923년에 중앙도매시장법 제정

### □ 「중앙도매시장법」 제정(1951.6.22)

- 주요골자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만 허용
  - 개설 : 시청소재지에 개설(1도시 1시장체제), 상공부장관의 개설허가 필요
  - 운영 : 공익상 인정되는 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1973.2.6)

- 주요골자
  - 소관부서 : 상공부 → 농수산부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 → 지방정부
  - 개설 : 1도시 1시장 원칙 명문화, 농수산부장관의 개설허가 필요
  - 기금 : 시설기금 적립의무화(수수료 및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의 재투자, 정부의 재정지원 명문화)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1976.12.31)

-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
- 주요골자
  - 개설 : 1도시 1시장제 폐지
  - 운영 : 도매업무 대행제 → 지정업체
  - 농수산물 가격 및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판매·비축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확충 운영



## □ 제7차 일부개정(1993.6.11, 법률 제4554호)

### ◦ 주요내용

- 지정도매법인에 수탁판매외에 매취판매를 허용
- 소매상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 구성과 경매참여 허용
- 모든 수입 농산물은 반드시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판매토록 의무화
- 경매방식을 거수수지식과 전자식으로 한정
- 산지경매식 집하장의 공판장 전환허용 조항 신설
-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 ◦ 소위 「농안법 파동」의 직접적 계기가 됨

## □ 제8차 일부개정(1994.11.1, 법률제4785호)

### ◦ 「농안법 파동」이후 마련된 유통개혁대책을 반영

### ◦ 주요내용

-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개영업 허용
- 포전매매의 제도화 및 산지수집상 등록제 도입
- 지정도매인의 명칭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변경하고, 지정유효기간을 3년이상 10년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출자법인제도 도입으로 관리·운영 일원화를 가능하게 함
-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제도 및 중도매인의 상장애외품목거래 허용
- 출하자의 경락 최저가격제시제 도입

## □ 제9차 일부개정(1994.12.31, 법률제4847호)

### ◦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주요내용

-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음
-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
- 농산물의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 제12차 전문개정(2000.1.28, 법률제6223호)

- 농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 주요내용
  - 농업관측, 가격예시,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등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수급안정 프로그램 반영
  -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
  -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부담
  - 민간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도매시장 개설 허용
  -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제도·보증금납부제도·폐업허가제도·휴업승인제도 및 매매참가인의 등록제도 등을 폐지

#### □ 제20차 일부개정(2007.1.3, 법률제8178호)

-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 마련
  - 수탁거부금지 의무의 완화,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등

#### □ 제23차 일부개정(2008.12.26, 법률제9178호)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
  -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위탁기관 변경
  -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으로 거래한 물품의 도매시장 반입 예외 허용

### 3. 농안법의 구성

농안법은 현재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은 91개 조문, 시행령은 38개 조문, 시행규칙은 58개 조문으로 되어있다.

#### 농안법의 구성

##### ● 제1장 총칙(제1조 ~ 제3조)

-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적용배제 등)

#####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제4조 ~ 제16조)

-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계약생산, 자조금 제도, 가격예시, 과일생산시의 생산자보호, 몰수농수산물 관리, 유통명령, 비축사업, 수입추천, 수입이익금의 부과 등

#####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제17조 ~ 제42조)

- 도매시장의 개설, 개설구역, 허가기준, 개설자의 의무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인수·합병, 공공출자법인
- 중도매업허가, 매매참가인신고, 경매사임면 및 신고, 산지유통인등록, 출하자신고
- 수탁판매원칙, 매매방법, 경매 또는 입찰방법, 거래의 특례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수탁 거부금지 등
-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하역업무, 대금결제, 수수료징수제한, 지방도매시장 운영특례

##### ●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제43조 ~ 제53조)

- 공판장의 개설 및 운영,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특례, 민영도매시장
- 집하장, 산지유통센터, 포전매매

#####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제54조 ~ 제61조)

##### ●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제62조 ~ 제78조)

- 정비기본방침, 소매유통개선, 종합유통센터 설치
- 유통자회사, 교육훈련, 평가실시, 도매시장관련 위원회 등

##### ● 제7장 보칙(제79조 ~ 제85조)

- 보고, 검사, 명령, 허가취소 등

##### ● 제8장 벌칙(제86조 ~ 제91조)

## 4.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

유통산업발전법	농안법
<p>□ 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li> <li>- 대규모점포, 체인사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등의 기준 설정 및 육성, 지도</li> <li>- 유통표준코드, 유통표준전자문서, 판매시점정보관리, 물류설비 등의 촉진</li> </ul> <p>※ 1997년4월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과 『도·소매업진흥법』 을 폐지하고 동법을 제정</p> <p>□ 법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총칙(제1조~제4조)</li> <li>○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제5조~제7조)</li> <li>○ 제3장 대규모점포 등(제8조~제14조)</li> <li>○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제15조~제20조)</li> <li>○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제21조~제25조)</li> <li>○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제26조~제35조의2)</li> <li>○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제36조~제43조)</li> <li>○ 제8장 보칙(제44조~제48조)</li> <li>○ 제9장 벌칙(제49조~제52조)</li> </ul>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li> </ul> <p>※ 유통산업 중에서 농수산물을 다루는 특별법적 성격</p> <p>□ 법의 구성 : Page 3 참조</p> <p>□ 적용배제(제3조 :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배제</li> </ul>

## 외국의 도매시장 관련 법률

### ● 일본

- 「도매시장법」으로 도매시장 전반에 걸쳐 규제 및 지도

### ● 미국

- 국가 차원에서 도매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음
- 「신선농산물법」과 같이 시장내외를 불문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만 운영

### ● 영국

- 도매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음
- 「농산물 및 원예법」이 있으나, 도매시장에 관해서는 가격과 규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 밖에 없음

### ● 프랑스

- 「공익시장」을 지정하고 1953년 政令에 따라 규제

### ● 중국

- 농업부 관리지침으로 시장관련 규제 및 지도

### ● 대만

- 「농산물 시장거래법」을 제정 운영

## II.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1. 농수산물 주산지 지정 등

#### 관련조항

####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 ①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③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 □ 주산지 제도 운영목적

##### ◦ 농수산물의 집단생산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과 생산성 증대

- 농림수산부 고시 제84-11호('84.3.14), 소득작목 주산단지 지정고시
- 채소류 위주로 주산단지 추가지정·변경 등 실시

□ 산지와 주산지 관계

- 산지는 주산지의 전단계로서 산지간의 경쟁을 통한 지역우위성에 의해 주산지가 형성( \*는 산지단계)
  -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다수의 생산농가가 한데 모여서 존재(생산의 집단화)\*
  - 그 생산농가의 대부분이 당해 농산물을 기간, 생산부문으로 취급(생산의 집단화)\*
  - 그 지역의 총판매량은 거래하는 판매시장으로부터 명산품으로 인정될 정도로 많음(판매시장의 점유 및 확대)\*
  - 그 지역의 생산농가가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에 있어서 기능적 조직을 형성(생산·출하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

□ 주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시행령 제4조)

-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주산지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시행령 제5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

□ 주산지 운영효과

- 생산측면 : 개별생산의 지역적인 집단생산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규모 확대와 대규모 생산의 장점 추구
- 유통측면 : 유통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상품유통 비용의 절감효과, 생산 및 출하의 계획화,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2.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 관련조항

### 제5조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2008.12.26>
- ④제3항에 따른 농업관측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26>

### 가. 농업관측사업의 연혁

#### □ 법률적 연혁

- 「농업기본법」 (1967) 및 「농업농촌기본법」 (1999): 정부의 농업관측 의무화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 농업관측협의회 구성
- 「농안법」 (2000): 농업관측위원회로 격상, 농업관측전담기구 설치
- 「농안법시행규칙」 (2000): 농경연을 관측전담기구로 지정
- 「관측사업실시요령」 (2000): 농업관측센터 설치, 출연금으로 지원
- 관측전담기구 명칭 변경(2002.9.10): 농업관측센터 ⇨ 농업관측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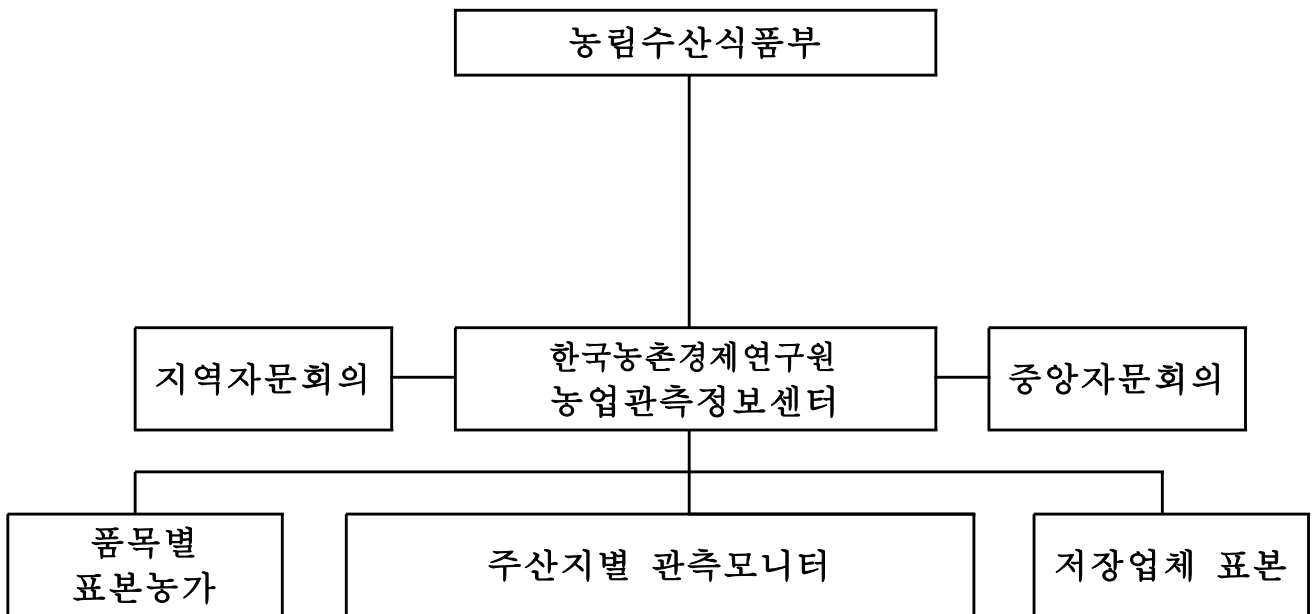
#### □ 사업시행의 연혁

- 1996 ~ 1998: 농업관측팀 / 6개 채소 / 월보 / 농림부 사업국 관리
- 1999 : 농경연 농업관측센터 / 월보(채소 6 , 과일 3), 분기보, 연보 / 농림부 통계국 관리



- 2000 : 축협중앙회 축산관측을 농업관측센터로 통합 / 18개 농축산물(채소 7, 과일 6, 축산 5) / 육계 월보로 개편
- 2001 : 농경연 농업관측센터 품목확대 / 월보 24개 농축산물(채소 9, 과일 5, 과채 5, 축산 5), 분기보, 연보
- 2002 : 관측품목 26개로 확대(채소 9, 과일 6, 과채 6, 축산 5)
- 2006 : 관측품목 27개로 확대 (채소 9, 과일 6, 과채 7, 축산 5)
- 2007 : 관측품목 28개로 확대 (채소 9, 과일 6, 과채 7, 축산 5, 곡물 1)
- 2008 : 관측품목 29개로 확대 (채소 9, 과일 6, 과채 7, 축산 5, 곡물 2)

□ 농업관측 사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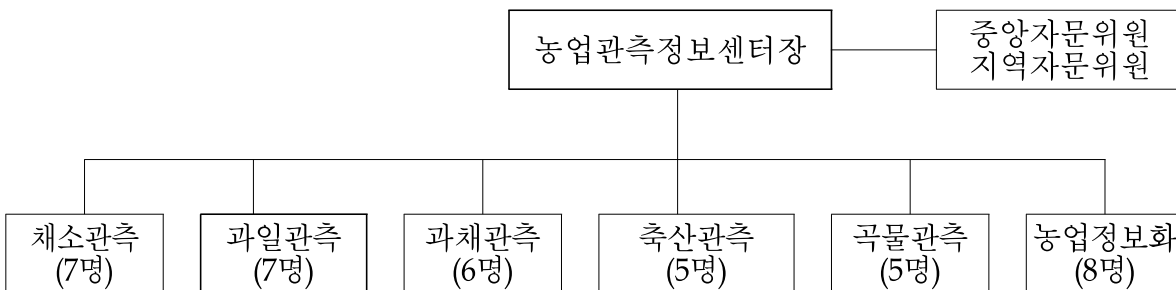


## 나. 농업관측정보센터 현황

### □ 주요 기능 및 임무

- 연차 동향 및 전망 : 거시경제, 농업경제, 주요 품목의 국내외 수급 및 가격동향 분석과 중장기 수급전망
- 분기 동향 및 전망 : 거시경제, 농업농촌경제 동향분석 및 중기 수급전망
- 월간 동향 및 관측 : 품목별 수급 및 가격동향 분석 및 단기 전망
- 관측 전망기법 개발 : 단기·중장기 예측모형 개발, 관측정보시스템 개발
- 농정과제 도출
  - 품목별 수급분석 및 중단기 전망으로부터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국내외 중장기 농업전망으로부터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 조직(2009말 현재)



※ 정규직 28명, 위촉직 10명(총 38명)

### □ 관측품목

- 1999년 : 9개(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사과, 배, 포도)
- 2000년 : 18개(오이, 감귤, 수박, 참외,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추가)
- 2001년 : 24개(감자, 당근, 양배추, 호박, 토마토, 단감 추가)
- 2002년 : 26개(복숭아, 딸기 추가)
- 2003 ~ 2005년 : 26개 품목(품목 확대보다는 관측정보의 정확성 제고)
- 2006년 : 27개 품목(풋고추 추가), 쌀 시범사업 실시
- 2007년 : 28개 품목(쌀 추가)
- 2008년 : 29개 품목(콩 추가)
- 2010년 : 31개 품목(버섯, 오리 추가)

### 3. 계약생산

관련조항

#### 제6조(계약생산)

- ①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 ②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가. 현황

- 1995년 정부·농협 공동으로 수급안정사업자금을 조성(정부 80%, 농협 20%), 이를 재원으로 계약재배 실시(농안법 제57조)
- 노지채소 7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당근), 시설채소 5(오이·호박·가지·풋고추·토마토), 과실 4(사과·배·단감·감귤), 감자 등 총 17품목 대상
- 지역농협이 파종기(생육전반기) 농가에 계약금 지급 및 물량 확보

(단위 : 천톤, 억원, '10.3.1 기준)

구분	품목	'09		'10(p)		조합수	농가수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노지채소 계약재배	8 (감자포함)	586	4,860	550	4,673	558	47,726
시설채소 약정출하	5	198	2,165	210	2,222	217	14,339
과실계약 출하사업	4	231	3,385	200	3,385	125	14,602
계	17	1,015	10,410	960	10,280	900	76,667

※ 국내 생산량대비 계약재배율 : 채소 10%, 시설채소15%, 과수 12%

조성액 중 정부자금(80%)은 10년간 융자, 무이자 조건임

## 나. 제도운용

- 계약물량은 농협·농가간 계약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및 소득보장
  - 노지채소는 (1단계) 농협 자체 산지폐기, 수매격리 등을 통해 출하 억제, (2단계) 가격하락 지속시 정부 개입

구 분	1단계(농협자체수매)	2단계(정부수매)
요건	▪ 소비지 및 산지가격이 최저보장 가격 이하로 하락 예상시	▪ 1단계 수매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재원	▪ 회원농협 적립금 및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시설채소는 「생산비+출하비용」 이하 하락시 품질저하품 출하억제, 「경영비+출하비용」 이하 하락시 산지폐기 등 물량 규제
  - ※ 최저보장가격 적용시 지속생산 부작용을 고려, 최저보장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수확작업비, 폐기처리 비용만 지원(예 : 오이 332원/kg)
  - 과실은 판매처, 판매시기 등 조절과 일정기간 저장 격리
    - ※ 정부와 생산자단체간의 유통협약을 통해 폐기 등 시장 격리(정부 비용 일부지원)

### 수급조절 적립금

- ◆ 농협이 계약재배 수급조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자금운용수익(이자), 농가의 계약위약금 등을 자체 적립·운용
- ◆ 규모 : 1,210억원(노지채소 675, 시설채소 196, 과실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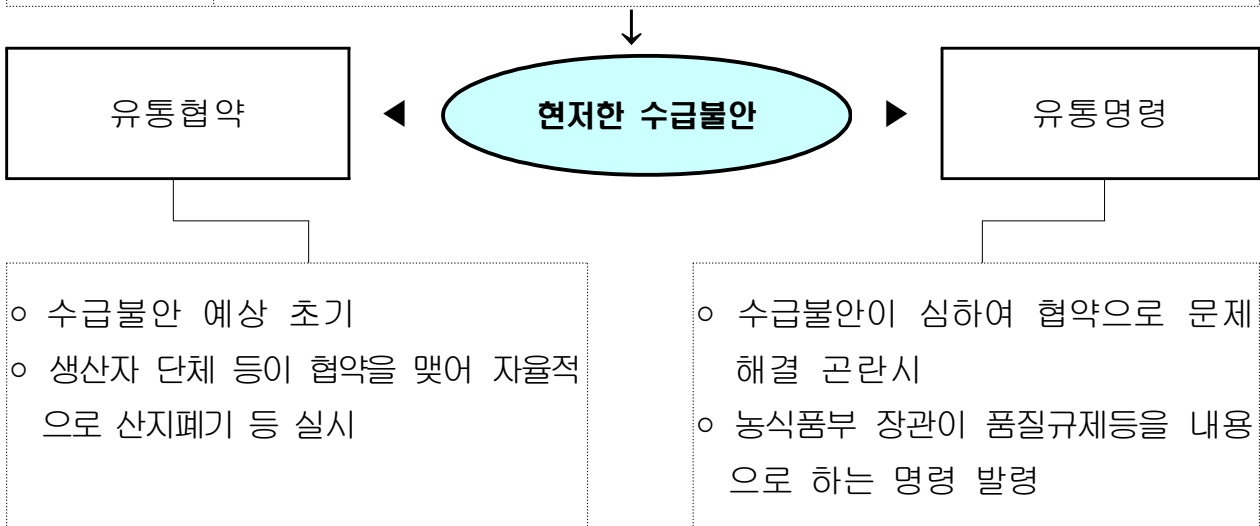
- 노지채소 및 과실의 계약물량 판매 및 정산
  - 가격안정대(± 20%) 범위내 손익은 농협에서 책임 처리
  - 가격안정대 초과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농가와 약정 배분율에 따라 결정
  - 가격안정대 초과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이익금 적립, 농가환원, 농협 수익처리 등

다. '10년 추진계획

-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사업추진지침 교육(3~4월)
- 노지, 시설, 과실 품목별 생산자단체 주관 농가와 계약재배 실시
  - 노지채소(4~10월), 시설채소(3, 9월), 과실(5~7월)
- 수급안정을 위한 출하조절, 유통협약 및 시장격리(수확기)

원예농산물 자율수급조절 체계

농업관측	: 파종, 생육단계(사전적 수급조절)  ↓ ◦ 관측센터에서 파종의향, 작황 정보 등 제공(월1회) ◦ 농가는 관측정보에 따라 면적·생산시기 조절 * 관측품목수 : ('08) 28품목 /40억원 →('09) 29/45 →('10) 31/53
계약재배	: 수확단계 이후(출하조절)  ◦ 생산기: 농협이 농가와 계약재배(물량확보) * 채소는 전체 생산량의 11%, 과실은 8%수준 계약 ◦ 출하기 : 가격동향에 따라 계약물량 출하조절 - 가격하락시 출하를 억제하고, 상승시 확대



< 참고 >

**채소류 최저보장가격 제도**

□ 목 적

- 채소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 참여농가의 물량을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폐기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 '98년 도입)

□ 대상품목

- 무(봄,고랭지,가을), 배추(봄,고랭지,가을,겨울), 고추, 마늘(한지형, 난지형), 양파, 대파, 당근(7개 노지채소 계약재배 품목)

□ 가격결정 기준

- 저장성이 낮은 품목(무,배추,대파,당근) : 경영비+자가노력비의 30%이내
- 저장성이 높은 품목(고추, 마늘, 양파) : 경영비+자가노력비의 100%이내

□ 보장방법

- 저장성이 낮은 품목
  - (1단계) 최저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농협 손실보전 적립금의 20%이내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체폐기
  - (2단계) 1단계 조치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정부자금으로 산지폐기
- 저장성이 높은 품목
  - (1단계) 최저가격이하로 하락 예상시 농협이 계약농가 생산물량 수매
  - (2단계) 1단계 조치에도 가격 미회복시 정부가 수매비축후 가격이 높을 때 판매

□ 품목별 최저보장가격

무(천원/10a)			배추(천원/10a)			대파 (천원/10a)	당근 (천원/10a)	고추 (원/600g)	마늘(원/kg)		양파 (원/kg)
봄	고랭지	가을	봄	고랭지	가을 (겨울)				한지형	난지형	
475	500	405	540	500	505 (650)	750	716	2,350	2,030	1,280	200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폐기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년도	품 목	사업기간	정 부		농 협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99	봄배추	4.6~6.30	3,730	318	7,164	609	10,894	927
	고랭지배추	7.21~7.31	5,690	402	7,960	963	13,650	1,365
	소 계		9,420	720	15,124	1,572	24,544	2,292
'00	봄배추	5.31~6.9	-	-	7,912	672	7,912	672
	가을배추	11.30~3.10	28,423	1,404	13,000	650	41,423	2,054
	마 늘	7.11~9.10	14,567	18,534	-	-	14,567	18,534
	소 계		42,990	19,938	20,912	1,322	63,902	21,260
'01	가을무	11.1~11.20	15,210	1,093	1,095	92	16,305	1,185
	가을 배추	11.1~11.20	41,932	2,672	8,335	661	50,267	3,332
	대 과	2.15~2.28	14,067	1,202	-	-	14,067	1,202
	조생양파	4.4~5.20	20,000	904	-	-	20,000	904
	마 늘	6.1~8.31	16,046	21,993	-	-	16,046	21,993
	양 과	5.10~5.31	10,412	2,616	-	-	10,412	2,616
	소 계		117,667	30,480	9,430	753	127,097	31,232
'02	월동배추	2.25~3.20	22,000	1,605	4,337	398	26,337	2,003
	조생양파	3.5~3.20	35,000	4,680	-	-	35,000	4,680
	대 과	3.1~3.25	2,808	670	861	201	3,669	871
	마 늘	6.10~9.7	1,602	2,489	-	-	1,602	2,489
	소 계		61,410	9,444	5,198	599	66,608	10,043
'03	봄배추	6.6~6.12	-	-	6,926	748	6,926	748
	봄 무	6.19~6.25	-	-	3,153	218	3,153	218
	마 늘	5.28~8.20	735	1,093	-	-	735	1,093
	소 계		735	1,093	10,079	966	10,814	2,059
'04	월동배추	1.9~2.26	27,691	1,520	15,270	1,066	42,691	2,586
	봄배추	6.10~6.16	-	-	6,380	648	6,380	648
	가을 무	11.12~11.25	28,139	1,492	8,000	559	36,139	2,051
	가을배추	11.26~12.15	32,678	1,560	12,663	683	45,341	2,242
	소 계		88,508	4,572	42,313	2,956	130,551	7,527
'05	월동배추	1.17~2.14	-	-	12,500	1,163	12,500	1,163
	겨울대과	1.17~3.31	26,468	6,213	5,312	709	31,780	6,922
	양과(생육기)	2.1~3.15	17,904	883	14,312	706	32,216	1,589
	마늘	8.30~9.10	296	635	-	-	296	635
	소 계		44,668	7,731	32,124	2,578	76,792	10,309
'06	마늘	8.28~9.8	325	697	-	-	325	697
	가을무	11.8~12.17	16,449	1,083	11,103	731	27,552	1,814
	가을배추	11.8~12.17	39,915	2,063	28,964	1,497	68,879	3,560
	겨울배추	11.8~12.17	4,906	286	3,551	207	8,457	493
	계		61,595	4,129	43,618	2,435	105,213	6,564
'07	겨울배추	2.10~3.20	3,045	227	22,620	1,691	25,665	1,918
	겨울대과	2.10~3.20	10,692	2,428	6,534	1,484	17,226	3,912
	계		13,737	2,655	29,154	3,175	42,891	5,830
'08	고랭지무	9.29~10.20	-	-	27,645	859	27,645	859
	고랭지배추	9.29~10.20	-	-	4,545	412	4,545	412
	가을배추	11.10~12.14	40,443	2,091	50,289	2,600	90,732	4,691
	계		440,443	2,091	82,479	3,871	122,922	5,962
'09	가을배추	11.16~12.15	18,050	911	39,650	2,000	57,650	2,911
	계		18,050	911	39,650	2,000	57,650	2,911

## 4. 자조금 제도

### 관련조항

### 제7조(자조금의 적립지원)

①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매확대, 수요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造成·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004.12.31, 2006.12.28, 200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조금제도 운영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시장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 \* 법률상의 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하여 특정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기금(check-off funds) 또는 목적기금의 성격

#### □ 추진경위

- '90년 농발법에 자조금제도의 근거 마련
- '93년 신농정 5개년계획에 품목별생산자조직 육성 주요과제로 포함
- '98년 생산자조직 지원 농안기금 확보, 품목별전국협의회 기능 강화 추진
- '00년 자조금제도 및 품목조합연합회 근거 마련(농안법, 협동조합법)

####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시행령 제8조)

- 생산자단체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
- 자조금의 용도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당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이나 유통조절명령(당해 농수산물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 당해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및 당해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추진을 위한 사업
- 출하조절 등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보조금의 지급(시행령 제9조)

-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조직이 정비되어 있는 등 자조금의 조성이 용이한 농수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함
  - 이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품목을 하나의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성원이 생산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생산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에 한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되, 연간 자조금 조성금액은 그 구성원이 생산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조직화정도·사업역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차등지원할 수 있음
  -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지급신청
  -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자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 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
  -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사원인 법인에 한한다)이 제8조 및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참 고 1>

2010년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단위 : 백만원)

품목	'09실적	'10년 예산				비고
	전체	배정액	자부담	전체	보조율 (%)	
<b>계</b>	<b>17,007</b>	<b>8,463</b>	<b>9,606</b>	<b>18,069</b>		
파프리카	3,387	911	911	1,822	50	
무·배추	290	170	255	425	40	
양파	402	400	600	1,000	40	
가지	81	50	75	125	40	
토마토	716	450	550	1,000	45	
참외	519	231	282	513	45	
딸기	469	225	275	500	45	
우영	180	90	90	180	50	
오이	353	262	262	524	50	
참다래	574	290	290	580	50	
감귤	1,834	1,000	1,000	2,000	50	
단감	429	225	275	500	45	
사과	284	160	240	400	40	
배	180	160	240	400	40	
포도	502	304	372	676	45	
복숭아	223	150	150	300	50	
자두	413	200	200	400	50	
난	810	360	360	720	50	
분화	320	130	160	290	45	
절화	2,414	1,059	1,059	2,118	50	
친환경농산물	2,064	648	972	1,620	40	
육묘	136	75	75	150	50	
인삼	427	505	505	1,010	50	
겨울대과	-	53	53	106	50	'10 신규
고추	-	55	55	110	50	'10 신규
마늘	-	200	200	400	50	'10 신규
유보액	-	100	100	200	-	

## 외국의 자조금 제도

### (1) 미 국

#### □ 도입경과

- 1937년 농업유통협약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제정
  -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개별자조금 법안이 주의회 및 연방의회에서 제정
    - 양모('55), 면화('66), 낙농연구촉진법('84),  
돈육촉진연구소비자정보법('85), 우육촉진연구법('85)
    - ※ 농업유통협약법은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개별법은 생산자단체별 상황을 고려하고 자조금의 운영방안을 규정
- 1996년부터는 과일·채소류는 농산품촉진·조사 및 정보법(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에 의해 자조금 제도 도입
  - 해당품목 제도도입 제안, 공시 및 검토, 승인 과정을 규정

#### □ 과실·채소류 자조금 도입절차

- 품목별단체 자조금 도입요청 → 공청회, 공시 및 규정 검토(AMS) → 검토안 제시(AMS) → 해당 생산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AMS주관 투표(우편)) → 프로그램 시작
  - ※ 제도시행 2~3년 후 계속실시여부에 대한 생산자투표실시

#### □ 자조금 관리

- 자조금운영은 자조금 승인시 규정한 위원회에서 담당
  - 위원회 역할 : 소비촉진, 시장유지·개발·확대를 위한 조사,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정보제공 등
- 자조금 위원회는 생산농가대표, 수입업자, 취급업자,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품목별로 구성
  - 위원은 생산농가단체·수입업자 또는 농무부장관에 의해 지명

## □ 자조금 사용용도

- 소비촉진, 시장유지·개발·확대를 위한 조사,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정보제공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 사용
- 생산증대분야에는 자조금 사용을 금지

## □ 원예분야 자조금조성 현황

- 미국의 자조금은 주로 축산분야에 활성화되었으며, 과일·채소류분야는 1990년대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음

- 조성품목 : 감자('72), 수박('90), 버섯('93), 팝콘('97), 땅콩('99), 블루베리('00), 아보카드('02), 망고('04)

※ 화훼는 '95 ~ '97년간 시행되다가 '97년에 중단

- 부과대상은 농가, 수입업자, 취급업자중에서 품목특성에 따라 결정

- 일정규모이상은 강제부과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이하의 소규모농가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부담자가 자조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조금 납부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구

- 자조금 부과 비율은 농산물가치의 1%미만에서 결정

## (2) 네덜란드

### □ 자조금 현황

- 화훼, 채소·과수, 구근화훼류, 버섯, 노지채소 생산자와 무역·가공업체는 의무적으로 생산물 위원회에 자조금을 납부
  - 대부분의 농가가 농장(회사)을 국가에 영업을 등록
  - 등록된 농가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1차 취급자인 조합, 유통회사가 수납하여 생산물위원회에 납부
  
- '05년 원예분야 자조금 조성 계획
  - 조성예상액 : 8,000만 유로(1,080억원)
  - ※ 채소·과수(1,950만), 화훼(4,050만), 구근화훼류(1,440만), 관상수목류(560), 원예장식·조경분야(95.6)
  - 부과율 : 총매출액의 0.06% ~ 0.61%
  
- '05년 사업계획(채소·과수분야) : 1,840만유로(248억원)
  - 품목별로 자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지출

세 부 사 업	예산(백만유로)
계	18.4 (100.0%)
기술 연구(Technical research)	6.4 (34.8)
판매촉진·마케팅(Promotion and marketing)	4.7 (25.6)
품질(Quality)	4.9 (26.6)
환경프로젝트(environment projects)	1.4 (7.6)
인건비(labour)	0.3 (1.6)
기타(other matter)	0.7 (3.8)

## □ 생산자 대표조직의 역할

- 네덜란드는 LT0(농업인 총연맹), 생산물위원회(자조금관리위원회), 농림부 담당자가 모여 품목별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정책 추진
- ※ 자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LT0에 가입하고 있는 15개 품목별 생산자 단체임

### ○ 과제 발굴단계

- LT0는 북부, 남부, 서부 지역 등 광역단위 협회가 있어 지역협회의 대표자와 전문인력(대학, 연구기관, 전문마케팅회사, 지자체 등)이 모여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
  - 발굴과제(예시) : 토마토 재배시 광범위하게 바이러스병 발생으로 생산량 감소
  - 해결방법 :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병발생 억제방안 마련
- 동과제에 대하여 LT0, 생산물위원회, 농림부 품목 담당자 등이 모여 사업 타당성 및 추진방법 등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 결정
  - 생산물위원회는 토마토 농가가 조성한 자조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비 투자를 결정
  - LT0는 용역기관 선정, 용역관리, 농가 전파 방법 등을 마련
  - 정부는 사업타당성, 정책목표 부합성, 투자 우선 순위와 함께 환경오염 감소 등 혁신사례일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LT0는 생산물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활용,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고용하여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필요시 지원

### (3) 뉴질랜드

#### □ 자조금 현황

- 6년에 한번씩 생산자투표를 실시하여, 자조금제도의 존폐여부 결정
- 해당품목의 시장개발, 홍보, 동식물의 보호 및 건강증진, 품질관리, 소비자교육, 조직관리비 및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에 사용
  - 자조금 지출액의 약 80%를 연구 및 제품개발과 광고 및 마케팅 활동 등에 사용, 자조금 관리비용은 10% 이내
- ※ 자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생산목적에 투자되는 것을 금지

#### <주요품목별 자조금 부과율과 관련법안>

품 목	최고자조금부과율	관련법안
<u>축 산 물</u>		
육류	a 쇠고기: \$4.40/두 b 염소고기:\$0.60/두 c 양고기: \$0.50/두	Commodity Levies(Meat) Order 2004
양육	a \$0.03/사슴고기kg b \$0.20/녹용	Commodity Levies(Farmed Deer Products) Order 2001
우유	\$0.043/kg	Commodity Levies(Milksolids) Order 2003
계란	\$0.50/수	Commodity Levies(Eggs) Order 2004
양모	\$0.06/kg	Commodity Levies(Wool) Order 2004
<u>과 실</u>		
나무과실	판매가, FOB가격 또는가공 원료가의 0.1%	Commodity Levies(Orchard Fruit) Order 2001
패션과실	농가판매가, 가공품도매가, 또는 FOB가격의 2%	Commodity Levies(Passion Fruit) Order 2002
여름과실	a. 1등급: 판매가, FOB가, 또 는 가공품도매가격의 1.75% b. 2등급: 판매가, FOB가, 또는 가공품도매가격의 1%	Commodity Levies(SummerFruit) Order 2002
와인용 포도	FOB가격의 1.5%	Commodity Levies(Wine Grapes) Order 2004
<u>채 소</u>		
채소	판매가, 가공용 가격 또는 FOB 가격의 0.15~1%	Commodity Levies(Vegetables) Order 2001

## WTO 규정상의 자조금 제도

- WTO 규정에는 자조금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제공, 국제무역전시회 개최 및 참가 자금지원, 수출가능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등은 보조허용
  - 자조금의 목적중 해외시장조사 및 개발분야는 허용보조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산지폐기 등 생산과 연계된 분야는 허용보조가 안됨
  
- 우리나라는 자조금제도는 시장조사개발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분야와 산지폐기 등 시장과 연계된 부분으로 혼재되어 WTO규정상 허용보조로 분류되기 어려움
  - 이를 감안하여 2004년에 감축대상보조금으로 분류하여 WTO에 통보
  
- 현재 원예류 대부분이 품목별 생산액 대비 감축대상보조 비율이 2%이내 수준에 불과하여 자조금 지원에 아직 문제는 없으나
  - 향후 자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지원액이 늘어나거나 DDA협상에서 보조금이 급격히 감축될 경우에는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
  
- ※ 현재 개도국의 품목별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는 생산액 대비 10%이하



## 5. 가격예시

### 관련조항

### 제8조(가격예시)

- ①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종축입식)시기이전에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 ②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의 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④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WTO 규범상 농산물 수매는 국내보조에 해당되므로 정부수매보다는 계약재배(농협·농가), 유통협약(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 민간에 의한 자율적 생산조정을 유도하고 있음. 다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거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정부는 산지가격 지지를 위해 최저보장가격·예시가격 등으로 수매하여 비축 또는 산지폐기
- 최저보장가격( '98년 도입) : 채소류 7개 품목
    - 수매가격 산정기준 : 경영비 + 자가노력비의 100% 수준
    -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 하락 예상 시 정부 수매
  - ※ 계약재배 참여농가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농안법 제8조의 「예시가격」과는 관련 없음
  - 예시가격 : 양곡류(콩, 옥수수) 및 특작류(땅콩)
    - 수매가격 산정기준 : 생산비, 물가 등 감안 파종기 이전 예시
    - 콩은 자급을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수매( '02년 도입) 등 실시
    - 땅콩은 '09년 정부수매 중단 및 땅콩 가공업체에 민간수매자금 지원 추진

## 6. 정부비축 국내수매사업

관련조항

제9조, 제13조

### ● 제9조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①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물발전기금으로 당해 농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③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 ● 제13조 (비축사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 사업지원기관은 법 제9조 및 제13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우 공사로 하여금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구매하게 할 수 있다.

- 수출 또는 수급관리상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물량조절기능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품목 : 마늘, 양파, 땅콩, 콩, 옥수수, 사과, 배

□ 구매사업실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역별 구매물량 배정, 구매품 보관, 구매자금 전도 및 정산
- 농협중앙회 : 회원조합별 구매물량 배정, 구매실시 및 구매품 인도(유통공사 지정 비축창고의 문 앞 차상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구매품 검사

## 7.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 관련조항

### 제9조의2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이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규정에 따라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 등을 매각·공매·기부·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 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 대금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 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 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몰수농산물 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 이관배경

- 몰수 및 국고귀속 농산물 처분의 문제점
  - 1982 ~ 20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의료,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 일환으로 세관위탁물품(농산물 포함) 처분 기관 지정
  - 밀수입 농산물 등에 따른 피해는 국내 생산농가로 동 농산물을 보훈공단에서 처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 형성

- 이관근기 및 위탁기관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정
  - 2004.3.31 국회에서 「관세법」 및 「농안법」 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몰수품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는 근기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인수, 보관 및 처분 등 이관 농산물에 대한 관리 위탁기관으로 보관시설, 관리능력 및 판매조직 등을 감안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지정 ('06.6.26 농림부훈령 제1244호)

□ 이관대상 농산물

- 밀수품 : 수입과정에 관세법령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하여 적발된 농산물
- 몰수품 : 국가에서 범칙사건의 피의자 통고처분 또는 판결로 소유권을 박탈한 농산물
- 압수품 : 관세범칙사건과 관련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의 점유 취득한 농산물(혐의확정 : 몰수, 무혐의 확정 : 환가·환부조치)

□ 처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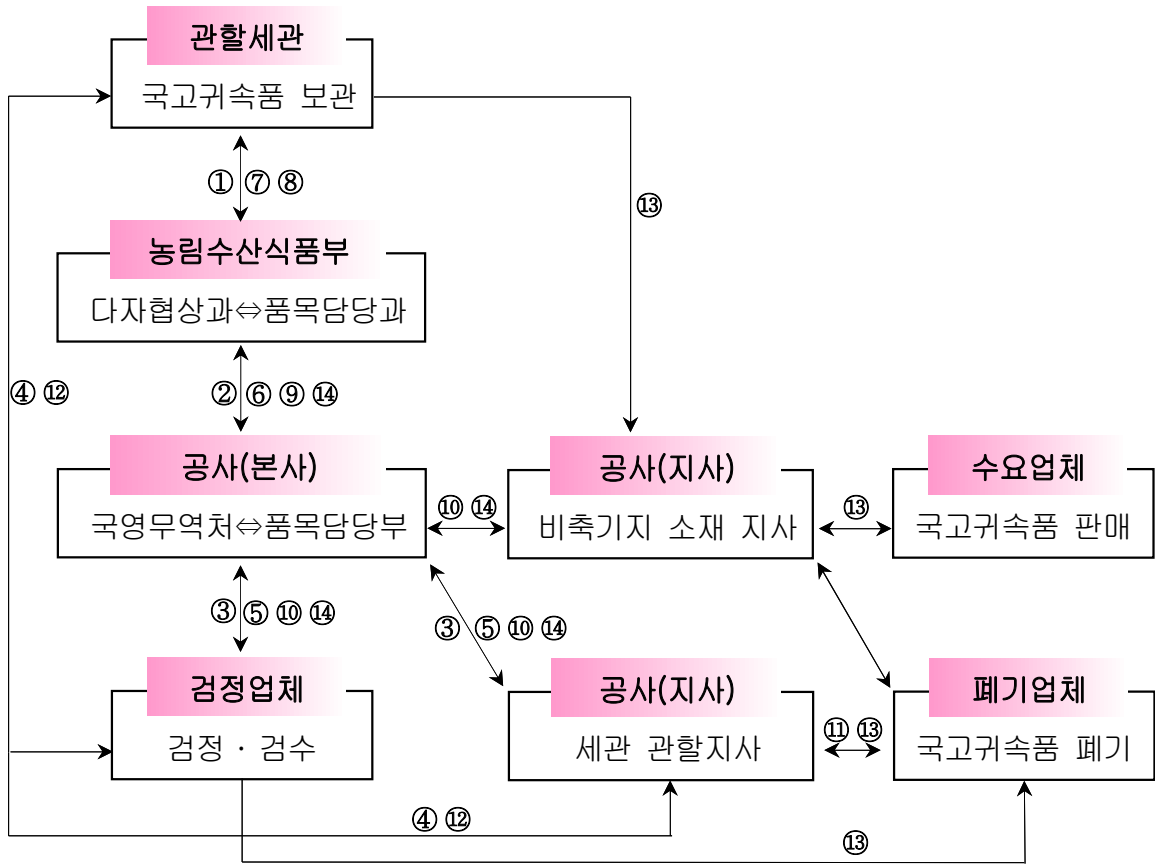
- 국내 생산비중이 낮고 수입이 불가피한 농산물은 판매
  - : 참깨, 두류, 메밀 등
- 국내 생산비중이 높고 몰수농산물로 인한 시장가격에 민감한 품목은 재수출, 사료 및 퇴비용 공급, 폐기 등을 통한 시장격리
  - :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등

□ 인수 및 처분실적

(단위 : 톤, 백만원)

년 도	인 수		매 각		폐 기		재고량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2004	32	4	32	45	-	-	-
2005	205	70	181	277	24	3	-
2006	298	83	176	523	122	22	-
2007	788	210	119	353	669	109	-
2008	1,122	178	72	267	546	104	504
2009	502	94	197	336	286	53	20
계	2,947	639	777	1,801	1,647	291	524

□ 몰수 및 국고귀속 농산물 처리절차도



순번	처리내용	순번	처리내용
①	이관여부 조회 : 20일 이내 회신요구 (관할세관 ⇒ 농림수산물부 다자협상과)	⑧	이관통보 (관할세관 ⇒ 농림수산물부)
②	인수여부 조회 (농림수산물부 ⇒ 공사 국영무역처)	⑨	인수 및 처리지시 (농림수산물부 ⇒ 공사) ※ 처리지시 : 판매, 보관 또는 폐기
③	대상물품 품위 및 물량확인 지시 (공사 국영무역처 ⇒ 지사 및 검정업체)	⑩	인수도 및 처리방법 지시 (본사 국영무역처 ⇒ 관할지사 및 검정업체)
④	대상물품 품위 및 물량확인 (지사 및 검정업체 ⇒ 세관 보세장치장)	⑪	폐기업체 선정 및 계약 (세관 관할지사 통관 및 계약담당)
⑤	간이검정 보고 (지사 및 검정업체 ⇒ 공사 국영무역처)	⑫	대상물품 인수 (세관 : 인수 · 인계서 작성) 보관료 지급 및 운송 (검정업체 입회 검정검수)
⑥	인수 적정여부 보고 (공사 국영무역처 ⇒ 농림수산물부)	⑬	대상물품 처리 (비축기지 입고, 폐기업체 폐기 또는 수요업체 판매 등 처리)
⑦	인수여부 결정 및 세관통보 (농림수산물부 ⇒ 관할세관)	⑭	인수 및 처리결과 보고 (검정업체 · 지사 ⇒ 본사 ⇒ 농림수산물부)

## 8.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제

### 관련조항

###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①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생산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일정 지역의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 대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발하는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당해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가. 정의

#### □ 유통협약(농안법 제10조 제1항)

- 과잉생산 등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하는 농산물에 대해
  -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이 물량규제, 품질규제 등에 대한 유통협약을 맺고 이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 '98도입)
- \* 유통협약 주체 : 유통조절추진위원회(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대표등으로 구성)

□ 유통조절명령(농안법 제10조제2항)

- 과잉생산 등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하는 농산물에 대해
  -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이 물량규제, 품질규제 등의 공동 활동을 하기로 합의후
  -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여 발령( '03도입)
- \* 유통조절명령 요청 주체 : 유통조절추진위원회, 생산자 단체

◆ 물량규제(출하물량을 조절하는 조치)

- 과잉물량 시장격리(산지폐기 등), 출하시기 조절 등

◆ 품질규제(저급품 유통을 저지하는 조치)

- 숙기, 크기, 당도 등이 미달하는 저급품 유통저지 등

## 나. 사업추진경과

□ (유통협약·유통조절명령 도입)

- 생산자·소비자·유통인 중심의 자율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통협약 실시('98년)

□ (유통협약)

- '98년도에 양파, 무·배추 유통협약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도입
- 「농안법」에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을 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00, 농안법 제10조)

□ (유통조절명령)

- '03년도에 최초 실시하였으며 '03~'07기간 중 감귤에 대해서만 실시

□ (정부지원)

- 생산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제도 도입('00, 농안법 제12조)

□ 유통조절명령 조항 구체화

- 발동요건인 “현저한 수급불안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관계기관·단체간 이견 발생에 따라 근거 마련 추진
-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등을 농림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 개정('07. 1, 농안법 제10조 제5항)

□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마련)

-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농림부 장관고시('07.9)
  - 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물량기준 및 가격기준 등 마련

<참 고 1>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계약재배·수매비축 등 정부주도의 수급 및 가격안정 시책만으로는 「농산물 제값 받기」에 한계
-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조절 정책이 어려워 農·消·商·政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정책이 새롭게 대두

□ 근거법령 : 「농안법」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사업추진내용

- 점차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개정된 「농안법」에 의거 유통협약·명령제 도입
- '99.11 :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0.7 ~ 12 : 유통명령 도상연습실시(2회)
  - 1차('00.7.24 ~ 26) : 강원도 고랭지 배추
  - 2차('00.12.5 ~ 7) : 제주도 감귤
- '01.2.15 ~ 28(14일간) : 대파유통협약 실시
  - 협의회 주도로 전체면적의 △9%(449ha)감축 하여 가격지지
  - 정부는 산지폐기 비용 일부(12억원) 지원

※ 유통협약·명령 실시상황

- '98 : 양파, 무·배추 - 유통협약
- '99 : 마늘·양파, 고추 - 유통협약
- '00 : 방울토마토, 마늘 - 유통협약
- '01 : 대파, 양파 - 유통협약
- '02 : 양파 - 유통협약
- '03 : 감귤 - 유통협약 및 명령, 김 - 유통협약
- '04 : 감귤 - 유통협약 및 명령, 김 - 유통협약
- '05 : 양파, 대파 - 유통협약, 감귤유통명령
- '06 : 협약실적 없음
- '07 : 겨울배추·대파·사과 유통협약, 감귤 유통명령
- '08 : 감귤, 배, 가을배추 유통협약

\* 지원실적 : ('01)1,430백만원 → ('02)4,681 → ('03)4,672 → ('04) 50 → ('05)7,097 → ('07) 3,612 → ('08)4,987



<참고 2>

● 농림부고시 제2007-6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1일  
농 립 부 장 관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전담기관의 관측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대비 20%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2. 당해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수요량 대비 10%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3>

연도별 유통협약·명령제 지원실적(농안기금)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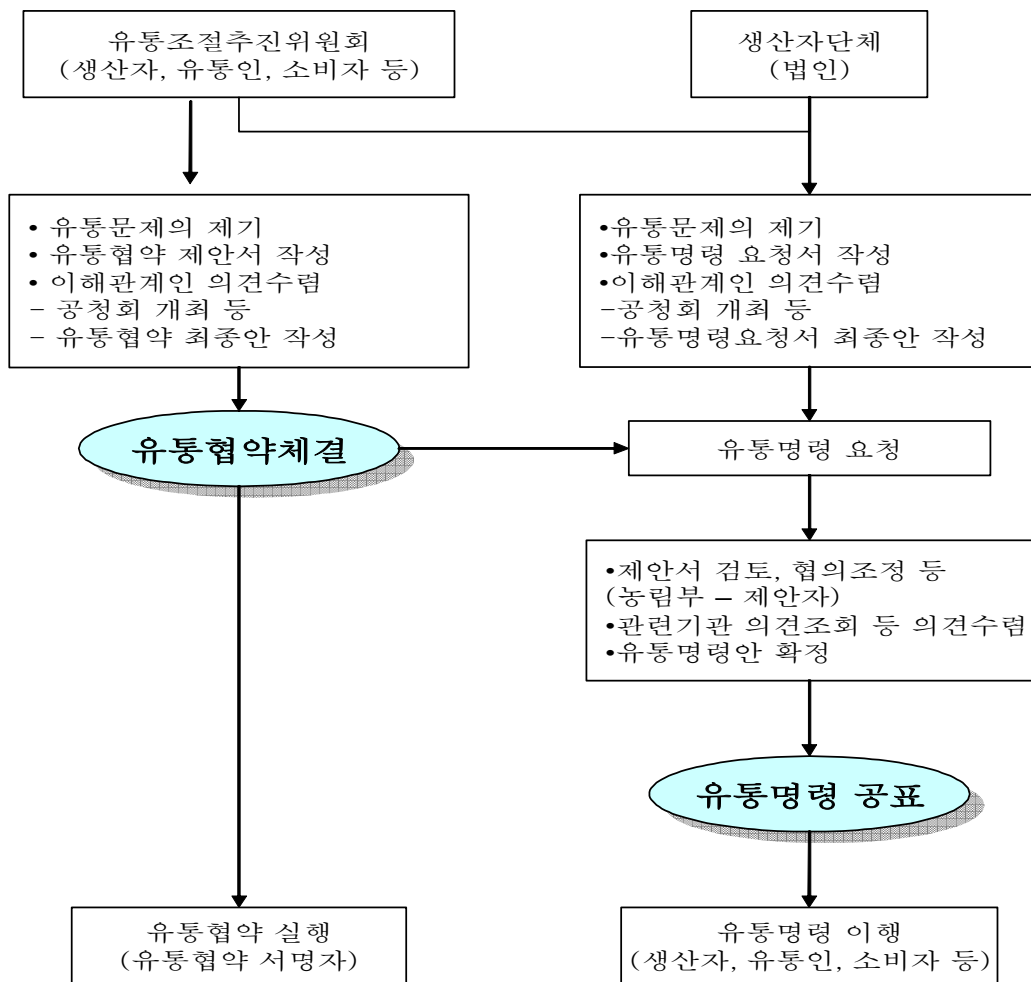
연 도	품 목	사 업 내 용	지 원 금 액
'03	감 곶	감곶('02년산) : 50천톤 - 상하차 운반비 65원/kg	3,250
	감 곶	감곶('03년산) : 유통명령 - 운영경비의 67% 지원	550
	김	유통협약에 의한 산지폐기	872
'04	김	유통협약에 의한 산지폐기	50
'05	대 파	수매 및 산지폐기 : 887ha (지자체·생산자 283ha 별도폐기)	6,214
	양 파	산지폐기 : 295ha (지자체·생산자 293ha 별도폐기)	883
'06	-	-	-
'07	겨울배추	산지폐기 : 295ha (지자체 325ha 자율감축)	227 (자담:1,691)
	대 파	산지폐기 : 552ha (지자체 163ha 자율감축)	2,428 (자담:1,484)
	사 과	우박피해 과실 시중유통방지를 위한 피해품 수매격리 : 9,130톤	957 (자담:1,369) (지방비: 867)

<참고 4>

‘07년산 감귤 유통명령 내용

- 목 적 : 감귤의 현저한 수급불안 해소,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 공급
- 대 상 : 제주산 노지감귤(온주밀감)
- 기 간 : '07.10.25 ~ '08.3.31
- 대 상 자 :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내 용
  - 1번과(횡경 51mm)이하와 9번과(71mm)이상의 감귤 국내시장 출하 금지
  - \* 출하금지 대상물량은 약 14만톤 추정(생산량의 약 20%)
  - 강제착색과 등 중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 금지
- 명령 불이행자 : 과태료 부과
  - 부과기준 : 800만원
- 명령집행 : 제주도지사
- 자금지원
  - 비규격품을 시장격리하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지원실적이 없음

## 사업추진 절차



## 외국 사례

□ 대상국 : 미국· 프랑스

□ (도입배경)

-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가격폭락, 과잉생산 및 소비침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1937)
- 프랑스는 1975년에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자국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도입

□ (정책목적)

- 수급불안해소로 유통시장 안정화를 통해 생산자·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양국 유통명령제의 정책목적임

□ (정책수단)

- 수급불안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물량규제, 품질규제, 시장지원 등의 분야로 나눠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유통명령제 정책수단
  - \* 물량규제 : 시장격리, 출하량·출하시기 조절 등
  - \* 품질규제 : 속도, 크기, 당도, 숙성도 등의 저급품 출하제한 등
  - \* 시장지원 : 소비촉진 · 홍보광고 등

### Ⅲ. 정부비축사업 일반현황

#### 관련조항

####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 ● 법 제13조 (비축사업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수입·관리 및 판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2조 (비축사업 등의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의 비축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비축농수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3. 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 ● 시행령 제13조 (비축사업 등의 자금의 집행·관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산액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당해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 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예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③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1. 정부비축사업 연혁 및 정의

## □ 연 혁

- '76.12.3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 '78. 8.23 :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 을 공사에 설치
- '82.11.29 : 농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사업을 공사가 수행(공사법 개정)
- '95. 1. 1 :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협정이행을 위해 「농안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협상내용 반영

## □ 정 의

- 정부비축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수출하거나 외국 농산물을 수입·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하는 사업

## □ 사업대상 품목

- 수매비축 :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옥수수, 사과, 배 등
- 수입비축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 등
- \* 품목선정기준
  -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증산유도가 필요한 품목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농수산물유통공사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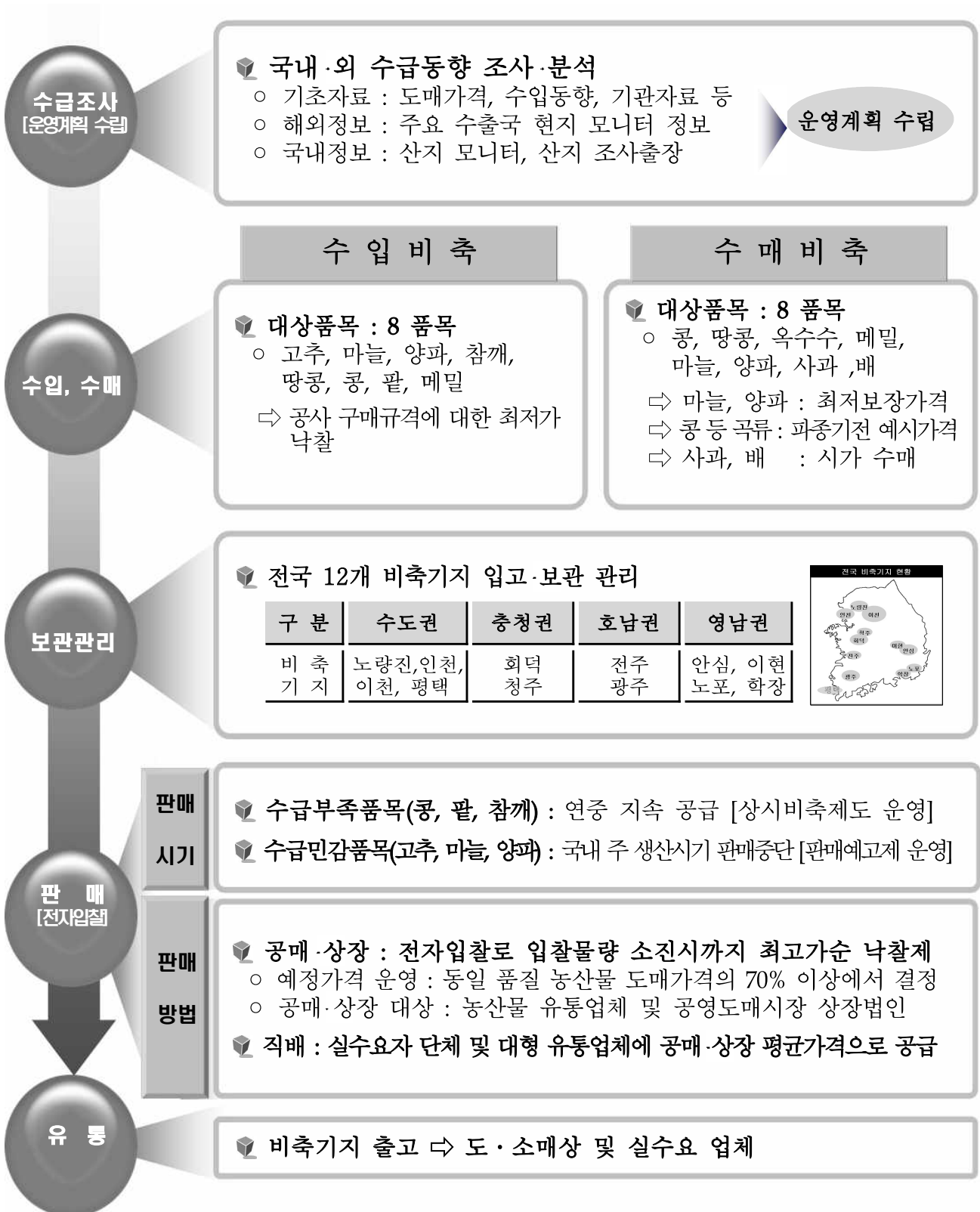
#### ● 농안기금의 설치

- ◆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 ◆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설치)

####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무의 농수산물유통공사 위탁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탁) ②항

## 2. 정부비축사업 운영체계





### 3. 정부비축사업 추진현황

#### 비축사업의 의의

- ❖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
  - ⇒ 국내 자급도가 높은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수매비축을 통해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의무수입량은 단경기 방출 및 건조품 도입으로 영향 최소화
- ❖ 소비자 물가 안정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
  - ⇒ 국내 수급상 절대부족한 콩, 팥, 참깨 등은 TRQ 증량 수입, 상시 비축량 유지를 통해 연중 안정적 방출로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

#### 가. 수입비축(국영무역)

- 품목별 시장동향을 감안, 최적시기에 전량 수입이행하여 통상마찰 방지
  - 도입시기 : (고추) 12~5월, (마늘·양파) 9~12월, (콩·참깨) 연중 수입
  -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제 운영
- 국내 판매는 공매·상장 및 직배방법에 의해 방출
  - 공매예정가격은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 수준에서 시중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결정
- 수급 민감품목인 양념류는 판매예고제 실시로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유도
- 국내생산량이 절대부족한 두류·참깨는 상시비축물량 유지, 연중 안정적인 판매
  - 상시비축규모(2개월 평균 재고) : 콩 40~45천톤, 팥 3천톤, 참깨 7~8천톤

#### < '09년도 국영무역품목 도입·판매계획 대 실적 >

(단위 : 톤)

품 목	도 입		판 매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양념류	33,297	9,222	21,300	10,496
특작류	43,067	33,862	43,067	38,531
두 류	258,261	217,533	248,328	231,836
계	334,625	260,617	312,695	280,863

## 나. 수매비축

### □ 수매방법

- 양념류는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수준이하 형성 시 희망량 전량 수매
- 과실류는 생산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시가(가락동시장 경락가)수준으로 수매
- 두류는 정부예시가격으로 약정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 콩 3,168원/kg(대립1등), 콩나물콩 3,158(소립종), 옥수수 702

### □ 품목별 수매실적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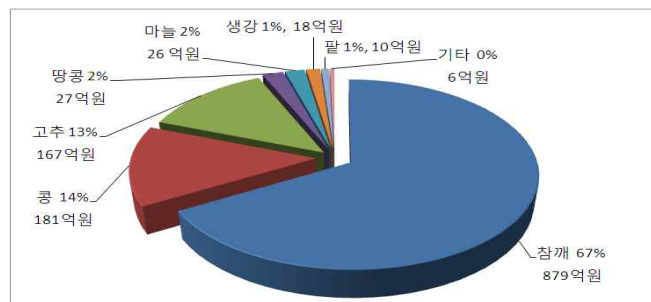
부 류	2008년	2009년	수매품목
두류·특작류	3,045	3,048	(’08) 콩, 옥수수, 땅콩, 메밀 (’09) 콩, 옥수수

## ● 비축사업 수입이익금 등에 의한 농안기금 조성 ●

- 국내수매 및 수입비축 판매결과 수입이익금(Mark-Up)으로 농안기금에 연간 약 1천 5백억원 수준 납입

※ 수입이익금(Mark-Up) : 비축사업 품목간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수입원가와 판매가격과의 차이

< '08년도 품목별 이익금 >



## 4. 국영무역의 연혁 및 역할

### 가. 국영무역의 연혁

- 1948. 1. 1 발족된 GATT 체제하에서부터 국영무역기업은 수십년동안 존재하여 왔으며, 1993. 12. 15 UR 다자간 농산물협상이 타결되어 1994. 4. 15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GATT 회원국들은 UR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함
-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최혜국대우(MFN) 원칙 적용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과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1948.1.1 발족하였음
- 국영무역 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GATT 1994, 농업 협정문 등을 부속서로 하는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농산물 관세쿼터 관리방안 등을 WTO에 제출후 품목별 국영무역기관을 제시하여 회원국의 검증을 거친후 현행 국영무역을 유지해오고 있음

### 나. 국내법령 반영 및 제정

- UR협상결과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각 회원국은 협정이행을 위해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공포('95.1)
- 상기 특별법은 농산물 수입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지정, 수입기관의 지정, 국내지원정책 시행 등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협정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국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농업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비하였음

## 다. 국영무역의 정의 및 역할

### □ 국영무역의 정의

- WTO 협정문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을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서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해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들”로 정의하고 있음
- 국영무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식량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를 말함

### □ 국영무역의 역할

- ① 국내 수매업무를 수행하고 수입계획을 담당하는 여러국가들의 국영무역기관의 설립은 낮은 비용의 식량공급, 안정적 농산물 가격의 보장과 같은 정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 ② 국영무역은 공공기관이 수입창구가 되어 수입·판매하는 제도로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량의 수입시기, 수입물량, 판매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입농산물이 국내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③ 가격동향에 따른 매점매석, 유통왜곡 현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안정 저해, 원산지 표시 문제 등 민간업체가 수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④ 수입개방시 민간업체에 귀속될 수입이익금을 농안기금 등 정부기금에 귀속시켜 농업투자재원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참고 1>

2010년 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계획(기본물량)

(단위 : 톤)

품 목	기본물량 (C/S물량)	수입관리 방식				비 고 (실수요자 배정분 용도)
		계	국영무역	수입권 공 매	실수요자 배 정	
고 추	7,185.0	7,185.0	5,685.0	500.0	1,000.0	외화획득용 원료
마 늘	14,467.0	14,467.0	13,467.0	1,000		
양 파	20,645.0	20,645.0	10,645.0	10,000.0		
생 강	1,860.0	1,860.0	500.0	1,360.0		
참 깨	6,731.0	6,731.0	6,731.0			
땅 콩	4,907.3	4,907.3		4,907.3		
인 삼	56.8	56.8		56.8		
대 두	185,787.0	185,782.0	173,982.0		11,800.0	식용대두박 제조용, 종자용 5톤 제외
녹두·팥	14,694.0	14,694.0	14,594.0		100.0	외화획득용 원료
메 밀	1,328.0	1,328.0	828.0	500.0		
참기름	668.0	668.0		665.0	3.0	의약품용
감 자	18,810.0	18,810.0			18,810	가공용/*수입권공매가능
감자분	10.0	10.0			10.0	일반내수용
기타서류	326.7	326.7			326.7	일반내수용
가공곡물	14.7	14.7			14.7	의약품용 및 외화획득용 제품
녹 차	7.8	7.8			7.8	일반내수용
옥수수	28,000.0	28,000.0			28,000.0	콘그리츠용 : 14,000 (알곡기준 : 28,000)
감귤류	2,097	2,097	-	2,097		오렌지 57,017톤 별도
계(18)	307,595.3	307,590.3	226,432	21,086.1	60,072.2	-

<참고 2>

2010년 비축물자 도입 및 방출계획

(단위 : 톤)

구 분	확 보				관 매		
	이 월	수 매	수 입	계	수 매	수 입	계
계	48,199	1,741	307,636	357,576	1,741	305,928	307,669
양 념 류	7,480	0	20,418	27,898	0	21,900	21,900
고 추	991	-	5,685	6,676	-	5,700	5,700
마 늘	4,378	-	13,467	17,845	-	13,600	13,600
건조마늘	1,511	-	-	1,511	-	1,200	1,200
양 과	-	-	-	0	-	-	0
건조양과	600	-	766	1,366	-	900	900
생 강	-	-	500	500	-	500	500
특 작 류	5,653	0	40,390	46,043	0	38,700	38,700
참 깨	5,653	-	40,390	46,043	-	38,700	38,700
땅 콩	-	-	-	0	-	-	0
두 류	35,066	1,741	246,828	283,635	1,741	245,328	247,069
콩	27,640	958	205,000	233,598	958	205,000	205,958
콩나물콩	5,884	314	20,000	26,198	314	21,000	21,314
팥·녹두	1,542	-	21,000	22,542	-	18,500	18,500
옥 수 수	-	432	-	432	432	-	432
메 밀	-	37	828	865	37	828	865

<참고 3>

2009년 비축물자 수입 및 판매실적

품 목	도 입				판 매			
	계 획 (톤)	실 적 (톤)	금 액 (천불)	실적률 (%)	계 획 (톤)	실 적 (톤)	금 액 (백만원)	실적률 (%)
계	334,625	306,434	248,795	91.6	312,695	307,988	487,704	98.5
양념류	33,297	19,603	17,005	58.9	21,300	13,400	39,924	62.9
고 추	5,685	5,655	9,102	99.5	5,900	5,348	30,490	90.6
마 늘	14,467	4,100	5,933	28.3	10,000	3,690	3,708	36.9
(건조)	-	-	-	-	1,000	466	1,258	46.6
양 파	13,145	9,848	1,970	74.9	3,000	2,994	1,891	99.8
(건조)	(946)	(709)	(1,970)		1,400	902	2,577	64.4
생 강	0	-	-	0.0	0	-	-	0.0
특작류	43,067	39,459	54,568	91.6	43,067	42,098	174,733	97.8
참 깨	42,160	38,552	53,775	91.4	42,160	41,193	172,357	97.7
땅 콩	907	907	793	100.0	907	905	2,376	99.8
두 류	258,261	247,372	177,222	95.8	248,328	252,490	273,047	101.7
대 두	230,000	227,944	161,995	99.1	225,000	232,686	246,554	103.4
팥·녹두	27,433	18,600	14,873	67.8	22,500	18,979	25,104	84.4
메 밀	828	828	354	100.0	828	825	1,389	99.6

\* 계획은 2009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기준(수입 증량 반영)

\* 도입실적은 '09 결산 기준임

\* 양파 도입물량 9,848톤은 건조양파 도입량 709.02톤을 환산한 물량임(709.02톤÷7.2%=9,848톤)

※ 수매

품 목	수 매				판 매			
	계 획 (톤)	실 적 (톤)	금 액 (백만원)	실적률 (%)	계 획 (톤)	실 적 (톤)	금 액 (백만원)	실적률 (%)
수 매	15,150	1,741	4,562	11.5	3,039	3,061	9,294	100.7
대 두	14,100	1,272	4,087	9.0	2,900	2,918	9,126	100.6
옥수수	1,000	432	327	43.2	130	130	127	100.0
땅 콩	-	-	-	-	-	4	8	-
메 밀	50	37	148	74.0	9	9	33	100.0

\* 대두, 옥수수 등 수매는 농림수산식품부 수매지침 기준

- 수매물량: 논콩 10,100톤(일반콩 10,000, 콩나물콩 100), 밭콩 4,000톤(일반콩 3,000, 콩나물콩 1,000)

- 수매가격: 일반콩 1등 3,168원/kg, 콩나물콩 3,158, 옥수수 702

※ 북한산

품 목	반 입				판 매			
	계 획 (톤)	실 적 (톤)	금 액 (천불)	실적률 (%)	계 획 (톤)	실 적 (톤)	금 액 (백만원)	실적률 (%)
북한산	6,300	3,486	3,008	55.3	4,000	3,402	7,814	85.0
대 두	3,000	1,736	1,426	57.9	2,000	1,654	3,294	82.7
팥, 녹두 등	3,300	1,750	1,582	53.0	2,000	1,748	4,520	87.4

## IV. 정부비축 국내수매사업

### 관련조항

### 제8조, 제9조, 제13조, 시행령 제10조

#### ● 제8조 (가격예시)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 입식시기 이전에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의 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 등을 연결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 제9조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당해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이를 수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 ● 제13조 (비축사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10조 (과잉생산 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WTO 규범상 농산물 수매는 국내보조에 해당되므로 정부수매보다는 계약재배 (농협·농가), 유통협약(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 민간에 의한 자율적 생산 조정을 유도하고 있음

□ 다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거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정부는 산지가격 지지를 위해 최저보장가격·예시가격 등으로 수매하여 비축 또는 산지폐기를 할 수 있음

- 최저보장가격('98년 도입) : 양념류(고추, 마늘, 양파)
  - 수매가격 산정기준 : 경영비 + 자가노력비의 100% 수준
  -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 하락 예상 시 정부 수매
- 예시가격 : 양곡류(콩, 옥수수) 및 특작류(땅콩)
  - 수매가격 산정기준 : 생산비, 물가 등 감안 파종기 이전 예시
  - 콩은 자급율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수매('02년 도입)등 실시
  - 땅콩은 '09년 정부수매 중단 및 땅콩 가공업체에 민간수매자금 지원 추진

□ 수매사업실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역별 수매물량 배정, 수매품 보관, 수매자금 전도 및 정산
- 농협중앙회 : 회원조합별 수매물량 배정, 수매실시 및 수매품 인도(농수산물 유통공사 지정 비축창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매품 검사

## V. 정부비축 수입판매사업

### 관련조항

### 제15조, 제16조, 시행규칙 제13조

#### ● 제15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 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대상농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16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납세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 시행규칙 제13조 (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오렌지·감귤류

□ 수입비축사업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활용하여 수급안정을 기하면서

국내시장과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 자급도가 높고 수급에 민감한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 과잉생산 시 방출 중단, 건조품으로 대체수입 등 시장격리
  - 적정·과소생산 시 신선형태로 도입 비축 후 국내단경기 위주로 방출
-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 팥, 참깨 등
  - TRQ규모 증량을 통해 두부, 장류, 참기름 등 식품가공업체에 안정적 공급
  - 국민식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초식량으로서 상시비축제를 통해 국제 곡물가격 폭등 및 비상사태 시 식량안보 기능 수행

#### □ TRQ 설정배경

- 1995년 WTO 농산물협정에 따라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과 국내 수급상 절대부족 품목을 증량하여 저율관세할당물량을 설정하고 정부지정 공공기관이 수입·관리하게 하여 국내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허안을 이행토록 함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63개 품목을 해당 지정기관이 분산 · 관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수산물유통공사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땅콩, 콩, 팥, 녹두, 메밀 등</li><li>● 농림수산식품부 : 쌀, 보리</li><li>● 한국사료협회 : 옥수수 등</li><li>●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감귤류 등</li></ul>
---

#### □ TRQ 관리방식 : 국영무역(지정기관 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

- 국영무역
  - 추천대행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고 수입·비축하여 판매하는 방식
- 수입권공매
  - 관세할당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물량에 대하여 저율관세적용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는 방식
- 실수요자배정
  -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수입추천 신청 순에 따라 실수요자 배정물량을 양허관세로 추천하거나 품목 특성상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 양허관세 추천하는 방식

< 참고 >

## TRQ 관리방식별 사업추진 절차

### 가. 국영무역(지정기관배정방식)

국영무역 운영상 준수사항

- 국영무역 근거규범 : WTO협정 부속서 GATT1994 제 17조(국영무역 기업)
- 무차별 대우의 원칙, 상업적 고려에 의한 구매 또는 판매행위, 무역관행에 따라 구매와 판매에 있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부여 등

품목(9개)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메밀

수입관리

- 국영무역 양허관세 수입추천계획 시달(농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 국내수급상황 및 수출국 동향등 분석후 시기별 수입물량 결정
- 수입시기는 품목별 시장동향을 감안, 최적시기에 전량 이행하여 통상마찰 방지
  - 시기 : (고추) 12~5월, (마늘·양파) 9~12월, (콩·참깨) 연중수입
- 낙찰자 결정방식은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예정가격이상) 낙찰제
- 주요절차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 등록 → 입찰시행 및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 L/C개설 → 선적지 물품확인 → 물품선적 및 출항 → 국내도착 및 국정검사 → 대금결제 → 수입신고 및 통관 → 내륙운송 → 구상처리 및 계약이행 완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기지 입고)

판매관리

- 판매방법 및 대상

방 법	대 상	비 고
공 매	농수산물 도·소매상 및 실수요업체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자	등록업체 : 1,275개소
상 장	상장판매약정을 체결한 법정도매시장(농·수협공판장포함)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도매시장 : 38개소 공 판 장 : 21개소
직 배	농수산물대량실수요업체, 실수요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	14개 조합·단체·업체

※ 직배대상 : 총 2,384개(연식품조합 2,220, 장유조합 110, 식품공업협회10, 메주조합 44등)

- 판매가격 결정

- 공매·상장 :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 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 수준에서 시중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결정
- 직 배 : 최근일 공매·상장 평균가격 또는 정부지정가격 적용
  - 공매·상장 평균가격 : 마늘, 참깨, 콩나물콩
  - 정부지정가격(가공용) : (콩) 1,020원/kg, (팥) 1,200원/kg
- 판매시기
  - 특작류 및 두류
    - 국내자급도가 낮은 참깨, 대두, 팥 등은 상시비축물량을 유지하고 연중 방출하여 가격 및 수급 안정
    - 상시비축규모(2개월 평균 재고) : 콩 40~45천톤, 팥 3천톤, 참깨 7~8천톤
  - 양념류
    - 국내 자급도가 높은 고추, 마늘, 양파등 양념류는 판매예고제를 실시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유도
    - 국내 성출하기 판매 지양 및 단경기(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심하게 적어지는 시기), 가격상승기에 판매하여 농가보호

## 나. 수입권공매

- 대상품목 :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참기름, 인삼, 메밀(7품목)
- 공매시기
  - 품목별 국내가격 및 수급동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 결정
    - 통상적으로 계획물량의 50%씩 연 2~3회(상·하반기) 실시
    - 참깨, 땅콩 : 연 2회 실시 / 양파, 생강, 참기름, 인삼, 메밀 : 연1회
    - 국내 수급여건 및 입찰미이행 물량 발생 등에 따라 추가입찰 실시
- 공매참가자격
  - 대외무역법관리규정 제24호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 낙찰자 결정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고가(예정가격이상) 제시자 순으로 결정

## 다. 실수요자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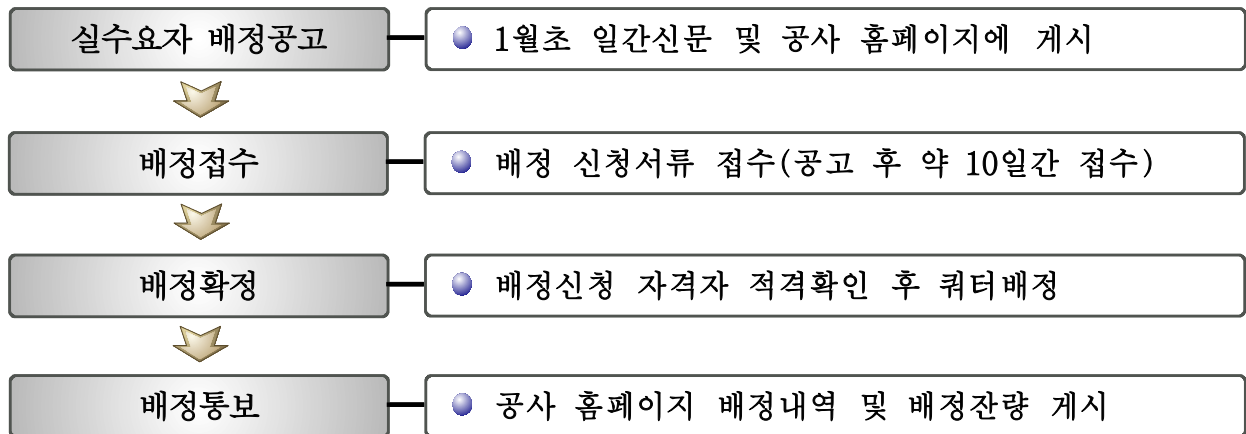
□ 대상품목 : 10품목

- 고추, 대두, 팥, 참기름, 감자, 감자분, 기타서류, 기타가공곡물, 녹차, 옥수수

□ 배정시기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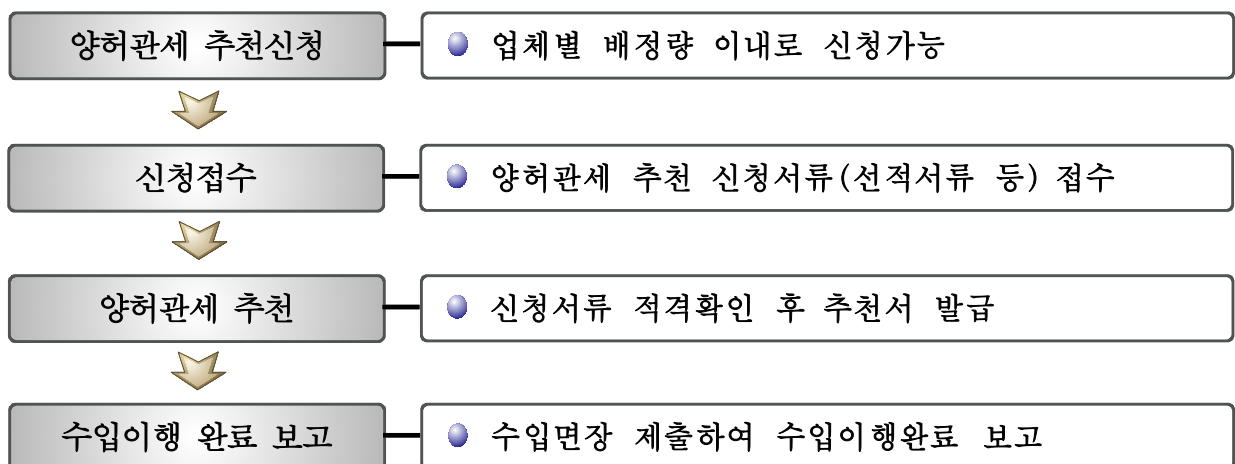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년 고시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계획에 의거 공사는 연초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배정계획을 공고 하여 품목별 용도에 따라 해당 자격자에게 쿼터 배정

□ 배정절차



※ 배정잔량 처분 : 연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배정자격자 및 기 배정업체 중 수입이행 완료한 업체로부터 배정신청 접수 후 선착순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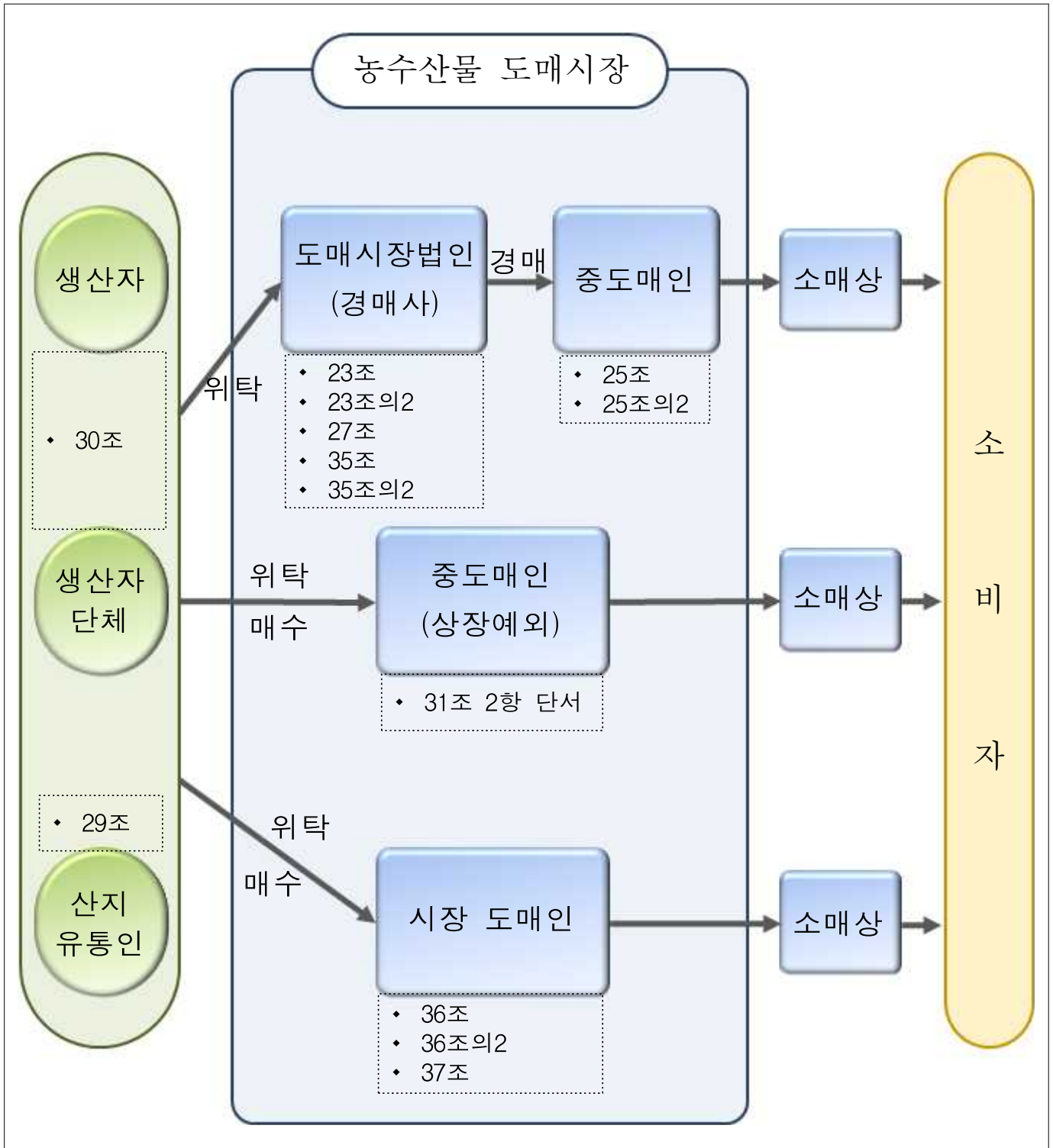
□ 양허관세 추천절차



## VI.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안법상의 도매시장 유통체계 (농안법 제17~42조)

※   : 농안법 관련조항



# 1.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분류

## 관련조항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4.12.31, 2007.1.3, 2008.2.29>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중 당해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 중앙도매시장을 특별시·광역시가 개설한 도매시장 중 도매의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권역별 도매거래의 중심시장으로서의 성격을 부각
- 종전의 중앙도매시장은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도매시장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것과 2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설한 시장을 뜻하였으나 국고지원이라는 조건과 소재지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도매의 중심이라는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기능별 분류를 함

## 참고

##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 중앙도매시장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 2의2.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3.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4.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5.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6.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7.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8.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9.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10.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11. 기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 STORY

### 최초의 공영도매시장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공적시장으로 건설·육성코자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의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79년부터 서울특별시 가락동에 933억원을 투자하여 대지 166천평, 건물 60천평의 대규모 도매시장을 건설하였으며 1985년 6월에 개장하여 용산, 중부, 남대문, 청량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이전 수용하였다.

정부는 '85년 6월 가락동도매시장을 개장한 이래 대전, 대구, 청주시 도매시장이 80년대말까지 완공 개장하였고, '92년부터 천안, 안양, 안산, 충주 등 인구 2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도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 (하늘에서 내려다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 ISSUE

###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재분류 요구

- 중앙·지방도매시장 구분에 따른 실익미미
- 지방도매시장의 경영난 반영필요
- 1개도시내 2개 도매시장이 개설된 경우 중앙·지방시장 분류 모호

## <참 고1>

# 농수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의 지위

### 가. 농수산물 유통의 초기단계

-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농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충분히 분리되지 않고, 자가소비도 많아 유통량이 적음
- 자가 소비후 남는 농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규모 “장터”에서 직접 만나는 직거래가 주요한 유통형태임
-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산지와 소비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유통량의 증가에 따라 전문상인에 의한 유통 발전

### 나. 도매시장의 대두

- 공산품은 생산자(기업)가 독자적인 유통채널을 보유하거나 도매상이 수집하여 소매상에게 공급하나 도매상의 집합공간으로써의 “도매시장”은 거의 없음
  - 아이스크림 공장 - (물류기지) - (대리점) - 소매점
  - 음반·서적) 출판사 - 도매상 - (중간도매상) - 소매점
  - \* 소규모기업이 주형태인 공산품은 일부 도매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예: 동대문 평화시장의 의류도매시장 역할) 쇠퇴하는 추세임
- 농산물, 특히 청과물은 공산품과는 다른 유통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수많은 품목을 거의 매일 대다수 소비자에게 공급
  - 저장성이 약해 유통과정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1회 유통량이 1~2일내 판매 가능한 양으로 제한됨
  - 공산품에 비해 생산의 독과점 정도가 낮고 규모도 작아 생산자가 독자적인 유통채널을 유지하기 곤란
- 따라서 농산물은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산지에서 대량 집하한 농산물을 많은 소매상에 소량씩 분산하기 위해 품목별 도매상이 군집한 도매시장이 불가피함
  - 일반적으로 산지 반입을 위한 교통이 편리하고, 규모가 큰 소매시장 인근에 도매시장이 발달
- 세계 어느 나라나 예외없이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될수록 도매시장유통이 농산물유통의 주류를 형성하게 됨

### 다. 도매시장제도 이전의 농수산물 유통

- 산업화·도시화로 농수산물 유통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재래 시장 형태인 유사시장(위탁도매상 집합)이 형성되어 번창

- 규모가 확대된 위탁도매상은 자체 물량을 확보하고 출하조절로 이익을 극대화
  - 시장정보에 취약한 농민이 직접 출하할 경우 적정금액 미 지급 등 생산자의 자유로운 시장출하를 방해하고 거래 미공개로 세금포탈 등의 문제발생
- 유사 도매시장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점유 영업, 교통난유발, 쓰레기문제, 소음공해 문제 등 발생
- 농수산물은 풍흉이 심하고 부패성이 강하여 유통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 등락이 심한 반면, 시장정보에 유리한 소수의 위탁상과 다수의 생산자가 거래하게 되므로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이 약해 거래에서 생산자가 불리

#### 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제도의 목적

-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세력과 분산하는 세력 등 두 세력이 도매시장에서 공개·경쟁적인 거래방식을 통하여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여 위탁상의 자의적인 가격결정을 견제
-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한 공영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과 중도매인을 시설비 부담없이 입주시키는 대신 「농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확보
- 종합유통센터나 직거래사업, 그리고 민간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 등과 상호 경쟁속에 유통효율을 제고

#### 마. 유통여건 변화와 도매시장의 미래

- 생산규모가 대형화되고, 소매점의 체인화·규모화가 이루어질수록 소매체인 사업자에 의한 도·소매의 통합, 산지 직구입 및 소매점 직공급 체계가 발전
-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생산자의 조직화·규모화, 대형 소매점의 유통비중이 확대
- 그러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다양한 구색을 갖춰 신속하게 공급하는 도매시장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필요
-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산지 수집비용, 재래시장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도매시장 유통이 주 형태로 역할

#### 〈 도매시장의 변화 〉

구분	1987년	2000년	2008년
도매시장 수	55개소(2)	48(23)	50(33)
도매법인 수	62개소(9)	108(83)	121(104)
도매법인 임직원 수	- 명	3,427(2,414)	3,133(2,551)
중도매인 수	- 명	7,837(6,901)	8,429(7,829)
거래물량	2,125천톤(1,316)	6,130(5,645)	7,257(6,904)
거래금액	14,189백만원(5,889)	61,549(50,657)	97,216(86,702)

주1) '87년 임직원수, 중도매인 수 통계 미비

2) ( )는 전체 도매시장 중 공영도매시장의 현황 표시임

3) 도매법인에는 도매시장내 입주한 도매시장공판장 실적 포함

**일본 도매시장법에서 도매시장 정의와 요건**

- 제 2 조(정의)** ①본 법률에 있어서[농수산물 등]이란 야채, 과일, 어류, 육류 등의 농수산물 및 기타일반소비자가 일상생활의 용도로 공급받는 식료품 및 화훼 기타 일반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농수산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 ②본 법률에 있어서[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 등의 도매를 위해 개설되는 시장으로서 도매장, 자동차주차장 기타 농수산물 등의 거래 및 물류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장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 ③본 법률에 있어서[중앙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 등의 유통 및 소비 상 특히 중요한 도시 및 그 주변의 지역에 있어서 농수산물 등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한 도매의 중추적 거점이 됨과 동시에 해당지역 외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농수산물 등의 유통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제 8조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을 말한다.
- ④ 본 법률에 있어서[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그 시설이 정령에서 정해진 규모이상의 것을 말한다.

구 분	요 건	개설자 인가 등
중 앙 도매시장	都,道,府,縣 인구20만 이상의 시 또는 이들이 소속된 일부 사무조합 혹은 광역연합조합이 농림수산성 장관의 인가를 얻어 개설한 도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장관의 인가)</li> <li>◦ 도매업자 : 주식회사 등(장관의 허가)</li> <li>◦ 중매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개설자 허가)</li> <li>◦ 관련사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개설자 허가)</li> <li>◦ 매매참가자 : 주식회사, 개인 등(개설자 승인)</li> </ul>
지 방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도매장(경매장)의 면적이 일정규모(도매시장법 시행령 규모 : 청과시장 330㎡, 수산 200㎡(산지시장은 330㎡, 식육 150㎡, 화훼 200㎡) 이상으로 하고 都,道,府,縣의 장(지사)의 허가를 얻어 개설된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 농협, 수협 등 (都,道,府,縣의 장의 허가)</li> <li>◦ 도매업자 : 개설자의 경우와 동일 (都,道,府,縣의 장의 허가)</li> <li>◦ 중매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 (일반적으로 개설자가 승인, 지사에 제출)</li> <li>◦ 매매참가자 : (중매업자의 경우와 동일)</li> </ul>

## 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관련조항

제2조, 시행령 제2조

### ● 법 제2조의 2에 의거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

-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 ※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이라 함은 가공의 상태를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로 양곡부류인 두류 및 잡곡이전의 상태를 의미
-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 및 분화
-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 ※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 ● 법 제2조의 1에 의거 임산물중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

- 목과류 : 밤·잣·대추·호도·은행 및 도토리
- 버섯류 :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 한약재용 임산물

ISSUE

도매시장 취급가능 농수산물의 범위를 식품까지 확대여부

- 영농조합법인 등 영세가공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가공식품 판매 허용 요구
- 현실적으로 유자청, 포장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어묵 등이 도매시장에서 판매중

### 3.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관련조항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 ①도매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개정 2007.1.3>
-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⑤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 ⑥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

- 개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
  - 지방도매시장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는 경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가 직접, 시가 개설하는 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개설
    - ※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을 개설하면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
  -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함(시행령 제16조)
  -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물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2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시행령 제15조)
- 도매시장 개설구역(법 제18조)
  -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함
  - 다만,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3월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17조제2항)
  -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전에 이를 공고
    - ※ 도매시장을 폐쇄할 경우 허가 또는 공고기간은 도매시장 거래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임

## □ 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 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할 때에도 같음(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한 때에는 당해 도매시장의 업무 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당해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음(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업무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함
  -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함
-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개설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7조제5항)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 기준(법 제19조제1항)
  -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를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할 수 있음(법 제19조 제2항)
  -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 □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법 제20조)

-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 개설자는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6조)

1.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거래 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9.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신고 및 출하여약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사항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0.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2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 부수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요율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 면적 조정·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
2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관한 사항
2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성립최저가격제시에 관한 사항
3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3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32.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7.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38.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 고 2>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7조)

1. 도매시장의 대지·건물 기타 시설의 종류·규모·구조 및 배치상황
2. 개설에 소요된 투자액의 자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당해 지역의 수급실적과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9. 당해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상황과 거래전망에 관한 사항

## 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 운영

관련조항

제21조 및 제22조

-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당해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안의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시행규칙 제18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
  -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 관리
  -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감독
  -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 '51. 6 :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 '76.12 : 지정도매인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하도록 규정
- '86.12 :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관리업무 수행 가능 ('85. 6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은 지방공사관리방식으로 개장)
- '93. 6 : 「농안법」 개정
  - 시장의 관리는 지방공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담당하고
  - 지방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지정도매법인이 관리 가능토록 예외 명시 (과거에도 민간시장은 지정도매법인이 관리)
- '94.11 : 「농안법」 개정
  - 공무원이 직접 시장질서를 유지토록 하는 관리사무소제도를 도매시장 관리의 원칙으로 함
  - 관리사무소로는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공공출자 법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지방도매시장도 개설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정도매법인 관리 가능조항 삭제
- '00.1 : 「농안법」 개정
  - 시장관리자(관리공사·공공출자법인)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사무소와 병렬적인 시장관리주체로 인정하고 시장관리기능을 강화
  - 시장관리의 주체가 관리사무소가 원칙이고 관리공사·공공출자법인은 예외이던 것이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관리공사·공공출자법인)의 병렬적인 체제로 변경
- '07.1 : 「농안법」 개정
  - 시장관리자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추가
  -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통해 시장활성화와 효율성 제고

### 공영도매시장 관리유형별 현황

- 관리사무소 형태 : 부산엄궁 등 28개 도매시장
- 관리공사(지방공기업) 관리 : 3개 도매시장(가락·강서·구리시장)
- 공공출자법인 관리 : 1개 도매시장(강릉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관리 : 1개 도매시장(춘천 도매시장)

### 외국의 도매시장 운영현황

- 미국(뉴욕 헨츠포인트 농산물도매시장)
  - 도매상으로 구성된 도매상조합(COOP)에 관리권 위탁
  - COOP는 시설물관리회사에 용역을 주어 시장관리업무 수행
- 일본(쓰끼지 농수산물도매시장)
  - 개설자인 동경도 소속 공무원이 직접관리
- 네델란드(알스미어 화훼경매장)
  - 화훼생산자조합 소속 관리회사(DFWB)에 의해 관리·운영
- 프랑스(헝기스 도매시장)
  - 관리주체는 SEMMARIS(관리공사)로 개설자 감독하에 운영

#### □ 도매시장의 운영

- 운영업무와 운영주체
  - 위탁판매, 대금결제 등 상행위를 말함
  - 운영업무 주체는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이 수행
- 도매시장의 운영 유형
  - ①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② 시장도매인만 두는 시장, 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음
  -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3가지 유형이 모두 가능
  -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①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2가지 유형이 가능함(법 제22조 단서에 의해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기 때문)
-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 적정수 지정의 취지는 주어진 시설여건하에서 거래효율을 높이고 과다지정에 따른 기능수행의 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위함

## 5.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관련조항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②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 것
  2.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④도매시장법인이 지정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 ⑤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⑥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매시장법인의 정의(법 제2조 제7호)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
- 도매시장법인은 물량의 집하기능이 그 주요 기능이며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팔아주는 것’ 이 생산농가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임
  -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이 생명인 도매시장제도에서는 수탁주체와 분산주체의 역할분담 필요
-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의 입장을 대변, 중도매인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함
  - 이 경우 5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
    - 지정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에게 영업의 지속성을 보장
    - 개설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여부에 반영함으로써 시장운영의 공공성 제고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시행령 제17조)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개설자에게 제출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 정관
- 주주명부
- 임원의 이력서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
-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를 거쳐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
- 임원의 자격은 법에서 정한 배제요건외에 지정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자격요건중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라 함은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해당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경비할 것을 말하며 회사외에 있으면서 회사의 이사회에만 참여하는 비상임 이사는 해당되지 않음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참고

## 허가 · 등록 · 지정의 의미

### ● 허가

허가는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후 국민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허가로 인한 이익은 통상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

### ● 등록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 ● 지정

지정은 사람·사업활동·상품 등을 특정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활동 허가에 준하는 의미로 사용



## 6.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관련조항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2조 단서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2.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 ③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④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제빙)·보관·후숙(후숙)·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경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함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못함
- 도매시장법인이 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90퍼센트 이하일 것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의 제한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영사업으로 수탁·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및 제35조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경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경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음
  - : 1. 제1차 위반 :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 1개월 금지/
  - 3. 제3차 위반 :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 1년 금지
- 경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나. 전자거래

◦ 전자거래 개요 및 도입취지

- 정가·수의매매에 한해 해당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07년 1월 농안법 개정시, 농안법 제35조 2항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전자거래를 허용
- 그동안은 모든 거래물량의 도매시장 반입으로 시장내 혼잡 가중 및 상하차비 발생으로 물류비용 증가



◦ 거래주체별 역할

<출하자>

- ① 전자거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출하주 등록) 및 전자거래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후 설치
- ② 출하예약 등록
  - 출하품목, 품종, 규격, 등급, 중량, 수량, 단가, 출하예정일 등 선택
- ③ 거래성사 여부 파악
- ④ 중도매인이 의뢰한 배송지로 물품 배송
- ⑤ 표준정산서 내역 및 입금확인

<도매법인·공판장(경매사)>

- ① 전자거래 홈페이지에 접수된 출하예약 사항 및 구매의뢰 사항 확인
- ② 거래단가 등 조율을 통해 거래성사 유도 및 최종 단가 입력
- ③ 중도매인으로부터 물품검수상 이상여부 확인
- ④ 출하자에게 표준정산서, 중도매인에게 낙찰명세서 발송
- ⑤ 중도매인 대금 입금 확인 및 출하자 대금 송금
- ⑥ 전자거래결과 개설자에게 보고

<중도매인>

- ① 전자거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중도매인 등록) 및 전자거래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후 설치
- ② 구매의뢰 등록
  - 품목, 원산지, 품종, 등급, 규격 등 선택
  - 중량, 수량, 단가 등 선택
  - 배송지, 수령인, 연락처, 구매희망일자 등 선택
- ③ 거래성사 여부 파악
- ④ 구매의뢰내역과 실제 배송내역의 일치여부 검수후 도매법인에 통보
- ⑤ 낙찰명세서 확인

◦ 전자거래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 2009년 전자거래 실적(청과물) : 25천톤, 399억원
- 상·물류 분리로 인한 물류비(수수료, 시장내 배송비, 하역비 등) 감소
- 유통시간 단축으로 상품 신선도가 향상되어 품질경쟁력 강화
- 거래물품의 시장 미반입으로 시장혼잡 예방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

## 7.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관련조항

### 제35조의 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개정 2008.2.29>

#### □ 도입배경

- 도매시장 운영·관리의 투명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지도기능 강화 필요
- 출하자, 산지유통인, 대형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 요구 증대
- 도매시장 정보제공의 의무, 제공방법·내용에 대한 규정 미흡하여 서비스 개선 필요
  - 도매시장은 공정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해 정부가 건설한 공영시장이므로 출하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 운영주체에게 정보의 공개를 유도

#### □ 공시정보의 종류, 방법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
  -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함

## 8. 공공출자법인의 설립

### 관련조항

### 제24조(공공출자법인)

-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에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당해 도매시장 또는 당해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3>
- ④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 □ 공공출자법인제도 도입배경

- 관리·운영 분리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공공출자법인 도입
  -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등의 관리와 도매시장법인이 운영을 분리 담당함으로써 업무가 중복되고 유통비용 과다 발생

※ 현재 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공출자법인체제 운영

## 9. 중도매인의 허가

### 관련조항

### 제25조(중도매인의 허가)

-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③ 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 중도매인의 정의(법 제2조제9호)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아래의 영업을 하는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 중도매인의 역할

- 가격형성기능 : 소비자(소매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매에 참가
- 물량분산기능 :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판매 및 중개

- '51. 6 :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중매인에 관한 규정 없음
  - 도매시장 상장물량은 누구든지 구입가능
- '73. 2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서 처음으로 중매업 허가제도 도입
  - 중매업의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 없음
- '76. 12 : 「농안법」 제정시 중매업제도 유지
  - 중매업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제25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
- '86. 12 : 「농안법」 개정시 중매업의 정의 명확화
  - “……매수를 중개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업 ”
- '93. 6 : 「농안법」 개정시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 '94. 11 : 「농안법」 개정시 중도매인을 도매거래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함

1993년 6월 의원입법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개정·공포되었는데, 개정 내용 가운데에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도매시장의 중매인은 단순히 중개만 하고 위탁판매, 수집판매, 도매행위 등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일체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중개행위만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매인의 위탁판매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중매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것이 소위 “농안법 파동”이다.



중도매인은 단순 중개만 할 뿐 현지 수집도매 행위를 못한다고 정한 1994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인 '농안법 파동'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한겨레신문)

당시 국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중매인의 도매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누누이 설명하였으나 당시 사회전체의 개혁 분위기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지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1993년 5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6월 11일 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중매인의 도매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예상한 대로 관련 단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5월 21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중매인조합연합회는 정부에 개정 「농안법」 시행 전에 문제 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매시장지정도매인협회도 중매인 거래를 중개에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개를 하고 남은 매잔품에 대해서 만이라도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 개정 심의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농림수산식품부도 1993년 6월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지정도매인 및 중매인 대표 등 12명으로 「농안법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중매인 도매행위 금지로 인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농안법 개정에 대한 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중매인 도매행위 금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매인의 영업 범위를 중개업에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법 시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매잔품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어, 중매인의 잔품 처리를 위한 도매행위에 대해서 중개행위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내용을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담은 조항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상 상위법인 「농안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한 채 1994년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최종 통과되었다.

“잔품처리의 중개행위 인정” 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자 도매시장 중매인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법 시행 첫날인 5월 1일은 일요일이어서 별일 없이 지나갔으나, 5월 2일 청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매수하지 않아 상장된 야채, 과일 220톤 가운데 67톤만 낙찰되고 153톤이 유찰되어 잔품으로 남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거래가격은 전날보다 60~90% 수준까지 폭락하였으며, 20여명의 출하 농민들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행정당국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고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5월 3일 오전 11시부터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전국 중매인이 집단시위에 들어갔고 도매시장은 큰 혼란은 맞았다. 5월 4일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아예 경매에 참가하지 않아 도매시장 건설 이래 처음으로 경매 없는 날이 발생하였고, 일부 농수산물만 출하자의 직판으로 거래되었다. 이처럼 도매시장이 마비되자 산지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의 서울 반입이 어려워져 가격이 폭락하고, 소비지에서는 물량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중매인 도매행위금지 조항으로 인해 발생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떠한 해결 실마리도 찾지 못하다 결국 5월 4일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즉 개정 「농안법」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홍보 및 제도 준비기간을 당초 1개월로 설정했던 것을 6개월로 연장하며, 이 기간 동안에 도매시장제도 및 운영개선 등을 포함하여 농수산물 유통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새로운 유통개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장관의 발표가 있는 후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기관의 유통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단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1994년 9월 1일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하였고, 11월 1일에는 재차 개정된 「농안법」이 공포되었다.



## □ 중도매업의 허가

-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중도매업의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5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개설자가 허가 유효기간 설정(다만, 개인인 중도매인은 3년이상 10년의 범위)
  - 부류별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함
  - 농수산물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함(법 제44조제2항)
  - 다만 도매시장 안에 설치된 공판장의 경우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영업 가능(법 제26조)
  
- 중도매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중도매인이 제25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는 중도매업 영업을 위한 필요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다만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실형의 선고”라 함은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업을 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법 제86조제3호)
  
- 중도매업 허가의 법적 성질
  - 중도매업 허가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제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허가에 해당함
  - 중도매업 허가는 대상자의 능력 등 주관적 요소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대인허가이므로 임의적인 양도·양수가 제한되는 성질을 가짐

## □ 중도매업 허가절차(시행규칙 제19조)

-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인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이력서, 은행의 잔고증명서
  - 법인의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개설자는 중도매업 허가시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중도매인의 거래(법 제31조제2항)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음
  -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요건
  -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
  
- 비상장허가 농수산물 거래 중도매인의 준수사항(도매시장법인 준용규정)
  - 제35조제1항 :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 판매업무를 하지 못함
  - 제38조 : 수탁, 위탁 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제39조 :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농수산물을 인수
  - 제40조제2항·제4항 : 표준하역비 부담, 하역전문업체 등과 하역 용역계약 체결
  -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 : 정산창구를 통한 대금결제
  -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 시장사용료, 위탁수수료
  - 제81조 :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

□ 중도매인의 의무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함 (법 제39조제1항)
-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법 제25조제4항)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88조제3호)
-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업무집행상황 보고의무(법 제79조제2항)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보고 제외, 법 제90조제2항제3호)

□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법 제82조제5항)
  -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84조)

< 참고 >

도매시장 상장에외품목 현황('08 기준)

구분	상장에외품목	
서울가락	청과	호두, 밤, 앵두, 버찌, 산딸기, 은행, 석류, 머루, 무화과, 잣, 탕자, 보리수, 오디, 모과, 살구, 매실, 대추, 꽃감, 키위, 파인애플, 자몽, 레몬, 망고, 야자, 건포도, 아몬드, 코코넛, 아보카도, 춘채, 유채, 토란, 마, 더덕, 도라지, 우엉, 연근, 야콘, 토란대, 땅콩, 동부, 채두, 건고추, 목이버섯, 석이버섯, 영지버섯, 아스파라거스, 케일, 비트, 방울양배추, 적환무, 두릅, 원추리, 돌나물, 고들빼기, 명아주, 비름, 쑥, 고비, 속새, 씬바귀, 참나물, 고사리, 죽순, 무말랭이, 호박고지, 박고지, 건가지, 건표고, 계피, 호박잎, 고추잎, 솔잎, 머위, 가죽나무순, 콩나물, 숙주나물, 갓, 취나물, 달래, 고구마순, 냉이, 신선초, 생강, 브로콜리, 파세리, 루비볼, 칼리후라워, 물미역, 파래, 잎마늘, 마늘쫑, 말, 톳, 청각, 다시마, 무순, 알파파, 겨자잎, 교나, 비타민, 빈스, 순무, 도토리, 양상추, 샐러리, 풋콩, 완두콩, 강낭콩, 마늘, 깎마늘, 고구마, 알타리, 산물쪽파, 채소 기타 (86개)
	수산	재첩, 맛, 개조개, 게, 가무락, 갑오징어, 논우렁, 문어, 게지, 해삼, 우렁이, 곤지, 개량조개, 꿀뚜기, 해파리, 피조개, 개불, 한치, 가재, 대합, 전복, 골뱅이, 새조개, 키조개, 백합, 패류, 새우젓, 멸치젓, 창란젓, 명란젓, 젓갈류, 조미오징어, 조미취치포, 조미명태포, 조미김, 조미조개살, 봉지미역, 건과기타
대구북부	청과	건가지, 고구마순, 고들빼기, 고사리, 고추잎, 냉이, 달래, 더덕, 도라지, 돌나물, 동초, 두릅, 마늘쫑, 머위잎, 박, 박고지, 방아, 봄동, 배추뿌리, 참나물, 참비름, 쑥, 씬바귀, 아욱, 열갈이, 열무, 우엉잎, 죽순, 취나물, 호박고지, 갓, 호박잎, 알타리무, 대파, 쪽파, 건고추, 미나리(비포장품), 상추(비포장품), 시금치(비포장품), 부추(비포장품), 겨자채, 양상추, 치커리, 컴프리, 케일,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오크라, 파세리
부산영궁	청과	배추, 열갈이배추(단배추), 양배추, 열무, 무, 알타리무, 건고추, 건마늘, 깎마늘, 생강, 냉동고추, 파종자, 참깨, 들깨, 건청각, 흥고추다대기, 청각, 톳나물, 말
부산반여	청과	무, 배추, 양배추, 알타리무, 열무, 단배추(열갈이포함), 건고추, 건마늘, 깎마늘, 생강, 참깨, 건청각, 양파, 고구마, 쪽파, 부추, 풋마늘
울산	수산	대구포, 가오리포, 찢은 북어포, 찢은 명태살
구리	청과	쪽파, 알타리무, 마, 토란, 더덕, 도라지, 연근, 야콘, 토란대, 동부, 완두콩, 채두, 강낭콩, 비트, 적환무, 신선초, 청경채, 파세리, 케일, 샐러리, 칼리플라워, 무순, 브로콜리, 양상추, 치커리, 알로에, 새싹채소, 고수, 당귀, 로즈, 적근대, 적치, 비타민, 로메인, 레드, 오크립, 뉴그린, 겨자, 빈스, 아스파라거스, 알파파, 유채, 미나리, 갓, 깎마늘, 생강, 건고추, 참깨, 들깨, 무말랭이, 호박고지, 고구마줄기, 계피, 다래순, 머위(대), 마늘쫑, 고들빼기, 달래, 쑥, 고비, 속새, 씬바귀, 취나물, (건)고사리, 냉이, 죽순, 모시대, 목이버섯, 석이버섯, 파래, 물미역, 미역줄기, 싹다시마
	수산	가무락, 가재, 개불, 개조개, 게지, 게(꽃게제외), 곤지, 대합, 맛, 문어, 백합, 새조개, 우렁이, 재첩, 전복, 키조개, 피조개, 해삼, 해파리, 갈치포, 건가오리, 건까나리, 건꿀뚜기, 건콩치, 건멸치, 건물메기, 건문어, 건미역, 건새우, 건오징어, 건조개살, 건해삼, 건해파리, 건홍합, 과메기, 굴비 김, 노가리, 다시마, 대구포, 건명태, 뽕이, 뽕어포, 실치, 쥐치포, 한치

## 10. 시장도매인의 지정과 영업

관련조항

제36조, 제37조

### ●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1.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중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 시장도매인의 정의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법 제2조제8호)
- 통상 “도매상” 이라고 하나 기존도매상과 자격, 정산방법, 영업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용어로 “시장도매인” 이라고 함

<시장도매인과 일반위탁상의 비교>

구 분	시 장 도 매 인	일반 위탁상(도매상)
운영주체의 법인격	법 인	대부분 개인 위탁상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규모 등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정산의무	정산제도 이용 의무화	없 음
지정기간	5~10년 사이에서 개설자가 지정	없 음
영업활동규제	정당한 이유없는 수탁거부 금지 필요한 경우 개설자가 수탁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	없 음

□ 도입형태

< 지방도매시장 >

- 「농안법」 시행일인 2000. 6. 1부터 도입
-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시장도매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가능

< 중앙도매시장 >

-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입 가능 → 시행령 부칙 개정('05.6.23)으로 2005년 7월1일로 명시
-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경우가 법률적으로 가능

## □ 시장도매인의 지정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등)로 5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시행령 제18조)

###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 정관,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
-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함(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6호)
  - 적정수는 개설자가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류별로 상한수를 정함
  - 임원의 자격은 법에서 정한 배제요건외에 지정에 우선 순위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민간업체와의 경쟁 및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 최저거래금액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정함

## □ 시장도매인의 영업

-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거래한 내역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5조제2항)

-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방법을 허위 기재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함
- 시장도매인은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재매매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발생한 차손금은 당초의 매수인이 부담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를 정함
-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
  -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 시장도매인은 정산창구를 통하여 출하자에게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



< 참고 1 >

시장도매인 관련 운영규정

- 시장도매인의 지정(제36조)
  - 지정유효기간 설정, 시장도매인의 자격요건
- 시장도매인의 영업(제37조)
  - 매수 또는 수탁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
  - 당해시장내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외의 자에게 판매
- 수탁의 거부금지 등(제38조)
  -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자는 즉시 인수(제39조)
- 하역업무(제40조)
  - 표준하역비 부담, 하역업무는 용역체결 운영 가능
- 대금결제(제41조)
  - 매매된 경우 즉시 결제, 정산제도 이용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제42조)
- 시장도매인이 매수하여 도매거래하는 경우 산지유통인등록 면제(제29조)
- 민영도매시장에서도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 가능(제48조)
- 유사도매시장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구역내의 농수산물 도매업자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 가능(제64조)
-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실시(제77조)
- 시장도매인에 대한 기장사항, 거래내역보고 지시(제79조)
- “            업무처리의 개선 등 명령(제81조)
- “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제82조)

< 참고 2 >

시장도매인제 도입경위

□ 추진경과

- 국민의 정부출범후 농산물유통개혁을 위하여 「농산물유통개혁대책위」를 구성, 유통개혁과제를 논의('98. 3 ~ '99. 6)
  - \* 직거래의 제도화, 공영도매시장개혁, 산지유통과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물류 및 정보체계개선, 수급안정 등 과제 논의
  - 건의된 개혁대책을 바탕으로 '98. 7.23 대통령께 「농산물유통개혁대책」 보고
- 입법과정에서도 도매시장 개혁과제로 선정된 도매상제(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농안법 개정안 마련
  - 도매상제의 도입범위(중앙·지방), 영업범위(매수·수탁 등) 등에 대하여 논의
- '98.12.2에 국회에 농안법 개정안 제출, '99.12.16에 개정안 의결
  - \* 주요내용 : 시장도매인제도입, 표준하역비 등 도매시장개혁대책과 유통명령, 자조금 등 수급안정제도 도입
- 농안법 공포('00.1.28)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00. 6에 완료하고 시행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의과정>

- '98. 3. 각계 전문가 30인으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및 총괄반 등 5개 실무대책반 발족
- '98. 5. “도매상제 도입” 전국중도매인 성명서 발표
- '98. 6. 농수축산물유통개혁 정책기획단 회의개최(국민회의)
- '98. 6. “농업인 동의없는 수탁매매 도입 반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발표
- '98. 6. “도매상제 도입 반대” 농협공판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 '98. 6.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3차 공청회(프레스센터 19층)
- '98. 7. “도매상제 도입 요구” 시설채소 생산자연협회 호소문 발표
- '98. 8. 국민회의 “농축산물유통개혁안” 발표, 서남권 도매시장에 도매상제 도입
- '98. 9.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한농연 시위집회
- '98.10. 농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 '98.10. 중도매인 과천청사앞 집단시위
- '98.11. 농안법 개정안 2차 입법예고
- '98.12. 농안법 개정안 국회 제출
- '99. 1. 농안법 개정안 4차 공청회 실시(국회의원 회관)
- '99. 3. 국회농림해양위 주관 농안법개정 공청회 개최
- '99.12. 농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0. 1. 농안법 개정안 공포
- '00. 6. 농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 11.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 관련조항

제23조의 2, 제25조의 2, 제36조의 2

### ● 제23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 ①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승인을 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 제25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 ● 제36조의2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1.3]

## □ 도입배경

- 도매시장법인 등은 인적구성, 자산 규모면에서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시급
-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유도로 도매시장 구조 개선 촉진
  -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으로 경영 효율 증대 및 전국 단위의 경영규모 실현
  - 부실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퇴출 경로 마련으로 규모화 및 법인화 유도

##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절차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신청 이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 「상법」 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계약서 사본
  -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년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음
  -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 것
  -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법인인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의 인수·합병의 승인절차

-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절차로 실시

□ 인수·합병을 통한 기대효과

- 도매시장 거래관계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유도로 도매시장정비 촉진
  - 부실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퇴출 경로 마련으로 규모화 및 법인화 유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으로 경영 효율 증대 및 전국 단위의 경영규모 실현
- 거래관계자의 경영성과 제고를 통하여 도매시장 출하자 및 구매자 편의 제고
  - 도매시장거래의 투명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규모화된 산지와와의 거래능력 제고
  - 거래규모 확대로 대형유통업체 등 도매시장 고객을 유치 가능

## 12. 매매참가인의 신고

### 관련조항

### 제25조의 3(매매참가인의 신고)

-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1.3]

#### □ 매매참가인의 정의(법 제2조제10호)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함

#### □ 매매참가인 제도의 의의

- 매매참가인 제도는 도매시장(또는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중도매인과 함께 경매입찰에 참가시킴으로써 경매를 활성화시키고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 매매참가인 제도의 연혁

- '73. 2 : 매매참가인 승인제도 도입
- '76. 12 : 매매참가인 등록제로 변경, 등록대상을 시행규칙에 반영
  - 도매시장 거래품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가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 대량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구입하는 자
- '94. 5 : 매매참가인 정의 규정 신설
  - 가공업자, 농수산물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실수요자로 한정
- '94. 11 : 매매참가인의 정의를 수요자로 확대
- '00. 1 : 매매참가인의 등록제 폐지
  - 도매시장 경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폭넓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매활성화 도모
- '07. 1 : 매매참가인의 신고제 도입

#### □ 매매참가인의 신고(시행규칙 제19조의3)

-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증명사진(2.5cm×3.5cm) 3매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13. 경매사의 임면

### 관련조항

### 제27조(경매사의 임면)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경매사는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③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8.2.29>

#### □ 경매사의 정의(법 제2조제13호)

-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 경매사의 업무

- 경매사의 임무
  - 생산자(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주는 매매자의 역할
  -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 도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수행
    - ※ 도매시장에 전자경매 등의 도입으로 경매사의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도매시장내 경락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능외에 품질평가, 산지집하 및 경매후 관리기능 등의 중요성 증대

-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
  - 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 : 제3자 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 : 수뢰후 부정퇴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 : 알선수뢰

□ 경매사의 임면제도

-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함
  -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 · 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함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 자격요건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8조제4호)
-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은 경매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경매사 면직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 경매사 자격시험

- 경매사 자격시험 실시
  -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법 제27조의2)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위탁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경매사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의 일부면제 등(시행령 제17조의3)
  -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를 대상으로 시행
  - 제1차시험은 도매시장 관계 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상품성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진행으로 함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의 제1차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의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면제함
  -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신속한 인력 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음
  -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함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 경매사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cm × 4cm) 1매



제1회 경매사 자격시험실시(1990.8.16)



## 14. 산지유통인의 등록

관련조항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 ①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②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지유통인의 정의(법 제2조제11호)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 연혁

- '94. 11 : 수집상등록제 도입('95.7.1 제도 시행)
- '00. 1 : 수집상에서 산지유통인으로 용어변경

□ 산지유통인 등록제의 취지

- 농산물유통에 있어서의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인정하여 유통효율성 제고와 농수산물 출하조절과 가격안정 도모
- 산지유통인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중도매인의 불법수탁, 수집행위 근절

□ 산지유통인의 등록(법 제24조)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 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 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의 등록예외(시행규칙 제25조)

-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 산지유통인에 대한 벌칙

-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6조제4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8조제5호)
-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 산지유통인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8조제6호)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 업무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29조제5항)
  - 이러한 도매시장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90조제3항제2호)

#### □ 산지유통인에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 개설자는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에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

## 15. 출하자 신고

### 관련조항

### 제30조(출하자 신고)

①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2009.1.1] 제30조

- 산지유통인 등록제에 부가하여 출하자(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경우에도 신고제를 실시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및 품질의 안정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
  -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자(산지유통인)는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함(법 제29조)
- 출하예약을 통하여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별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약출하를 유도
  - 출하자가 사전에(2,3일전) 도매시장법인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출하할 품목·수량·시기 등을 예약한 후 출하
- 출하자 신고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음

## 16. 수탁판매 원칙과 매매방법

관련조항

제31조 ~ 제33조

### ●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①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2조 (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화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 수탁판매의 원칙 (법 제31조제1항)

-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함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음

### ※ 수탁판매의 예외 (시행규칙 제26조)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 거래물량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 · 수량 · 원산지 · 매수가격 · 판매가격 및 출하자
  -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 □ 매매방법의 예외

-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할 수 있는 경우
  -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 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 동일한 출하자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등급규격을 갖춘 농산물을 「산업표준화법」의 한국 산업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경우
  -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는 농수산물
  -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경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수산물
- 통관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 및 출하자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사유

□ 경매 또는 입찰방법 (법 제33조)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함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공개경매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음.
  -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으로 경매 또는 입찰할 수 있는 경우(시행규칙 제31조)
    -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의 판매
    - 기타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량입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음
  - 우선판매 대상품목 (시행규칙 제30조)
    - 대량입하품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 예약출하품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 거래성립최저가격 제도
  -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성립최저가격 제시요건(시행규칙 제29조)
    - 서면일 것
    - 출하자 및 거래성립최저가격 등이 기재될 것
    -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농수산물의 판매과정에 입회한다는 뜻이 기재될 것



## 경매 및 입찰방법과 절차

###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 □ 경매절차

-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해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순서에 의거 출하자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 경매실시
  -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 < 참 고 1 >

### 외국도매시장의 거래방법

#### 일 본

- 중앙도매시장의 매매거래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제시
  - ※ '99년 법 개정 시 경매원칙 폐지
- 매매거래의 방법
  - 경매 또는 입찰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업무규정으로 정해진 것(제1호)
  - 도매예정수량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상대거래에 의한 것으로 업무규정에 정해진 것(제2호)
  - 기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또는 상대거래(제3호)
- 거래방법 지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상대거래 실시
  - 경매 또는 입찰 지정 거래라도 상대거래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재해의 발생, 입하의 지연, 도매의 상대방이 소수인 경우, 경매 또는 입찰에도 잔품의 도매를 하는 경우, 예약수의거래의 경우, 도매개시시작전 도매를 하는 경우, 제3자 판매의 경우
  - 상대거래 지정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입찰해야 하는 경우
    - 입하량의 현저한 감소, 수요의 현저한 증가가 발생한 경우
- 선취거래는 개설자가 인정한 경우에 가능
  - 개설구역내 다른 시장의 입하량 조정, 개설지역 외 도매시장과의 도매거래, 예약 상대거래를 하는 경우 등

#### 대 만

- 거래방식은 경매거래, 협의가격거래(상대거래), 표시가격거래, 투표거래(입찰)가 있으며, 시장별로 거래방식을 정하나 협의가격거래 제도 운영시장이 대부분 차지
  - ※ 표시가격거래 : 출하자가 시장직원을 대동하여 물품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시장내 모든 유통주체(도매업자, 중매인, 가공업자등)가 표시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

#### 프랑스

- 도매상제 정착으로 거래방법은 전통적으로 상대거래가 지배적이며,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시장내 직접 판매하는 제도 병행

#### 미 국

-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통상 출하자와 사전 계약에 의한 상대거래 실시

< 참 고2>

일본 「도매시장법」의 거래관련 규정

제34조(매매거래의 원칙)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제35조(매매거래의 방법) ① 도매업자가 중앙도매시장에서 하는 도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농수산물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기재하는 매매거래의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경매 또는 입찰방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한 농수산물 등으로써 업무규정으로 정해진 것 : 경매 또는 입찰방식
2. 매일의 도매예정수량중 적어도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 것이 적당한 농수산물 등으로써 규정으로 정해진 것. 그리고 매일의 도매예정수량중, 개설자가 농수산물 등의 품목마다 정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또는 상대에 의한 거래방법(하나의 도매업자와 하나의 도매상대방이 개별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상대거래])
3. 전2호 이외의 농수산물로써 업무규정으로 정해진 것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또는 상대거래

②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하는 농수산물 등(동항 제2호에 기재하는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동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재해의 발생 기타 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설자가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한 방식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상대거래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기재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해당시장으로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줄거나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개설자가 지시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개설자는 제1항 제2호의 일정한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표해야만 한다.
- ⑤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개설자가 제1항 제2호의 일정한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9조(시장밖에 있는 물품의 도매금지)** 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도매 업무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제15조[도매업무의 허가]제1항의 허가를 받아서 도매업무를 하는 시장 내에 있는 농수산물 등 이외의 농수산물 등의 도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도매시장과 관련된 개설구역 내에 있어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장소 (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해당개설구역의 주변지역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있는 농수산물 등의 도매를 할 경우
2. 개설자가 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규정에서 정한 것에 의하여 해당 중앙도매시장과 관련된 개설지구 내에 도매업자가 신청한 장소에 있는 농, 수산물 등의 도매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거래방법 그 외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거래방법에 의해 신선식료품 등의 도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 효율적인 도매거래를 위해 필요하며, 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힐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을 경우

**제40조(도매업자에 대한 도매상대방으로서의 구입금지)** 도매업자(그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그 당사자가 제15조(도매업무의 허가)제1항의 허가를 받아 도매업무를 하는 시장에서 그 허가와 관련된 취급품목의 부류에 속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도매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농수산물 등을 구입 해서는 아니된다.

## 17. 거래의 특례

관련조항

제34조(거래의 특례)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도의 내용

- 도매시장법인은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음

### □ 시행방안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은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거래특례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개설자에게 제출
  -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
  - 판매한 사유

#### □ 거래특례(제3자 판매) 허용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수탁거부금지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반면, 출하량은 기복이 크고 사전예측이 어려워 수급상 일시적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 도매시장법인에 따라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간 가격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출하자과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우려
- 그리고 중도매인이 특정법인의 경매에 불참할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에게 막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폭락을 방지

## 18. 수탁의 거부금지 가능사유

### 관련조항

###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일 2009.1.1] 제38조제2호, 제38조제3호, 제38조제4호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거부금지
  - 수탁의 거부금지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 거래 교섭력이 부족한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수탁거부 금지 규정에 따라 하품(下品), 비규격품, 유해농산물 유입으로 경락가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 발생
  - 안전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산지 규격화 선도 기능 미흡
  - 도매시장의 환경규제 강화로 비규격 농산물 출하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증가

#### □ 수탁거부 가능 사유

-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 19. 출하대금결제

### 관련조항

###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에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판매원표·표준정산서·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 대금결제원칙 : 정산창구 이용

- 예외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직접결제 가능

#### □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시행규칙 제36조)

- ①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송품장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 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 ④ 정산창구는 출하자에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 □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시행규칙 제36조)



## □ 정산창구의 기본 개념

- 정산창구의 개념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의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 정산창구 방식별 개념
  - < 정산회사방식 >
    - 정산업무를 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대금결제를 자기 책임으로 하는 방식
    - 출자자는 시장관계자(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단체, 산지 유통인 등)로 하는 방식
  - < 정산조합방식 >
    - 시장도매인이 정산조합을 설립, 정산조합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직접 지는 방식임
  - < 금융기관(농·수협 등)이용 방식 >
    - 개설자가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고, 금융기관이 별도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유사
  - < 개설자 관리방식 >
    - 개설자가 직접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정산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공사 체제에 적합
    -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금융기관 이용방식과 유사하나 두가지제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 □ 정산창구의 유형

- 정산창구의 유형은 크게 자본금을 출자하는 정산회사방식, 대금결제전용 계좌관리방식, 개인지불방식등이 있으며,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방식은 관리주체에 따라 정산조합방식, 금융기관 이용방식, 개설자 관리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정산창구는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 상기의 유형중에서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설자(공사) 관리방식 등을 검토

- 송품장, 판매원표 등 농산물 거래서식을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기반구축 및 표준규격 출하 유도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규격화 촉진의 핵심인 표준송품장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표준송품장의 사용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기재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표준송품장을 제출받은 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 판매원표 관리(시행규칙 제37조의3)
  -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 품명, 등급, 수량, 경락가격, 매수인, 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함
  -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등급·수량·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함
  -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입하물품의 부패·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시행규칙 제38조)에 포함될 사항
  - 표준정산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자 명
  - 출하자 명
  - 출하자 주소
  - 거래방법(매수·위탁·중개) 및 매매방법(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 판매내역(품목·품종·등급별 수량·단가 및 거래 단위당 수량 또는 중량), 판매대금 총액 및 매수인
  - 공제내역(위탁수수료·운임선급금·하역비·선별비·쓰레기유발부담금 등 비용) 및 공제금액 총액
  - 정산금액
  - 송금내역(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20.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관련조항

###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2008.2.29>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 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 할 수 없음

- 도매시장 사용료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
- 시설사용료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의 점포 등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농림수산물부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

- 위탁수수료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징수

※ 위탁수수료란?

위탁자(출하자)가 위탁의뢰한 농산물을 수탁자(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가 자기책임하에 판매, 대금정산을 하고 그 대가로 위탁자(출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 중개수수료 :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률을 징수

※ 중개수수료란?

매수자 또는 판매자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자가 중개를 시키고 그 용역의 대가로 매수자와 판매자로 부터 받는 수수료

- 쓰레기유발부담금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품목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
  -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 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 도매시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개설자가 정하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음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각각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
  - 기준으로는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그 중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

-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징수는 개설자가 정하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음
  - 징수대상시설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의2의 부수시설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 시설사용료 : 연간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함
    -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
  
-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 :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이내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한도 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 징수품목 : 배추·무·마늘·양배추·파·양파·기타 농림수산물장관이 정하는 품목

## 21.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관련조항

### 제38조의 2(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08.2.29>[본조신설 2007.1.3] [시행일:2009.1.1] 제38조의2

□ 농안법상 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전무

- 2000년 법 개정시 “개설자는 유해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가능” 규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과 중복 규정 사유로 삭제

□ 일부 도매시장에서 개설자가 자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자 제재 조치의 실효성 미흡

- 출하자 등록 관리 부실 및 수탁거부 금지 규정에 위반
- 위반자의 차·가명 출하시 제재 불가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 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농수산물 종류별 시료 수거량

- 곡류·두류 및 그 밖의 자연산물: 1kg 이상 2kg 이하
- 채소류 및 과실류 자연산물: 2kg 이상 5kg 이하
- 묶음단위 농산물의 한 묶음 중량이 수거량 이하인 경우 한 묶음씩 수거하고, 한 묶음이 수거량 이상인 시료는 묶음의 일부를 시료수거 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묶음단위의 일부를 수거함으로써 상품성이 떨어져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묶음단위 전체를 수거할 수 있음

※ 수산물의 종류별 시료 수거량

종 류	수 거 량
초대형어류(2kg 이상/마리)	1마리 또는 2kg 내외
대형어류(1kg 이상~2kg 미만/마리)	2마리 또는 2kg 내외
중형어류(500g 이상~1kg 미만/마리)	3마리 또는 2kg 내외
준중형어류(200g 이상~500g 미만/마리)	5마리 또는 2kg 내외
소형어류(200g 미만/마리)	10마리 또는 2kg 내외
패 류	1kg 이상 2kg 이하
그 밖의 수산물	1kg 이상 2kg 이하

◦ 안정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수거 시기

- 시료수거는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매상으로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안전성 검사 실시를 위한 시료 수거 방법

- 출하일자 · 출하자 · 품목이 같은 물량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함
-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포장단위당 무게, 적재상태 등을 감안하여 수거지점(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함
- 시료수거 대상 농수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외관 및 냄새,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할 수 있음
- 시료 수거 시에는 반드시 출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 안전성 검사 방법

-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함

□ 안전성검사결과 미달품 출하자 출하제한

- 도매시장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3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함



## 22. 하역업무

### 관련조항

### 제40조(하역업무)

-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 ④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 하역의 개념

- 출하자가 농산물을 도매시장내에 반입하면 "상품하차 ⇒ 선별 ⇒ 진열 ⇒ 경매 ⇒ 이적(중도매인 점포까지) ⇒ 상차(반출차량)" 등의 과정이 이루어짐
  - 이때 경매를 제외한 부분은 넓은 의미의 하역이라 하며
  - 하차, 선별, 진열 등 경매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좁은 의미의 하역 또는 경매를 위한 작업이라고 함

#### □ 하역과정에서의 하역비 부담 주체

- 하차, 선별, 진열비 : 출하자
- 이적, 상차비 : 중도매인

□ 표준하역비 도입

- 개념 : 도매시장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 비용부담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 시행시기 : 2002년 1월 1일
- 도입취지
  - 하역비 부담주체가 불특정다수(출하자)로서 하역비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없었는데 표준하역비 도입으로 하역기계화 촉진
  - 하역비를 점진적으로 도매시장법인 등 시장운영주체가 부담하게 하여 하역체계 개선의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 하역자를 도매시장법인 직원화 또는 용역업체 등으로 하여 하역기계화 촉진 유도

□ 하역업무 개선 등 조치명령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하역용역계약 근거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참 고>

공영도매시장별 하역인력 및 하역비 현황('08년, 청과)

(단위 : 명, 백만원)

시장명	계		노동조합		용역		법인직원		자체하역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서울가락	1,255	28,515	1,255	28,515	-	-	-	-	-	-
서울강서	439	6,218	-	-	360	4,031	7	168	72	2,019
부산엄궁	112	3,661	112	3,661	-	-	-	-	-	-
부산반여	79	2,767	-	-	29	1,083	-	-	50	1,684
대구북부	132	3,906	-	-	-	-	-	-	132	3,906
인천구월	88	3,209	88	3,209	-	-	-	-	-	-
인천삼산	78	2,800	55	1,877	-	-	-	-	23	923
광주각화	125	3,393	125	3,393	-	-	-	-	-	-
광주서부	78	2,176	-	-	78	2,176	-	-	-	-
대전오정	81	2,805	71	2,365	-	-	-	-	10	440
대전노은	46	1,557	32	1,127	14	430	-	-	-	-
울산	42	1,418	-	-	-	-	-	-	42	1,418
수원	59	1,756	21	674	20	560	-	-	18	522
구리	254	4,683	93	1,829	161	2,854	-	-	-	-
안양	46	1,085	-	-	46	1,085	-	-	-	-
안산	48	1,014	-	-	48	1,014	-	-	-	-
춘천	7	128	-	-	4	60	-	-	3	68
강릉	16	242	-	-	-	-	-	-	16	242
원주	20	485	-	-	-	-	-	-	20	485
청주	61	1,091	-	-	-	-	-	-	61	1,091
충주	23	386	-	-	-	-	-	-	23	386
천안	37	1,165	-	-	-	-	-	-	37	1,165
전주	46	1,224	-	-	46	1,224	-	-	-	-
익산	40	860	-	-	28	543	3	48	9	266
정읍	22	325	-	-	-	-	-	-	22	325
순천	34	940	34	940	-	-	-	-	-	-
안동	120	1,711	-	-	-	-	-	-	120	1,711
구미	14	324	-	-	-	-	-	-	14	324
포항	20	472	-	-	-	-	-	-	20	472
창원	35	878	35	878	-	-	-	-	-	-
진주	41	1,068	-	-	-	-	-	-	43	1,068
마산	43	1,094	19	487	-	-	-	-	22	607
계	3,541	83,356	1,940	48,955	834	15,060	10	216	757	19,122

## 23.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관련조항

### 제42조의 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도매시장규모 및 시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지방도매시장의 운영난 심화
  - 지방도매시장의 소량 구색 품목 부족으로 도매시장 거래 왜곡 현상 발생
  -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영세화 심화로 지속적인 취급물량 감소
- 중앙·지방도매시장에 대한 이원적 접근의 필요성
  - 지방도매시장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 부여 필요
  - 지방도매시장의 도매 업무외 선별·포장·직판 등 기능 복합화로 시장 활성화
- 운영특례 가능 조항
  - 법 제31조제1항 단서외 사유를 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음
  - 법 제31조제2항 단서외의 사유를 정하는 경우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음.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 제32조 단서외의 사유를 정하는 경우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음

## 24. 도매시장 등의 평가

### 관련조항

### 제77조(평가의 실시)

- ①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진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평가목적

- 도매시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정착과 도매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
- 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도매시장 운영개선 정책에 반영

#### □ 평가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 평가절차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다음년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개설자에게 통보(12월 31일까지)
  - \*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자체평가 실시
- 평가대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자체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자체평가의 결과 및 유통실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참 고>

## 도매시장 주요 통계('08년 기준)

가. 시장종류별 현황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시 장 수	50	11	36	3
도매법인수	121	41	77	3
시장도매인수	55	3	52	-
도매법인임직원	3,133	1,539	1,571	23
중 도 매 인	8,429	4,840	3,566	23
매매참가인	575	183	363	29

나. 시장종류별 거래실적

(단위 : 톤, 억원)

구 분	'07				'08			
	물량	(비중)	금액	(비중)	물량	(비중)	금액	(비중)
계	6,993,325	100	93,230	100	7,257,209	100	97,216	100
중앙도매시장	4,363,274	62.4	58,392	62.6	4,495,278	62.0	59,855	61.4
지방도매시장	2,613,434	37.4	34,680	37.2	2,739,860	37.7	37,122	38.0
민영도매시장	16,617	0.2	158	0.2	22,071	0.3	239	0.7

다. 부류별 거래실적

(단위 : 톤, 억원)

구 분	'07				'08			
	물량	(비중)	금액	(비중)	물량	(비중)	금액	(비중)
계	6,993,325	100	93,230	100	7,257,209	100	97,216	100
청과류	6,406,081	91.6	72,678	77.9	6,669,750	91.9	74,308	76.6
수산물	355,436	5.1	10,176	10.9	345,760	4.8	10,741	11.0
축산물	158,064	2.3	9,038	9.7	160,290	2.2	10,519	10.8
양곡류	73,347	1.0	1,304	1.4	81,000	1.1	1,613	1.7
약용류	397	0.0	34	0.0	409	0.0	35	0.0

라. 종사자 현황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1) 전체 임직원

(단위 : 명)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약 용
계	3,133	2,040	568	503	2	20
중 앙 도 매 시 장	1,539	1,009	407	123	-	-
지 방 도 매 시 장	1,571	1,008	161	380	2	20
민 영 도 매 시 장	23	23	-	-	-	-

2) 경매사

(단위 : 명)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약 용
계	967	792	153	20	-	2
중 앙 도 매 시 장	522	448	69	5	-	-
지 방 도 매 시 장	439	338	84	15	-	2
민 영 도 매 시 장	6	6	-	-	-	-

중도매인

(단위 : 명)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약 용
계	8,429(1,835)	6,650(1,242)	1,503(555)	182(35)	65(3)	29(-)
중 앙 도 매 시 장	4,840(1,067)	3,806(770)	984(264)	50(33)	-	-
지 방 도 매 시 장	3,566(768)	2,821(472)	519(291)	132(2)	65(3)	29(-)
민 영 도 매 시 장	23(-)	23(-)	-	-	-	-

주) ( )는 중도매인 법인 수

□ 매매참가인

1) 구성별·부류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계	575	346	82	52	95	-
가공업자	55	14	9	32	-	-
소매업자	429	297	28	9	95	-
수출업자	5	-	5	-	-	-
협동조합	38	29	3	6	-	-
소비자단체	3	2	1	-	-	-
기타	45	4	36	5	-	-

2) 시장별·부류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계	575	346	82	52	95	-
중앙도매시장	183	151	27	5	-	-
지방도매시장	363	166	55	47	95	-
민영도매시장	29	29	-	-	-	-

□ 산지유통인

(단위 : 명)

구분	계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계	10,841	5,090	5,033	370	-	348
중앙도매시장	6,443	3,261	3,148	34	-	-
지방도매시장	4,381	1,812	1,885	336	-	348
민영도매시장	17	17	-	-	-	-



## Ⅶ.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1. 공판장의 개설·운영

#### 관련조항

####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①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공판장 정의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시행령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 농협공판장 현황

- '08년말 산지공판장은 44개소가 개장·운영 중에 있으며, '02년부터 정비·용도전환으로 감소 추세

- 공판장 수 : '02) 58개소 → '04) 49 → '06) 47 → '07) 45 → '08) 44

(단위 : 톤,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산지공판장(44)	448	4,635	408	5,342	378	4,967	410	5,062

※ 화훼공판장 5개소 제외

## □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

-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설기준
  - 공판장의 시설기준은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 부령으로 정함(법 제67조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내에 이를 갖추어 줄 것을 조건으로 개설 승인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집하장중 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음  
(법 제50조제3항)
-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서에 당해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19조)

### <개설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 (시행규칙 제40조)

- 공판장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경우에는 제외
- 운영관리계획서
-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 ※ 공판장의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

## □ 농수산물공판장의 거래관계자

-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수 있음(법 제44조)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거래관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 개설자가 지정하되, 지정기준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허가에 관한 규정 준용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되, 등록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 등록 규정을 준용
  - 공판장 경매사는 공판장개설자가 임면하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경매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다만, 도매시장안에 입주한 공판장의 중도매인, 산지유통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에서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46조)

## □ 농수산물공판장의 운영

-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5조)
  - 제31조 : 수탁판매의 원칙
  - 제32조 : 매매방법
  - 제33조 : 경매 또는 입찰방법
  - 제34조 : 거래의 특례
  - 제38조 : 수탁의 거부금지 등
  - 제39조 :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제40조 : 하역업무
  - 제41조제1항 : 출하자에 대한 즉시대금결제
  -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45조 단서)

## □ 도매시장공판장의 관리운영

- 도매시장공판장은 도매시장안에 설치된 공판장을 말함(법 제26조)
  -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도 도매시장공판장 운영가능(법 제46조제5항)

-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제1항)
  - 제30조제2항 : 출하 예약자에 대한 우대조치
  - 제31조제1항 : 수탁판매의 원칙
  - 제32조 : 매매방법
  - 제33조 : 경매 또는 입찰방법
  - 제34조 : 거래의 특례
  - 제35조제2항 내지 제5항 : 전자거래, 견본거래, 경영사업
  - 제35조의2 : 물량, 가격 등의 공시
  - 제38조 : 수탁의 거부금지 등
  - 제39조 :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제40조 : 하역업무
  - 제41조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제2항)
  - 제25조 : 중도매업의 허가
  - 제31조제2항·제3항 : 중도매인의 비상장 농수산물거래
  -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제75조 : 교육훈련 등
-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제3항)
-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법 제46조제4항)
  - 제27조 : 경매사의 임면
  - 제28조 : 경매사의 업무 등

#### □ 공판장의 지도감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법 제79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공판장의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음(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5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판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81조)

## 2.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운영

### 관련조항

###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 ② 민간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민영도매시장의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이하 "민간인등")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함

#### □ 민영도매시장 제도 도입배경

- 도매시장개설을 민간에도 허용함으로써 규제완화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부분 종합부류시장인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
- 민영도매시장의 운영은 공판장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관련규정을 준용
  - 거래체계는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거래방법과 시장도매인을 입주시켜 수의매매를 하는 방식 중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선택 가능

## □ 민영도매시장 현황

- 논산, 군산, 상주 청과물도매시장 (3개소)

##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시설기준
  -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은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 부령으로 정함(법 제67조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내에 이를 갖추어 줄 것을 조건으로 개설 허가
-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47조제2항)
  - 개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시행규칙 제41조)>
    - 민영도매시장 업무규정
    - 운영관리계획서
    - 당해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의견서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
-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 위치의 적절성, 시설기준, 운영관리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 □ 개설자의 직접 운영 형태

### ◦ 거래관계자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할 수 있음
-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되, 지정기준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허가에 관한 규정 준용
-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 중도매인 자격요건

###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되, 등록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 등록규정을 준용

- 법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6항 : 산지유통인의 등록

### ◦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면하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경매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법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 경매사 자격요건, 면직, 신고
- 법 제28조 : 경매사의 업무 등

## □ 운영 및 거래방법(법제48조제6항)

### ◦ 운영 및 거래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은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법 제31조 : 수탁판매의 원칙
- 법 제32조 : 매매방법
- 법 제33조 : 경매 또는 입찰방법
- 법 제34조 : 거래의 특례
- 법 제38조 : 수탁의 거부금지 등
- 법 제39조 :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법 제40조 : 하역업무
- 법 제41조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법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당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 □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운영체제(법 제48조제5항)

-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되,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규정을 준용
  - 법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 : 자격요건, 부적격 임원의 해임, 지정절차
  - 법 제37조 : 시장도매인의 영업
  - 법 제38조 : 수탁의 거부금지 등
  - 법 제39조 :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법 제40조 : 하역업무
  - 법 제41조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법 제42조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 민영도매시장 지도감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법 제79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5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81조)



### 3. 산지유통제도

#### 관련조항

####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 ①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포장·저장시설의 확충 등 산지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의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따라 창고경매·포전경매 또는 선상경매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 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집하장중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음

#### □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음

####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 포전매매의 계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 하는 것을 말함)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함
- 농산물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반출약정일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약정일이 경과되기 전에 반출지연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포전매매시 생산자의 임의처분권

- '94.10 법 개정시 포전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포전거래시의 준수사항을 법제화 하였으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관행이 일시에 바뀌지 않음
- 포전매매를 하고도 반출약정일 당시 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 상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생산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인이 포전매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생산자가 계약준수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다른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

-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음

< 참 고 1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운영 현황**

**가. 현 황**

- '92년부터 농산물 집하·선별·포장·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APC 건립 지원사업을 통해서 포괄 지원
  - ※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 APC 현황 : ('92) 25개소 → ('04) 210 → ('08) 276 → ('09) 299 → ('13P) 380
    - ※ '08년말 주요 10대 원예농산물(6,751천톤)의 20.1%(1,354천톤) 처리
    - '05년부터 광특회계 사업으로 변경
      - ※ 지원조건 : (신규)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현황**

- 연도별 지원실적 ('92 ~ '07)

(단위 : 개소, 억원)

	'98까지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사업량	134	26	16	20	8	4	2	14	18	14	18	25	299
사업비 (국고)	817	116	116	160	146	85	129	160	175	127	185	247	2,463

※ 사업량 : 신규 개소수 기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자현황

('08. 12월말)

구 분	계	소유 및 운영주체 현황							운영현황				
		회원 농협	영농 법인	기 타(운영주체)				가동중	건설중	경매 (소유권 이전)	용도 전환	관리 해제	
				소계	산림 조합	지자체							회사 법인
계	299 (556)	144 (276)	117 (207)	38 (73)	3 (3)	11 (22)	19 (38)	5 (10)	255	5	20	7	12

※ ( )는 신규 및 보완사업자를 포함한 총 지원 개소 수

< 참 고 2 >

산지유통조직 현황

구분	일반조직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목적	○ 공동선별·공동계산·공동출하 등 산지유통 기초조직 육성	○ 조직내 또는 조직간 사업 연합·계열화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농산물마케팅 규모화 및 전문화 촉진	○ 마케팅을 규모화·광역화·브랜드화 하고 독립채산제·책임경영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적 경영체 육성(법인화 전제)
조직 형태	○ 매출액 10억원 이상 - 농협, 농업법인 등	○ 매출액 30억원 이상 - 농협, 농업법인 등	○ 매출액 100억원이상. 단, 자격 제한은 전문조직과 동일 - 농협 : 연합판매조직, 광역합병 조합, 품목전문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 내용	○ 지원조건: 1년 연 3%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내역 -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유통종합자금 - 선도금, 계약금, 매취 자금, 운전자금, 시설 개보수 자금 등	○ 지원조건: 3년, 연1~3%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내역 - 운영자금 70억원 이내 - 평가결과 상위 10%에 무이자인센티브지원(7억) - 하위5%는 정부지원 10% 회수, 2년 연속 하위 5% 조직 퇴출 등  ○ 자금용도 : 좌 동	○ 지원조건 : 3년, 연 1%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내역 - 운영자금 300억원 이내 - 무이자인센티브지원(30억원이내)  ○ 자금용도 : 좌 동
조직 현황	○ 조직수('09) : 130개소 - 농협 85, 법인 45	○ 조직수('09) : 288개소(신규 89, 기존 199) - 농협 250, 법인 38	○ 조직수('09) : 26개소(신규 9, 기존 17) - 농협 17, 법인 9

## 4. 농수산물유통기구 정비

### 관련조항

### 제62조(정비기본방침 등)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 □ 농수산물 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 운영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 소매상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음

#### □ 유사도매시장 정비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사도매시장의 정비를 위하여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
  -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개선·시설개선·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도매시장구역안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 유사도매시장 정비내용

-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 있는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별시·광역시
  - 국고지원에 의하여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 기타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유사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와 지역안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 유사도매시장의 시설개선 및 이전대책과 대책을 시행하는 때의 대상자의 선발기준

## 5. 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 관련조항

### 제65조(시장의 개설·정비명령)

-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 시장의 정비명령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함
  -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거래추세
  - 입지조건
  - 시설현황
  -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합·이전 및 폐쇄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함

## □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대행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기타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함
  
- 도매시장법인 업무대행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이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기타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그 업무를 행할 수가 없게 된 경우는 도매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대체방안이 필요하여 '94년부터 도입
  - 도매시장법인에게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여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도매시장 질서확립 미흡 우려
  
- 시행방법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업무를 행할 수가 없게 된 경우, 그 법인에 대해 판매의 위탁신청이 있는 물품에 대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
  - 개설자는 도매업무를 대행시킬 도매시장법인이 없거나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대행시키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스스로 또는 관리공사로 하여금 그 도매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 ※ 개설자(관리공사 포함)의 직접적인 도매업무 대행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농안법상의 지도를 강화하여 사태를 미연에 방지
  
-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의 과징금 제도(법 제83조)
  - 도매시장법인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함



## 6.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운영

### 관련조항

###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정의

-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함

#### □ 명칭변경

- 지역여건에 따라 수집·배송·가공·저장 등 물류기능외에도 도·소매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종합유통센터”로 개칭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 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3. 부지·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기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구입, 시설물 설치, 장비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 시설기준
  - 부지 : 20,000㎡ 이상
  - 건물 : 10,000㎡ 이상
  - ※ 부지 및 건물면적은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필수시설 :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집·배송시설, 포장·가공시설, 저온 저장고, 사무실·전산실, 농산물품질관리실, 거래처주재원실 및 출하주대기실, 오·폐수시설, 주차시설
  - 편의시설 : 직판장, 수출지원실, 휴게실, 식당, 금융기관의 점포,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 편의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위탁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운영주체”라 함)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함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유통에 대한 경험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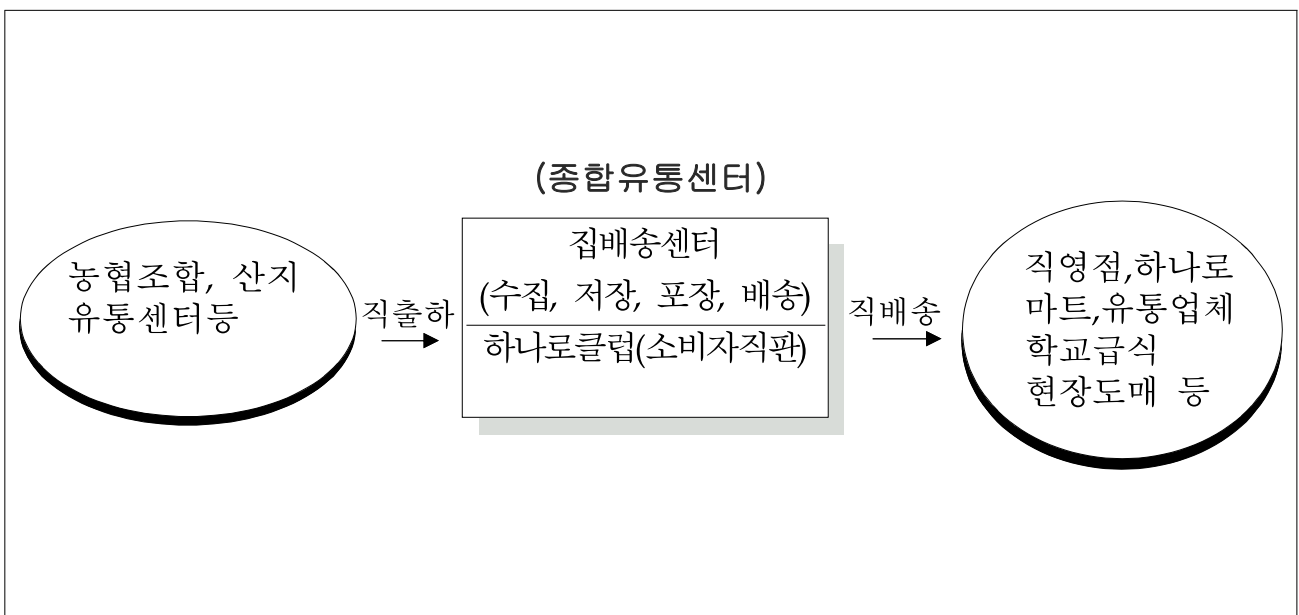
< 참고 1 >

종합유통센터 현황

□ 개 요

-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경로 다원화로 농어민의 출하선택 폭을 확대하고 유통비용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 가격 안정 도모가 목적
- '94. 5 농안법파동에 따라 마련된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핵심과제로서 도매시장을 보완하는 새로운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대도시 외곽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추진
-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보조, 생산자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의 50% 국고융자, 건설비의 50% 국고 보조지원
  -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액을 기준으로 각 주체의 지원비율에 의하여 지원

□ 유통체계



< 참고 2 >

□ 현황 : 16개소 준공, 1개소 추진 중(2010. 4월 현재)

구분	사업주체 (운영주체)	사업규모(m <sup>2</sup> )		개장일
		부지	건물	
양재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64,362	71,643	'98.1
창동	"	34,020	49,201	'98.5
청주	농협충북유통 (농협충북유통)	63,639	20,214	'98.9
부산	수협중앙회	16,529	21,504	'99.3
천안	중부물류센터 (임대운영중)	130,907	33,558	'99.9
전주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36,724	20,922	'00.1
성남	성 남 시 (농협중앙회)	84,148	46,018	'00.9
군위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117,356	18,843	'01.3
고양	고 양 시 (농협중앙회)	132,372	54,545	'01.7
대전	대전농산물물류센터 (농협·대전시)	41,394	20,214	'02.3
대구	달 성 군 (농협중앙회)	36,098	21,894	'03.7
목포	목 포 시 (농협중앙회)	51,445	23,765	'03.8
수원	수 원 시 (농협중앙회)	86,037	41,606	'03.10
김해	경 남 도 (농협중앙회)	67,480	31,360	'05.11
금산	충 남 도 (동원F&B)	65,112	10,526	'06. 8
울산	울 산 시 (농협중앙회)	86,100	30,548	'09. 2.
양산	양 산 시	38,016	14,435	개장예정
합 계	17개소	-	-	

< 참고 3 >

대형마트 연도별 매출규모 및 점포수

(단위 : 억원, %, 개소)

구분	매출액	성장율	점포수	
			국내	해외
2004	215,000	9.2	278	3
2005	237,000	10.2	306	7
2006	256,000	8.3	337	11
2007	283,000	10.2	363	13
2008	299,000	6.0	394	44
2009	311,000	4.1	410 ~ 420	64

※ 자료원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2009

## 7.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 · 운영

### 관련조항

### 제70조의 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 · 관리
  2.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 · 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 · 관리
  5.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거래품목 ·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 □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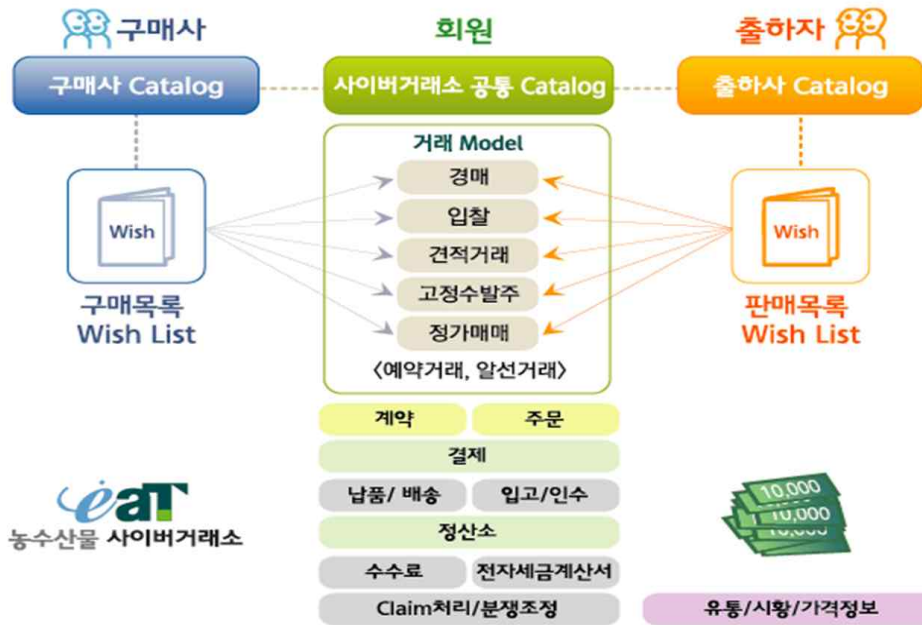
- 성숙된 전자거래 기반을 바탕으로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개선
  - 신용보증 전자보증 2.1조, 대형유통업체 355개소, '07년 인터넷이용율(74.8%),
  - 농산물 소비자구입액 58조원 중 농가수취 32조원(56%), 유통비용 26조원(44%)
- 대량의 농수축산물을 인터넷으로 사고파는 B2B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비용 · 단계 절감, 전자거래 정착, 표준화유도, 직거래촉진, 표준가격생성

### □ 현 황

- 민간 추진이 어려운 농수산물 B2B 사이버거래, 친환경 B2C 거래 등을 담당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설립('09.1)
  - 2개 팀(전략기획, 마케팅) 18명으로 조직 구성(2월)
  - 사이버거래소는 B2B(생산자-기업), 친환경농산물 B2C(생산자-소비자), 거래 참여 업체 · 조직 및 농가 교육 지원 역할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B2B, B2C 개장
  - B2B 전자상거래 개장('09.10), B2C 쇼핑몰 개장('09.7)

□ B2B 거래방법

- 구매목록(Wish list)을 통해 판·구매자간 정해진 거래모델로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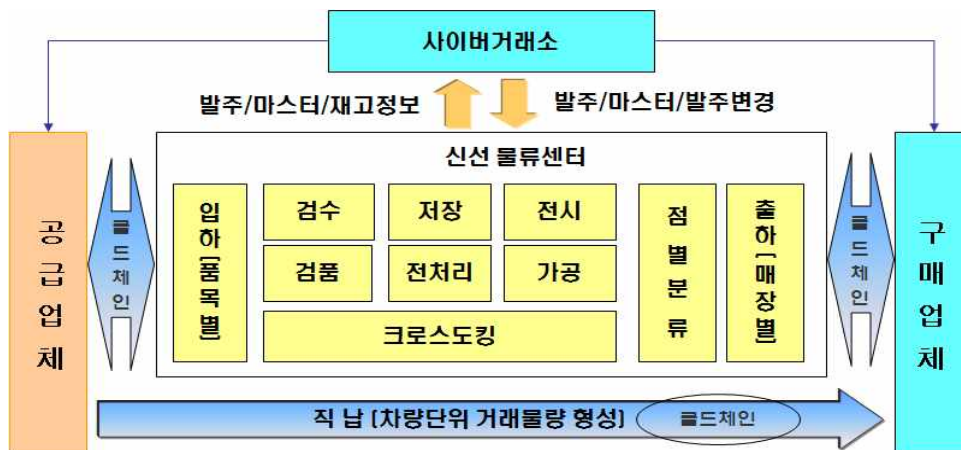
- 품질 · 신뢰 : 단계별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신뢰거래 조성

- CS(소비자만족) 운영체계 : 자체분쟁해결 기능을 갖추기 위해 콜센터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정산소 운영

- 구매자 유인 핵심과제로 선정운영
- 시중 유통관행을 수용한 정산체계 수립 운영

□ 물류운영



□ 유통정보 제공

- 판구매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차별적 가격정보 제공



## VIII.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1. 기금의 설치

#### 관련조항

#### 제54조(기금의 설치)

-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31, 법률 제7275호>

#### □ 설치배경

- 정부는 '61. 6월에 곡물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취약해진 농업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제정하고 '66년에 270억원 규모의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양곡의 정부매상정책과 미곡담보용자제도를 실시하여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유지제도를 확립하기는 하였으나 운영이나 집행 면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발생
- 이에 따라 '66. 8월에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농가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1815호)을 제정하여 기금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농산물의 수출지원과 농산물 저장 등의 농업발전 사업에 활용토록 함
- 농안기금은 '68년에 정부출연 51억원으로 기금운용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6차례에 걸친 추가 출연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하여 2009년말 현재 3조 8,699억의 기금을 조성(정부출연금 1,656억원, 기금운용수익금 3조7,043억원)하고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식품산업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활용중

## □ 법령 및 기금의 변천

- '66. 8월 제정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은 ' 70. 8월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으로 법률 제명을 개정하고 기금 명칭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
- '76.12월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
- '00년 6월에는 「종자산업법」 개정(법률 제6190호) 및 「인삼산업법」 개정(법률 제6189호)으로 종자기금 및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안기금으로 통합하고 농안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국립종자원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 위임·위탁
- '국민의 정부' 당시 국정과제중 하나로써 유사기금 통합방침에 따라 통합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7개 기금이 4개 기금으로 정비
  - '00년 인삼기금의 경우 연간 운용규모는 92억원 수준이나 농안기금에서 490억원을 지원받는 등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종자보급사업과 인삼수매 가공수출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토록 3개 기금을 통합
- '04.12월에 「농안법」에 의거 수산분야에 지원되었던 기금을 '05년 1월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변경하고 농안기금의 설치 근거인 「농안법」 제54조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중

## □ 기금계정의 설치(시행령 제21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함
- ※ 기금설치관련 타 법령 : 「국가재정법」 제5조 ①항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 운용

## 2. 기금의 조성

관련조항

제55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3>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 □ 농안기금 조성현황

- '09년말 현재 총 조성액은 3조 8,699억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은 4.3%, 운용수익금이 95.7%를 차지



### < 참고 >

#### ◦ 정부의 출연금

-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가능(국가재정법 제12조)

#### ◦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재정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되는 수익금

- 정부 비축 농산물 등의 판매수입, 융자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등

#### ◦ 법 제9조의2제3항·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 몰수농산물 등의 매각·공매대금 납입금 및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징수(부담금)하게 되는 납입금

####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및 「인삼산업법」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에 따라 징수하게 되는 납입금(국가재정법 제13조)

### 3. 기금의 운용·관리

**관련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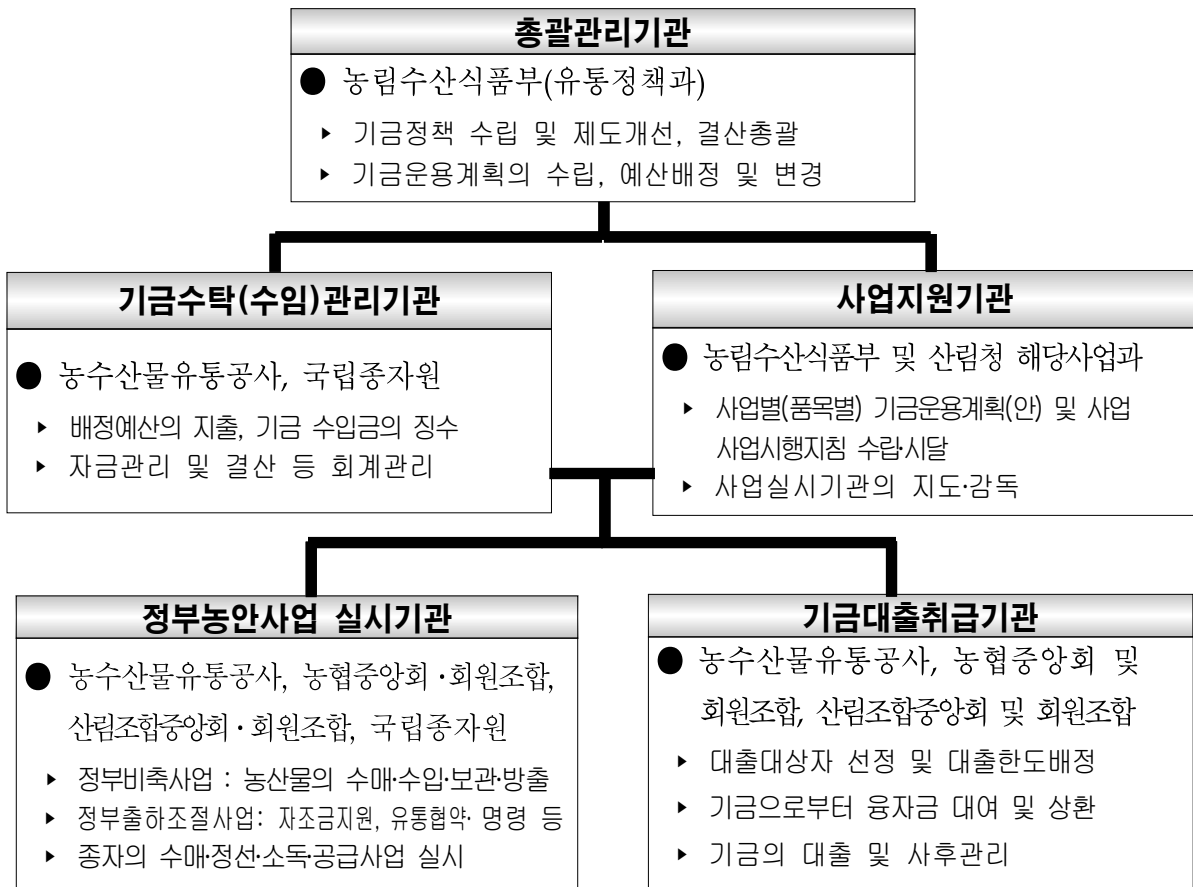
**제56조(기금의 운용 · 관리)**

- ①기금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탁 가능한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범위(시행령 제22조)

-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지출
-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기금의 운용·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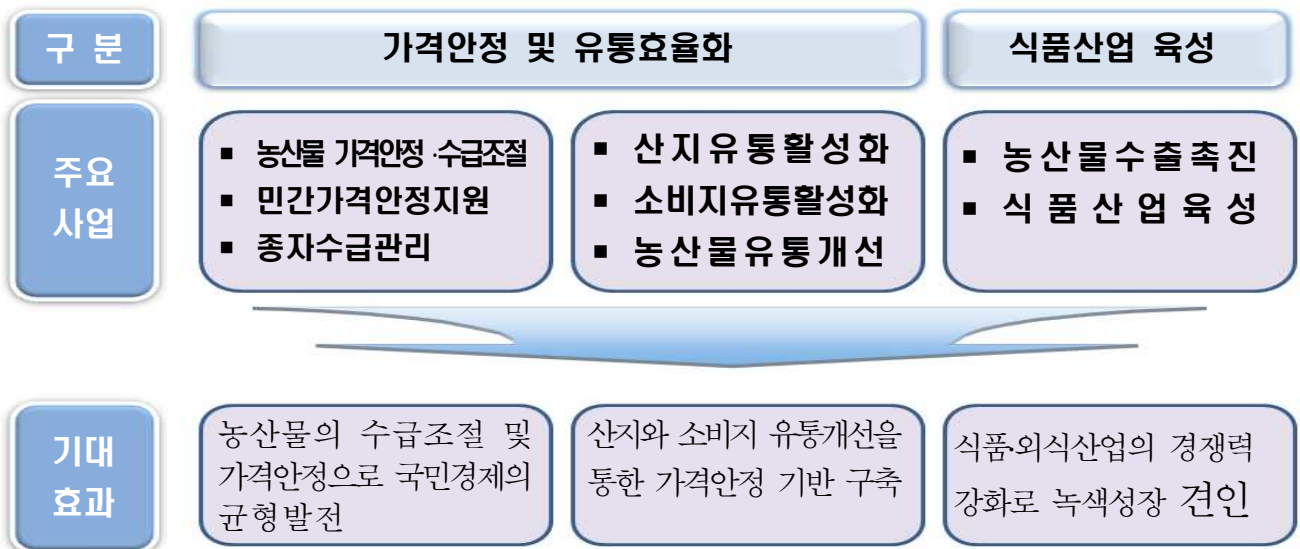


# 4. 기금의 용도

**관련조항** 제57조(기금의 용도)

-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 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1.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④기금을 용자 또는 대출받은 자는 용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외의 목적에 그 용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 기금의 용도 및 기능



## □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

- 제7조 및 제12조 : 자조금 적립사업, 유통협약·명령이행자에 대한 사업
-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
- ※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몰수농수산물 등의 이관, 비축사업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행령 제23조)

-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저온유통·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 종자사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종자의 품종육성·개발, 우수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연구
-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실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종자관리소 등(농안기금운용규정 제2조)

## □ 기금의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조치사항

- 부당사용 금액의 규모에 따라 1~5년의 기간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 위약금 징수 : 농협중앙회의 연체 대출금리와 당해 대출금리와의 차이 금리를 적용하여 징수

〈주요사업내용〉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p>○ 비축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수매·수입 비축하여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li> <li>• 비축 농산물의 최적 보관조건 유지 등을 위해 정부 비축창고의 노후시설, 장비의 지속적인 개보수 등 시설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축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수매 : 콩</li> <li>▶ 농산물 수입 : 콩, 팥, 참깨 (7개 품목) 땅콩, 고추, 마늘, 양파</li> </ul> </li> <li>• 비축사업설비</li> </ul>
<p>○ 출하조절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판로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의 자율적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 활동 지원</li> <li>• 농산물 가격이 상당기간 낮게 형성되거나 예측될 경우 산지폐기, 품질규제 등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 및 가격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조금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품목 29개</li> </ul> </li> <li>• 유통협약명령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산지 집중도가 높은 6개 품목(채소3, 과일3)</li> </ul> </li> </ul>
<p>○ 종자수매 및 공급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고품질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여 전국의 종자 수요 농가에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품목(6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li> </ul> </li> </ul>

### 민간가격안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계열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인삼의 생산·가공·유통의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계열화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가공산업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수매</li> </ul> </li> </ul>
--	--	--

### 산지유통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단체 등에게 산지유통종합자금을 지원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유통 능력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출하의 규모화규격화로 산지유통활성화 도모</li> <li>• 주산지 중심으로 원예 및 발작물 브랜드육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 혁신 및 경쟁력 제고</li> <li>•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출하조절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 전문조직, 산지유통일반 조직으로 구분하고, 상위 조직으로 발전 유도</li> </ul> </li> <li>•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li> </ul>
--	--	---

### 소비지유통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지유통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사이버거래소 종합유통센터에 출하촉진자금과 생산자 단체·민간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소비지유통 기능 활성화</li> <li>•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소비지와 산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도매시장 농협공판장 사이버거래소</li> </ul> </li> <li>• 농식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li> </ul>
---	--	---

### 농산물유통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유통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유통체계구축 등 농산물유통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여 유통개선 촉진</li> <li>•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지 판매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li> <li>•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li> <li>•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사업</li> </ul>
--	---	---



## 식품산업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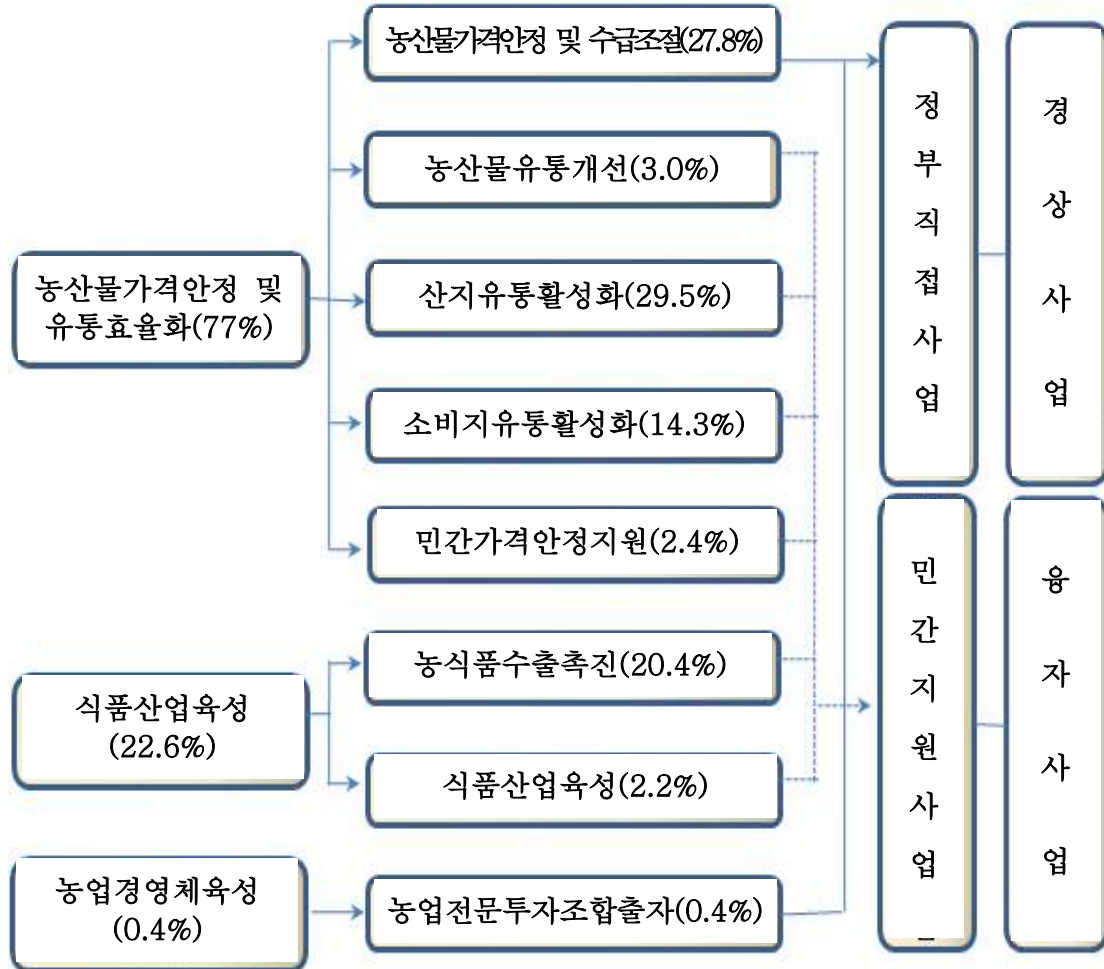
### 농산물수출촉진

○ 해외시장 개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상품화사업, 국제박람회사업, 현지유통업체 직수출사업, 수출홍보 사업, 해외시장정보사업</li> </ul>
○ 운영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 농업의 적극 육성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력 제고, 농가소득 증진 및 농업생산 기반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류, 과실류, 약용류, 버섯류, 화훼류, 인삼류 등</li> </ul>
○ 한식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의 우수성 해외홍보 및 외국인들의 한식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음식 및 식문화 해외전파로 농식품 수출확대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구축, 한식체험 및 홍보 강화</li> </ul>

### 식품산업육성

○ 식품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및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산업 정보화 시스템 및 식품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li> <li>• 전통·발효식품의 육성으로 전통식품 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li> <li>• 생산자와 식품업체가 공동 출자한 융복합형 식품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판로 구축 및 원재료 공급원 확보 등으로 상생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외식정보분석사업</li> <li>•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li> <li>• 세계김치연구소건립사업</li> <li>• 외식업체육성지원사업</li> <li>•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육성사업</li> </ul>
-----------	--	--

### < 사업추진 체계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흐름도 >



## 5. 기금의 회계기관

관련조항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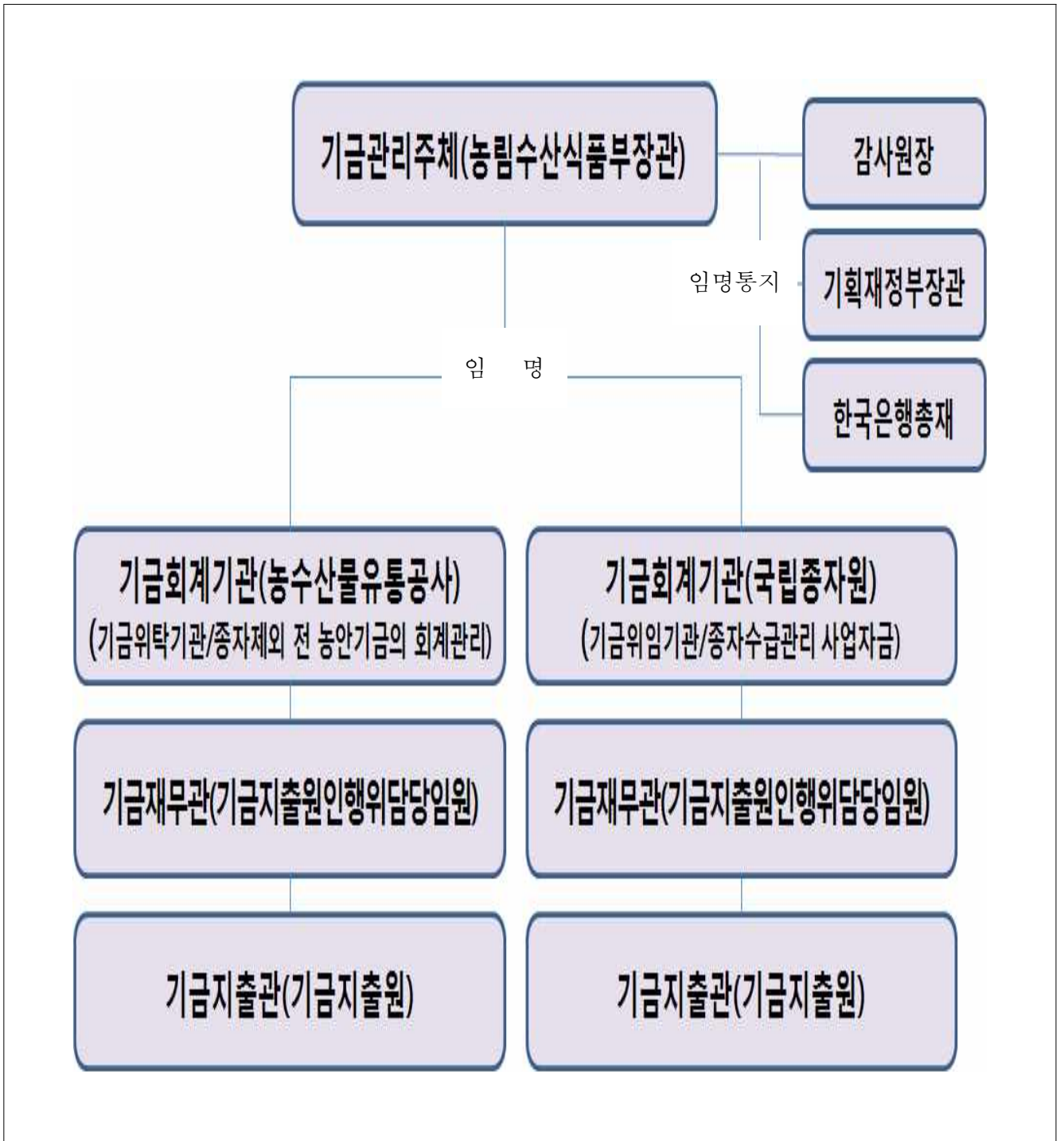
### 용어의 정의

(「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수입 : 국고금이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함
- ※ 국고금 : 법령 등에 의하여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에 준하는 것
- 지출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함
- 지출원인행위 : 재무관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

< 참고 >

[ 기금회계기관의 임명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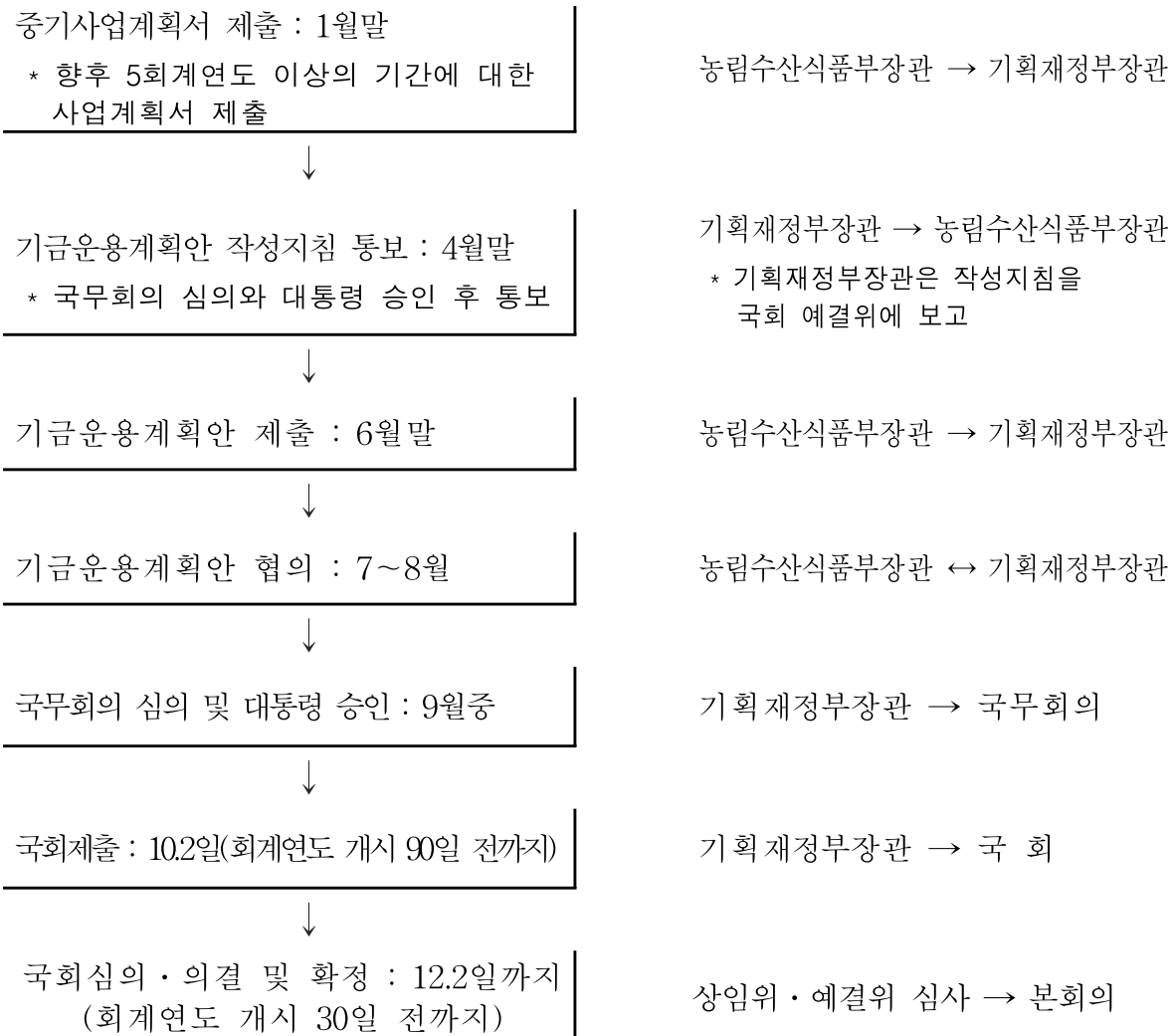
## 6. 기금의 운용계획

관련조항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용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 제2호의 용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용자 등 자금의 사용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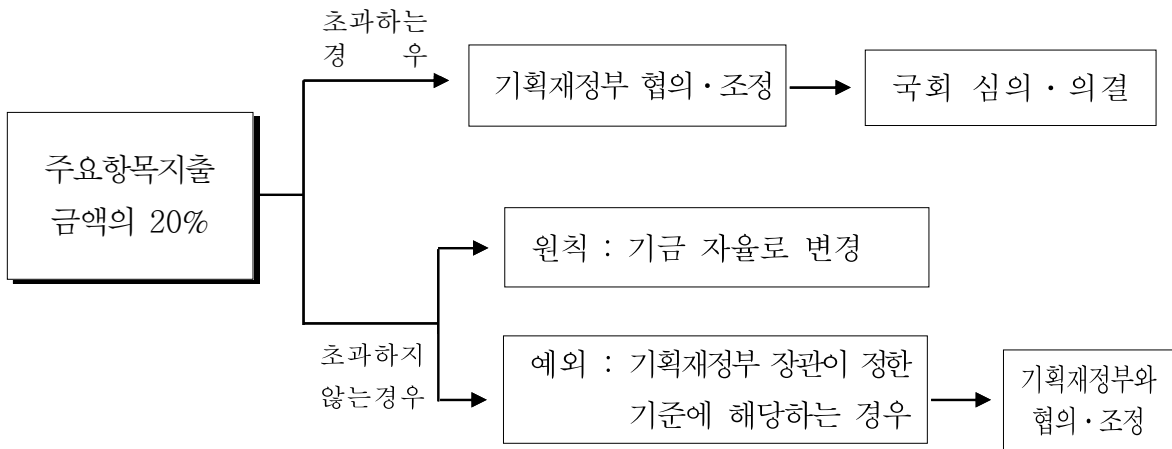
### <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 >



##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국가재정법 제70조)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



### < 기금의 조달 및 운용규모 >

(단위 : 억원)

조 달			운 용		
구 분	'09실적	'10계획	구 분	'09실적	'10계획
○ 자 체 수 입	19,019	20,747	○ 사 업 비	19,809	20,170
- 부담금수입	622	788	- 경 상 지 출	5,891	6,529
- 비축농산물판매수입	4,299	5,530	- 자 본 지 출	185	94
- 종 자 판 매 수 입	591	639	- 용 자 지 출	13,733	13,547
- 용 자 금 회 수	12,605	12,903	○ 기 금 운 영 비	557	586
- 이 자 수 입	640	618	- 기 금 관 리 비	8	8
- 기 타 수 입	262	269	- 사 업 운 영 비	549	578
○ 여 유 자 금 회 수	3,161	1,551	○ 여 유 자 금 운 용	1,814	1,542
<b>계</b>	<b>22,180</b>	<b>22,298</b>	<b>계</b>	<b>22,180</b>	<b>22,298</b>

## 7. 결산보고

관련조항

제61조(결산보고)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결산의 의의

- 기금의 운용실적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정리·기록한 것으로 기금운용 결과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이에대한 분석 평가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에 반영(Feed back)될수 있도록 하며 국회의 결산심사 및 집행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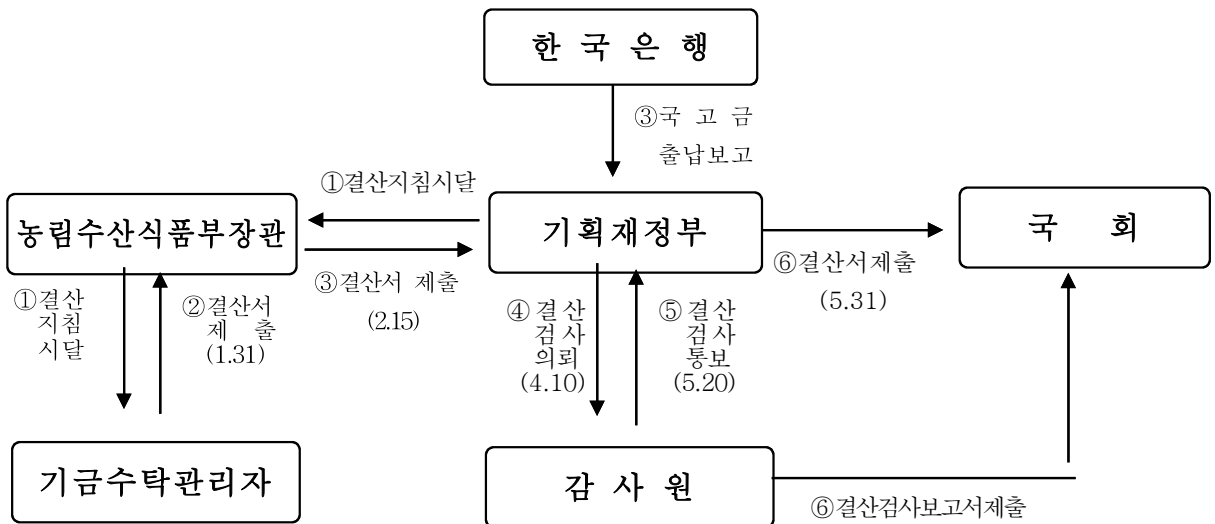
### □ 결산보고서의 구성

- 결산개요
-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 재무재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 재정상태표 : 기금의 자산, 부채, 순자산(자본)으로 구성되는 재정상태를 표시
    - ※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를 의미
  -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
    - ※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를 의미
- 성과보고서 :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 관련법령 및 규정

-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국가재정법 제73조)
- 기금의 수입·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16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을 총괄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기금의 수탁기관은 기금의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16조)

< 결산절차 >





## 8. 기금의 손비처리

관련조항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긴 때에는 이를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

### □ 기금의 손비처리 범위

- 과잉생산농산물의 수매, 비축사업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품종목록 등재 품종의 종자생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

### □ 기금의 손비처리 근거

- 회계연도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 등을 포함하여 재정운영결과를 재정운영표로 작성함(국가회계기준 제24조)

## 9. 여유자금의 운용

관련조항

제60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매입 [본조신설 2007.1.3]

### □ 여유자금의 정의(농안기금 운용규정 제2조 12호)

-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의미

###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 금융기관 (「은행법」 제2조 ①항 2호)
  -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
- 증권 :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 「증권거래법」은 '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

### 증권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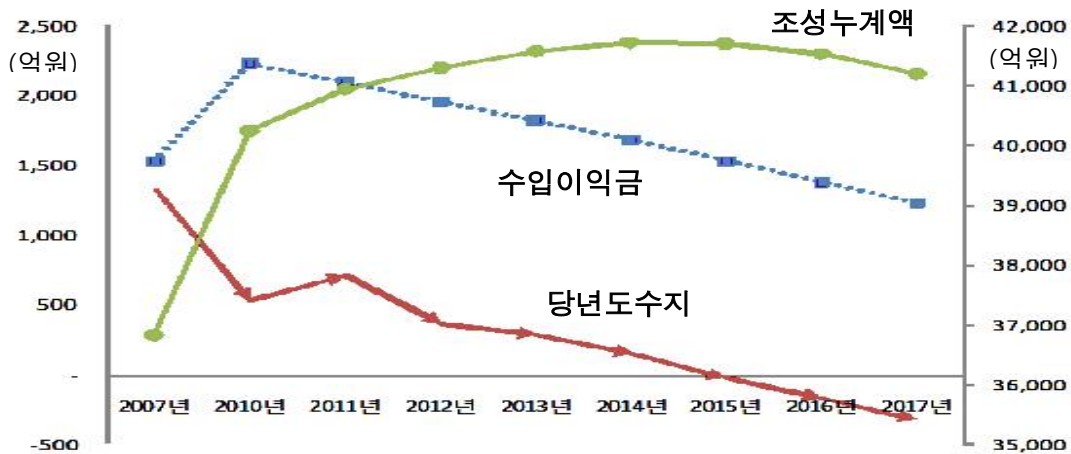
- 채무증권 : 국·공채, 지방채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
- 지분증권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권 및 법인 등에 대한 출자지분 등
- 수익증권 : 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 참고 >

< 농안기금의 연혁 >

- 1966. 8.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1815호)을 제정하여 기금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968년부터 정부출연으로 기금운용
- 1970. 8. 4.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2214호)으로 법률 제명 개정
- 1976. 12. 31.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962)을 제정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 2000. 6. 1. 「종자산업법」 개정(법률 제 6190호) 및 「인삼산업법」 개정(법률 제6189호)으로 종자기금 및 인삼산업진흥기금을 흡수통합
- 2000. 6. 7.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국립종자원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임·위탁
- 2004. 12. 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7275호)에 의거 수산분야에 지원된 기금은 2005. 1. 1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 및 명칭변경(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안기금 중장기 조성전망 >



< 농안기금 운용수익금 내역 >

(2009년말 기준)

운용수익	비축사업 손익				융자금 이자	기타 손익
	소 계	수입비축	수입권공매	수매비축		
<b>37,043</b> 억원	39,372	39,461	6,768	△6,857	9,024	△11,353

\* 수입비축 : 참깨 25,878억원(65.7%), 콩 8,333(21.2%), 고추 1,773(4.5%) 등

\* 기타손익 : 경상사업비, 수발기금 이관분(△3,694억원) 등



< 별첨 1 >

## 농안법관련 판례



가. 사건번호 : 대법원, 2006.3.10, 2004도6846, 수원지법, 2004.9.13, 2004노2003

나. 관련규정 : 법 제31조 제2항(수탁판매의 원칙)

-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의 거래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한정시킨 조항이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제소

라. 쟁점 및 결론

- 농안법 제31조 제2항이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인지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마. 논거

-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규정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가 저해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큼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해서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을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역할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피함
  - 더구나 예외적으로 비상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중도매인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중도매인의 혜택과 제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안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된 것임

가. 사건번호 : 대법원, 2005.6.24, 2005도2651, 인천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3055

나. 관련규정 : 법 제2조(정의), 89조(양벌규정)

- 제2조 (정의)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 제8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매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도록 기소된 사건

라. 쟁점 및 결론

-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양벌규정인 농안법 제89조에 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으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마. 논거

- 중도매인은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별도의 사업자임
  -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단지 거래편의 및 외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래법인으로 정하여 놓은 것일 뿐 다른 도매법인, 공판장과 거래할 수 있고 비상장거래도 가능함
  -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에게 담보제공 이외에 명의대여료나 별도의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음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영업하며 세법상으로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매법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함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도매시장법인은 반드시 일정 수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는 것에 반하여 중도매인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중도매인의 법인소속여부는 허가요건이 아님



가. 사건번호 : 2002헌바67, 2005.5.26

나. 관련규정 :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중도매업의 허가)

-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①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서울시가 이를 이유로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자 중도매인이 서울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당해사건 계속 중 「농안법」 제25조 2항에 대하여 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당해사건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라. 쟁점 및 결론

- 「농안법」 제25조 제2항 제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거

- 농수산물이 국민의 삶과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중도매인이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하는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직무는 공동체와의 관련성이 매우 큰 직역이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공정을 위해서는 거래참가자들의 담합 등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고 거래의 실제 주체와 명의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제한조항이 없을 경우 형의 집행기간 동안 명의대여가 있을 수 있어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1997. 7.29, 농림부)

가. 관련규정 : 법 제18조 제2항(현행법률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②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의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생략)

나. 사건개요 : 도매시장법인이 타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경합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농림부가 법제처에 질의

다. 쟁점 및 결론

-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경합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 취지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

라. 논거

- 해당 법조항은 도매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려는 것
- 이러한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감안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동기 및 경영에의 개입여부와 주식의 분산상황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 및 자산상태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가. 사건번호 : 청주지법 2006노353, 선고, 2007.3.21, 판결 : 상고

나. 관련규정 : 법 제35조 1항(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 사건개요

-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결정한 다음 적법하게 경매를 실시한 것처럼 판매원표와 낙찰명세서를 작성하고 도매법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도매인에게 입금함
- 도매법인 경매사가 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밖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 위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

라. 쟁점 및 결론

- 도매법인이 허위경매에 관련되었는지 및 중도매인의 법률부지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도매인이 산지수집한 것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도매인이 산지수집이 금지조항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범죄형성에는 상관없다고 함
- 경매사의 행위가 처벌대상인 도매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거

-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결정한 다음 중도매인들과 도매법인 사이에 적법하게 경매를 실시한 것처럼 판매 가격을 정하는 판매원표와 낙찰명세서를 작성한 점, 도매법인의 대표가 위장경매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도매법인이 경매서류를 작성해주고 중도매인들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위탁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입금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중도매인들의 위장경매를 묵인하면서 위장경매에 대한 서류작성의 대가로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라 함은, 공정한 경매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에서 출하인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도매하는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 즉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경매)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나
- 매매계약이 전화상으로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지급이 계좌송금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위 판매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매수인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직접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도매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사건번호 : 청주지법 85노180, 선고, 1985.12.2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나. 관련규정 : 법 제37조 제1항(현행법률 기준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건개요

- 피고인이 충주시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전남 여수 등지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소매상인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허가 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였다 하여 형사기소됨

라. 쟁점 및 결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없음
- 「농안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죄는 동 법률이나 동 시행령규칙에 정해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일응 참고한 후 피고인이 행한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위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함은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입찰 등을 말하므로 피고인의 점포소유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포에 들여와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볼 수 없음

가. 사건번호 : 대법원 98두8919, 선고, 1998.8.21, 판결, 서울고법 1998.4.17. 선고 97구 38161 판결

나. 관련규정 : 법 제12조 (현행법률 기준 제22조) (도매시장의 개설·운영), 제17조(현행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 사건개요

- 구리시가 구리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상권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구리시의 요청에 따라 청량리시장의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취소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의 도매법인이 구리시장에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고 기존 청량리 시장에서도 영업기반을 잃게 되자 서울시의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됨

라. 쟁점 및 결론

-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라 판결
- 새로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존속 중에 도매법인의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된다고 함

마. 논거

- 서울시가 청량리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다시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이전 및 지정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관을 붙였으나, 이러한 부제소특약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현재까지도 청량리시장에서 상당수의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상권에서 22년간이나 영업하여 온 원고에게는 도매법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리시장을 활성화하고 서울 동북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원고가 법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청량리시장에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 하더라도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가. 관련규정 : 법 제17조(현행 기준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63조(현행 기준 제82조) (허가취소 등)

-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2조 (허가취소 등)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나. 사건개요

- 지정도매인(도매법인)의 주주의 주식양도 및 임원(대표자)변경에 대하여 개설자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요하는 지의 여부를 농식품부에서 법제처에 질의

다. 쟁점 및 결론

-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한 지정도매인(도매시장법인)의 주주의 주식양도 및 임원(대표자)변경에 대하여 동 개설자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요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요하지 않는다고 답변

라. 논거

- 주식의 양도나 임원변경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의 규제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될 수 없음
- 「농안법」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은 자기자금 및 임원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자가 되도록 하고(제17조)있는 외에 지정도매인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영업정지나 지정승인취소(법 제6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도매인의 주주나 임원의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개설자의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가. 사건번호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 서울고법 2001. 6. 27. 선고 2000누16465 판결

나. 관련규정 : 법 제16조(현행 기준 제20조) (개설자의 의무),  
제37조(현행 기준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 제20조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3. 상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건개요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도매인이 19개월 동안 거래실적이 전혀 없어 서울특별시에서 허가취소를 하자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를 제기함

라. 쟁점 및 결론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중도매인이 유지하여야 할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거래실적이 3개월 연속 이에 미달할 경우 중도매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유효라 판결
- 원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원고가 거래를 재개한 등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부정

마. 논거

- 「농안법」이 중도매인에게 거래실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거나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엄격한 규제방법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농안법의 취지와 더불어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중도매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중도매인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농안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마련한 「농안법」 제37조 등의 규정은 중도매인이 어느 정도 이상의 거래실적을 유지함으로써 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농안법」이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방해행위에 못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거래실적 미달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것이 「농안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허가취소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 제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1.의 가. 제12호 (다)목의 규정은 「농안법」 제3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그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 한 것으로서 위임근거가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도 적법함.
- 서울시가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중도매인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면서 IMF로 인한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의 처분을, 그 외의 3~6개월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정해 놓았던 것인데 위반 중도매인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우려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 할 수는 없음



가. 사건번호 :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97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나43904 판결

나. 관련규정 : 법 제33(현행 기준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 사건개요

- 원고 중도매인은 공판장에서 새우젓을 경락받아 소매상에게 판매하였으나 이 중 일부에서 석유냄새가 나서 반품 받아 이를 다시 공판장에 반품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라. 쟁점 및 결론

- 경매물의 하자를 인수 당시 발견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부인함

마. 논거

- 「농안법」 제33조에서는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수인은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하고 공판사업규정에서 위탁물의 경락 후 매수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없고 다만 매수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수를 거부코자 할 때에는 경매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수산물매매에 있어서는 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인 수산물을 수령한 때에는 현장에서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매매현장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경매 당일 또는 직후에 하자를 식별하여 현장에서 인수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아 경매 후 여러 날이 경과한 후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즉시이의신청 규정을 위배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상법」 제69조 제1항의 숨은 하자규정이 6개월 내에 발견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농안법」이 「상법」의 특별법이므로 상법은 적용되지 않음

가. 사건번호 : 99두16893, 행정법원, 2000. 4. 28

나. 관련규정 : 법 제28조 제2항(현행 기준 제31조 제2항)

-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건개요

- 원고가 중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상장경매 품목을 출하자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거래하다가 적발되어 개설자로부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직접 위탁받아 거래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

라. 쟁점 및 결론

- 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을 위탁판매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고 패류가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마. 논거

- 가락동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상장되지 않은 수산물을 위탁거래 하는 일이 관행화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발제재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 볼 수 없음
- 농수산물을 상장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농안법에 따라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로 지정된 후, 중도매인이 개설자로부터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패류의 다품종, 소량, 부패용이 등 상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패류를 위탁거래 한 것이 용인될 수는 없음

가. 사건번호 : 98두20567, 행정법원, 1999. 6. 30

나. 관련규정 : 법 제37조 제1항(현행법률 기준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제63조 제3항(현행 기준 제82조 제5항)(허가취소 등)

-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2조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사건개요

- 청구인이 30일 이상 무단휴업하고, 중도매업 허가권을 대여한 이유로 개설자가 중도매인 허가취소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라. 쟁점 및 결론

- 무단임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
- 당해처분의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 「농안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며 처분 또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조례가 유효하며 처분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마. 논거

- 청구인이 30일 이상 중 도매업의 무단휴업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1997. 10. - 1998. 2. 기간 중 청구인의 중도매인 시설을 대여하여 이용하게 한 사실이 명백함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고 보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중 도매업 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참고판례(중도매업허가처분취소 98두20567)

원고가 30일 이상 무단휴업하고 중도매업 허가권을 대여한 행위는 「농안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농안법」 제37조 제1항,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례 제4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2)의 중도매인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위규사항 제1호는 「농안법」 제37조 제1항에 법적위임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적법함

가. 사건번호 : 농림수산부, 1993, 민원인

나. 관련규정 : 법 제65조 제2호(현행법률 기준 제86조 제1호) (벌칙)

-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다. 사건개요

- 서울시, 영등포구,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에 영등포 소재 시장의 청과물 위탁상인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되어 업무협의를 형식으로 질의함

라. 질의요지

- 「농안법」 제65조제2호에 도매시장구역이나 공판장이 개설된 시의구역 안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농안법」 제65조제2호에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시장을 형성, 개설한 자에 국한되며 개설자가 없이 상인 개개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통칭 시장에서 점포와 상호를 가지고 청과물 위탁거래 행위를 하는 상인 개개인은 적용처벌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 민원인은 농림수산부에서 “도매시장구역이나 공판장이 개설된 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한 자를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고 회신한 내용은 무허가시장 내의 청과물상인도 처벌이 된다고 주장하는바 상기 해석이 맞는지 여부.

마. 회답

- “농수산물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형성하여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여 상인 개개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개별점포와 상호를 가지고 청과물 위탁거래행위를 하는 상인 개개인은 적용 처벌되지 않음
- 다만 「농안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거래제한고시를 한 경우에는 고시한 품목을 고시된 구역 안에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매수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농안법」 제65조 제2호에 의거 처벌함

- 가. 사건번호 : 대법원 85누243, 선고, 1986.2.1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3구734 판결
- 나. 관련규정 : 법 제12조 제3항(현행 기준 제17조 제6항) (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56조(현행 기준 제65조)
-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⑥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5조 (시장의 개설·정비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다. 사건개요
- 서울시가 종암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분장을 개설하고 도매법인을 지정하였는데 도매법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여 서울시가 시장불성립, 시설 부적합, 시설의 타목적 이용, 도매법인의 운영 부실 등으로 도매시장 기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정취소함. 이에 도매법인이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 권한 없이 이뤄졌고 법 제56조의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상고함
- 라. 쟁점 및 결론
- 적법한 취소권자에 의한 취소였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
  - 「농안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폐쇄에도 위 법률 제56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러하지 않다고 판결
- 마. 논거
- 「농안법」 제63조제2항,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제2항제10호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도매법인의 지정승인취소 권한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시장 및 직할시장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지정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처분임
  - 「농안법」 제56조에 규정된 도매시장폐쇄명령은 농수산부장관이 개설자에게 폐쇄를 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가 스스로 폐쇄를 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위 법률 제56조에 의한 폐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가. 사건번호 : 대법원 2005다33121, 선고, 2007.10.26, 판결,  
서울고법 2005. 6. 9. 선고 2004나42618 판결

나. 관련규정 : 법 제32조 (매매방법)

- 제32조 (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다. 사건개요

- 출하자 겸 노량진 수산시장 내 소매업자가 자신이 출하하는 냉동일식재료를 자신이 경영하는 소매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냉동일식재료를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도매법인의 상장을 거쳐 정가 또는 수의매매 형식으로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매수함

라. 쟁점 및 결론

- 거래가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부정함
- 「농안법」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단속규정이라 해석
- 도매법인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 대해 경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마. 논거

-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이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매업자가 거래 때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게 각각 거래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농안법」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함
- 중도매인 계약의 내용,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 거래로 인하여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얻은 점, 노량진수산시장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도매법인의 연대보증책임이 경매로 인한 채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도매인의 어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

< 별첨 2 >

## **농안법관련 주요질의 및 유권해석**

**- 농림수산식품부 -**





1

- 1) 중도매인의 내부거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 2) 중도매인이 동일시장내 타도매법인 소속중도매인에게 필요한 농산물의 중개를 부탁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 3) 중도매인이 타도매시장이나 산지공판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1)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은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기 농안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간에 농수산물을 거래(매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매인의 내부거래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대상임
- 2)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개설자가 부류별로 허가를 하고 있으며, 농안법 제31조에 따라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거래)할 수 없음
- 3)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원칙)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도매인이 타도매시장 또는 산지공판장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농안법에 위반됨. 다만,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이 상장예외 품목을 타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개설자의 지정공고일 기준시 A법인은 공고일 직전년도 공고일과 때를 맞추어 수산물과 전혀 무관한 업종으로 발기설립하고 당해연도 공고일과 같은날에 1년의 기간의 행하던 업종을 포기하고 수산물업종의 사업(위탁 등)으로 하여 공고일에 상호변경등기로 R법인으로 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자 할때 신청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법성 관련

2

- 1) R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있다면 상호변경등기한 날을 기준한 대차대조표 제출 가능 여부
- 2) 업종은 별론으로 하고 공고일 기준시 직전회계년도이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출시 해당법인을 A 또는 R중 어느 법인인지와 업종에 상관없이 지정신청시 타업종 법인의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도 무관한지 여부
- 3) 지정 신청시 제출되는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4) 지정된 법인의 사업계획서의 법적지위와 효력은 무엇인지
- 5) 지정된 법인의 사업계획서는 이 후 변경하여도 되는것인지 있다면 근거는

회신 내용

- 1) 상호변경등기를 한 경우 A법인과 R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라면 동일법인으로 판단됨
- 2) 당해연도 공고일 기준 1년이 안된 경우 직전회계년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는 A법인것을 지칭하며, 신설법인이라면 농안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할 수 있음
- 3)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타업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원의 자격요건, 사업계획서, 개설자가 정하는 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정관은 상호변경시 정관의 기재사항도 변경되므로 변경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함
- 4.5) 지정된 법인이 사업계획서 변경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개설자가 당해법인이 수행할 업무 등에 대해 지정조건을 부여하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지정이후 정관변경시에는 개설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있음

**3** 농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1차 경고 처분을 내려야 하나 동법시행규칙 제56조(별표3) 1. 일반기준의 “마”를 적용하여 1차 주의 처분을 내렸을 경우 2차 행정처분시 행정처분은 ?  
 ※ 처분기준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0일), 3차(업무정지 1개월)

회신 내용

1)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1차 경고 처분을 경감하여 주의 처분을 했을 경우에도 2차 처분은 업무정지 10일이 타당, 즉, 처분기준의 가중 또는 감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할 수 있는 것으로, 1차처분이 행하여진 것으로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2차 처분기준을 적용함이 타당

**4** 중도매인이 6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 별표3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3개월의 최저거래 실적 미달과, 무실적은 각각 행정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도 중도매인의 업무가 가능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3개월 무실적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 가능, 다만, 3개월 무실적의 경우에도 1개월 무실적에 대한 1차 주의, 2개월 무실적에 대한 2차 경고의 선행 행정 처분이 선행되었을 경우 허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5**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을 가공하여 영업행위를 위해 제조업신고를 하여 하는데 센터내에 공장(제조업)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의 별표2에 따라 포장·가공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농안법 제2조에 따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을 수집·포장·가공·보관·운송·판매 및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같은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산물의 가공·포장 등은 신선편의 농산물등의 경우와 같이 단순 세척, 가공포장 등을 농수산물의 원형을 일정부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음

6

- 1) 중도매인간 내부거래를 한 경우 행정처분대상자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2) 중도매인과 법인의 거래약정서상의 일부내용이 농안법규정과 업무조례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면 그 효력의 유무
- 3) 거래약정서 상의 일부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농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 4) 전체 중도매인과 동일한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음에도 거래약정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일부 중도매인에게 차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 5) 경매절차를 위반하여 차상경매한 경우의 처분 규정 유무 여부
- 6) 농안법 제74조 제1항 거래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행정처분과 병행하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 1) 농안법 제31조 제2항의 경우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에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도매인간의 내부거래인 경우에는 양자가 모두 해당됨. 다만 매수한 자는 명백하게 거래위반을 입증할 수 있으나 판매자의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4)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과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농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개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사례가 없어 검토가 불가
- 5)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차상경매한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차상경매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6)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병과해야 하는 것은 아님

<b>7</b>	<p>1) 농안법 제74조에 의거 도매시장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지,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p> <p>2) 농안법 제74조의 거래질서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 후 과태료를 꼭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p>
----------	---

회신 내용

- 1) 농안법 제74조의 거래질서유지는 개설자가 시장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시에는 구체적으로 위반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임. 다만, 개설자는 거래질서유지는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2) 거래질서위반자에 행정처분후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농안법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중 하나를 선택 처분)

**8** 도매시장안전성검사결과 조치를 다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37조의2에 의거 실시한 도매시장안전성검사결과 조치는 출하제한 조치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전성검사를 다른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면 해당법률에 따라 조치 가능

**9** 농안법시행규칙 제44조(시설기준)의 별표1에 따르면 필수시설에 오물처리장이 있는데 우리도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이집하장 (청과류 쓰레기 등을 임시로 모아두었다가 쓰레기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를 오물처리장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시행규칙 제44조의 별표1-2에 따른 오물처리장은 쓰레기처리를 위한 시설이며, 다만 오물처리장은 필수시설임에 따라 오물(쓰레기처리)처리에 따른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수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간이집하장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시설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함

**10** 농안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경매사신고를 지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에 대한 문의

회신 내용

농안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농안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15일 이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권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임

**11** 1) 농안법상 단순가공물품의 정의 및 범위와 2차 가공식품의 도매시장의 취급 여부  
2)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또는 제3자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신 내용

- 1) 농안법시행령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거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차 가공식품을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과 달리 소득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예외규정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12

농안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제30조 제1항의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 할 경우 해당 도매시장법인을 제31조 제1항의 규정(수탁판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위반하였다면 제82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88조 제7호에 의거 도매법인을 행정처분 또는 벌칙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31조 제1항의 수탁판매의 원칙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도록 규정,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또는 매수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에는 농안법 제86조(벌칙) 제4호에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여 산지유통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안법 제3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신고를 하지 않고 도매시장에 출하한 경우에는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농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매법인이 수탁판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13

도매시장법인이 신용협동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겸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도매시장법인 신용협동조합을 개설한 사례는?

회신 내용

농안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에는 겸영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 등의 경우에 농안법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은 신용조합업무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도매시장법인이 별도의 신용조합에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은 겸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신용조합에 자본 투자여부는 파악된 자료는 없음

14

채소경매장내 중도매인점포 형태로 철조망으로 설치한 경우 중도매인 점포에 해당되어 시설사용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중도매인의 점포형태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도매시장의 시설이 경매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중도매인점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사용료 부과는 타당하지 않음

15

휴업중인 중도매인이 위법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자가 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할 경우 행정처분 가능 여부

회신 내용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82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별표3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임. 휴업중인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휴업종료 후 업무정지 처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가중사유(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어 가중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6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안법에 의하여 국가, 지자체 외에 개인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안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개인사업자가 유통회사법인(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을 설립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됨

17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의 농산물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하한 경우 농안법 위반 여부

회신 내용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때에는 농안법 제82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중도매인의 농산물 출하여부는 농산물의 실소유주(대금입금받은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도매인이 농산물 출하대금을 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경우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18

상장예외품목 허가 중도매인이 수입과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거래 물량을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

회신 내용

농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비상장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상장예외품목 허가 중도매인이 상장예외 품목 취급조건을 따르지 않았다면 상장품목 중도매인으로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19

농업인이 아니지만 농지임대료를 현물로 받아 소유한 경우 도매시장에 출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농안법상 출하자의 개념 질의

회신 내용

농안법 제30조에서는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하자는 생산자(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축협 및 농안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회사법인 등)을 의미 하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산지유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귀하께서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하 할 수 없으며, 산지유통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면허세가 있음

20

대구시 도매시장운영조례의 별점제도를 개정하여 별도지침을 마련할 경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허가취소, 재허가 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에는 별점제도가 없으며, 다만 우리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표준(안)(‘07.7) 제116조에 별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규정표준안은 개설자의 무분별한 행정처분보다는 합리성과 객관적인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것으로 별점등이 가중처분 등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자체적인 별점규정을 근거로 한 누적 점수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또는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농안법에 위반될 수 있음

21

도매시장내의 중도매인간 거래시 판매자 및 구매자의 행정처분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비상장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의 별표에 따라 농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중도매인은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조치)후 농안법 제74조의 거래질서 유지에 따른 조치 후에 행정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조치 후 행정 처분이 바람직, 또한 실질적으로 중도매인이 판매하는 경우 구입자가 중도매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여건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2**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의 별표3의 행정처분 기준의 일반기준 및 개별 기준에 대한 질의  
 - 시행규칙 제56조 별표의 개별기준 나의 7호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농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 질의

회신 내용

농안법시행규칙 제56조 별표3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행정처분 순서는 1차, 2차, 3차 순으로 하며, 3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가중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이내, 지정(허가,승인,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처분순서인 업무정지 6개월이내의 행정처분을 한 후에는 허가 취소 할 수 있음.

**23** 농안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에 외의 자에는 도매시장내 직판상인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령에서 도매시장내 직판상인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외의 자에 도매시장 직판상인도 해당됨

**24** 위탁자의 수탁물량을 도매시장 기여도(구매, 가공) 등에 따라 경매사가 상장 순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에는 경매사가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매순의 결정, 가격평가, 낙찰자 결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매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 가능함

25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약정 파기와 중도매업 허가취소와는 별개인지와 또한 3개월 무거래실적으로 허가취소 2일전에 개설자에게 휴업신청 가능 여부

회신 내용

중도매인이 3개월간 무실적인 경우 농안법 제82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56조 별표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허가취소에 해당됨 다만, 법인과 의 중도매인간의 거래약정 파기후 중도매업 허가취소와는 별개사항이며, 또한 3개월 무거래 실적으로 허가취소 2일전에 개설자에게 휴업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여부는 휴업신청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참고로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휴업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중도매인의 휴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

26

- 1) 우리 도매시장은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수산물은 출하자의 전품목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있는데, 타도매시장의 경우 출하자의 부적합 품목만을 제한(서울가락시장 등)하거나 출하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를 제한하는 도매시장도 있는데 적절한 조치 방법은?
- 2) 경매전 시료를 수거하였으나 물품이 도매시장 외부로 유통된 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도매시장에서는 이미 유통된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는?
- 3) 농안법에는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 폐기시 비용주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생산자와 출하자가 다를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 1) 농안법 제38조의2 및 농안법시행규칙 제35조의2에 규정은 안전성 검사결과 미달품이 발견될 경우 모든품목에 대해 출하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매 시장 출하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출하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2) 도매시장 부적합농산물이 유통된 경우 농안법상에 규정된 것은 없음
- 3) 농안법상 부적합농산물 폐기는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27

- 1)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것이 도매시장경영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 2)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들로부터 소포장 작업을 위탁받아 소포장 할 경우 경영사업에 포함되는 지 여부
- 3) 중도매인이 낙찰 받은 물건을 법인이 사서 소포장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반 여부

회신 내용

- 1)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업 행위에 해당되어 농안법 위반사항임 (농안법 제2조 제7호 도매시장법인의 정의 위반)
- 2) 도매시장법인은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농안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6에 따라야 하므로 농안법에 위반됨
- 3)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의 물건을 사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업 행위에 해당되어 농안법 위반사항임

28

- 1) 도매시장법인이 경영사업을 수행하려는 바 생산자단체(영농조합)의 지분을 인수하여(공동출자) 산지에서 가공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농안법 제29조의 산지유통인등록에 위배되어 경영사업을 할 수 없는 지 여부
- 2) 도매시장법인이 경영사업으로 산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매매할 경우 농안법 제35조의 제1항 규정 위반 여부

회신 내용

- 1) 도매시장법인이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 수탁, 매수한 농산물을 산지유통인 업무와 별개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2) 도매시장법인은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농안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6에 따라야 함으로 농안법에 위반이 됨

29

- 1) 공판장 장소 이전시 농안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소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를 준용하여 개설자(조합장)가 목포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개설허가권자(전남도지사)에 신청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 2) 농안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장소이전시 장소이전허가신청서,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의견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이 없음, 그러므로 공판장의 신규개설이 아닌 장소이전이므로 시장의견서 없이 직접 개설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도 법률적 위배가 안 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1) 농안법 제43조에 따라 공판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과 달리 공판장의 이전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 따라 개설승인의 규정에 따라 이전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공판장의 경우 개설승인시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다만,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시임에 따라 도매시장 이전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30

- 1) 도매시장법인 임직원이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김치 제조업 영업을 하고 있으며 농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김치공장에서는 절임배추를 생산하여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일반판매만 하고 있음)
- 2) 2008년도 도매시장의 절임배추 취급허가 품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관계로 법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농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은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에 전담토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김치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김치를 유통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도매시장 법인의 취급품목인 절임배추를 유통시키는 것은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일반판매만 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에 해당 될 수 있음

31

- 1) 도매시장버인은 월별로 개설자에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월에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면적으로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2)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시장사용료 납부가 가능하다면 사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서 납부하여야 되는지?
- 3)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약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유없이 중도매인과 보증금 체결 등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1) 도매시장개설자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전자거래 물량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개설자가 정한 요율로 총액을 산출하고 세부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으로 기준으로 산출함, 1개법인의 경우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총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징수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을 거래금액, 매장면적을 병행 부과 가능
- 2) 매장면적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로 동일부류 도매시장법인 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매장 전체면적 중 해당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비율만큼 총액을 안분하여 사용료 부과 가능
- 3) 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도매시장법인과 거래시 거래약정(보증금, 담보제공 등) 체결후 거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거래당사자 쌍방이 약정조건이 안맞을 경우 조건 불충족으로 약정체결이 안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도매시장법인이 약정체결을 거부하지 못함



32

중도매인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 월간최저거래금액 7번이상 미달되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

회신 내용

해당 중도매인이 업무정지 기간중에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농안법 제86조 제8호에 따라 형사고발조치하고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허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3

- 1) 중도매인이 같은 시장내 타 도매시장법인 소속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중개를 부탁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 2) 중도매인이 타도매시장이나 산지공판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3) 중도매인이 위반행위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및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회신 내용

- 1) 중도매인은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개설자가 부류별로 허가를 하고 있으며, 농안법 제31조에 따라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할 수 없음
- 2)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중도매인이 타 도매시장 또는 산지공판장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농안법에 위반됨. 다만 상장예외품목으로 중도매인이 상장예외품목을 타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3)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농안법에 따라야 하며, 행정처분의 일반적인 사항 등은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위반행위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시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년도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사후에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2-3년 동안 농안법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34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 상장된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사가 경매를 주관 하면서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무자격자 즉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그 직원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을 때 위반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28조에서 경매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사의 업무는 경매우 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낙찰자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도매인이 그 직원을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도매인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농안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농수산물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담당자께서는 고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중도매인, 경매사등에게 주의 등 행정지도 후 고의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 할 때에는 농안법 제74조 또는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행정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5

농안법상 중도매인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일시(이 경우는 무실적 연속 2개월 29일 진행중)에도 휴업처리 가능 여부

회신 내용

- 1) 중도매인의 휴업신청은 정당한 경우 휴업이 가능함. 다만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2호의 경우에 무실적 기간에 휴업기간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중도매인 3개월 무실적 거래에 2일이 부족한 경우에 휴업종료후 2일 이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3개월 무실적에 해당되어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

36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을 '97. 5. 3 지자체인 목포시(출바비율 23.5%, 목포농협,수협, 축협 각각 25.5%의 비율로 공공출자하여 자본금 5억으로 (주)목포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설립후 운영중 '02.2.25 지자체 출자지분만을 농협에 매각 하였는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어려움에 있어 당초 지자체(목포시)가 공공출자 하였기에 일정부분 농,수,축협 출자지분 등을 인수 또는 추가 출자 등 시비지원 (시설,운영시스템,간접시설, 도로 등 투자)시 법적인 문제 여부

회신 내용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지방도매시장이며, 개설자가 목포시임. 이에 따라 시설 개보수 등 투자부분은 목포시가 수행할 수 있음, 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출자법인을 설립 하여 운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출자법인이 도매시장 관리 및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도매시장이 강릉농수산물 도매시장임.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공출자법인은 지자체, 관리공사, 농림수협등이 출자할 수 있음에 따라 목포시가 (주)목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분을 인수 또는 출자하는 것에는 농안법상 제약이 없음

37

중도매인이 8.11~9.10까지 무실적인 경우 30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는지, 개월을 기준으로 9.1~9.30까지만을 기준으로 1개월 무실적으로 처분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25조 제6호에 따라 1개월 무실적일 경우 1차 주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에서 1개월은 달력에 의하되(28~31) 1일부터 31까지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중도매인이 8.11부터 9.10까지 무실적인 경우에는 1개월 무실적에 해당됨. 만일 1개월이 1일부터 31까지만을 1개월로 한다면 무실적이 31~60일까지 무실적인 경우에도 처분에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음.

38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매일 13%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음. 중도매인으로서 법인과 아무런 약정없이 부과하는 13%의 이자는 법정한도를 넘어 부당하다고 생각됨.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합당 여부, 합당하지 않다면 농안법 및 다른법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 유무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상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동사항은 농안법이 아닌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연체료는 연30%이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미수금에 따른 연체이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에 조정 등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39

- 1)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약정서에는 “약정기간은 그 만료 1개월 전 까지 당사자 어느 쪽에서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1년간씩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그 후도 그와 같기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법인에서는 ‘08.12.31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인에 대해 약정해지 통보(‘08.11.24)하였음.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이 약정기간 만료전에 약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중도매인은 재약정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의 영업능력, 과거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약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 해당중도매인은 거래실적이 저조하여 ‘06-’08년 사이에 1개월 무실적 5회, 2개월 무실적 6회, 분기실적 미달 7회로 거래실적 행정처분 19회(경고 9회, 업무정지 10일 1회 등)를 받았고 거래금액도 크지 않아 이러한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이 재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 여부
- 3) 또한 현재 농안법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약정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 대한 약정해지 행위가 정당한지의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련근거, 법 유무 여부
- 4) 만약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과의 약정을 연장하지 않았고 타도매시장법인도 해당 중도매인과 약정체결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도매인이 어느 법인과도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거래실적이 3개월 무실적이 되면 중도매업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럴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리사무소가 직권으로 특정 도매시장법인에게 약정체결하게 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 1) 도매시장법인(갑), 중도매인(을)간의 약정서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에 연장한다고 명시되었으나 “갑”과 “을”의 타당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임, “갑”과 “을”의 약정에 관한 해석은 상호협의를 우선임
- 2) 재약정 불가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약정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불공정 계약 여부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람
- 3) 약정해지시는 1번과 같이 약정서에 명기되어 있을 것임(통상, 상호 협의/관계법령/법원소송 순서) 결국 , 농안법에 약정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소송으로 가서 약관심사(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타당성 검토가 있을 것임
- 4)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개설자가 허가를 해준이상 주거래 법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도매시장개설자의 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0

시장도매인에게 시장사용료 부과시 농안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장도매인이 물품을 산지에서 매수 할 경우 매수금액과 판매금액 중 적용해야하는 거래금액 기준은?

회신 내용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농안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매시장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매시장에 반입되기 이전 산지의 매수금액이 아니라 당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말함

41

위탁수수료를 최초 경매가격에서 징수하는 지 아니면 물품의 하자금액을 정산하고 출하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판매원표에 최종적으로 기입되는 가격에 기초하여 정하여지며, 판매원표의 정정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당사자의 합의하에 판매원표를 정정한 후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동사안의 경우 판매원표의 정정여부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실치 않으나 판매대금의 정산 및 위탁수수료의 부과는 최종적인 판매원표상의 가격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42

도매시장에서 중도매법인의 임원(이사)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였다면  
농안법 제88조(벌칙)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인  
그 중도매법인 임원 당사자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안법  
제89조(양벌규정)에 의거 그 임원이 속한 중도매법인의 대표인  
중도매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부과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농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82조 제5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농안법 제8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지유통인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 제89조의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안법관련 질의응답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 동 자료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도매시장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회신한 내용임



## 1. 중도매인 경영관련 법률자문

□ 자문일시 : 2004. 6. 21

### □ 사실관계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은 경매동과 시장도매인동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동은 2004.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위동의 입주자대표들이 3개의 청소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청소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바, 위 3개 업체 중 1개의 청소업체 대표가 강서시장의 중도매인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습니다.

### □ 질의내용

- 중도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 대표이사가 강서시장내 청소업체로 선정될시 중도매인이 청소업무와 겸업시 농안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질의

### □ 법률자문 결과

-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겸영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중도매인의 경우 겸영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소 업체의 선정이라는 판매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아니한 업무를 겸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농안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됨.

## 2. 중도매법인 전환 허가 신청 후 개인 중도매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중도매업 허가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 허가의 유효성 유무

□ 법률 자문 일시 : 2003. 8. 21(목)

### □ 사실관계

- 중도매업 법인전환 허가 신청 : 2002. 8월 초
- 법인전환 허가 요청(공사 → 시장) : 2002. 10. 2
- 대표이사 손채화 사망 : 2002. 10. 7
- 서울시 중도매법인 허가일 : 2002. 10. 11

## □ 법률 자문 내용

### 질의 1

상기 사실 관계와 같이 개인 중도매인이 중도매업 법인전환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중도매법인에 대한 허가가 유효한지 여부

### 답변 1

종전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의 주체는 당해 법인이고 피허가 대상 또한 당해 법인인 것이 명백한 것인 바, 설립 법인 구성원 일부가 사망, 자격 상실 등 적법한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자체의 존립 및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보여짐. 농안법제25조제3항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농안법제25조제3항 : 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질의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시행규칙」 제20조(허가절차) 제1항을 보면 농수산물공사사장이 공개모집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시장에게 중도매업 허가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상기 사안의 경우 당초 중도매업 법인전환 허가 신청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사 사장은 중도매인으로 적격하다 판단하였으나, 신청 후 허가 전에 중도매법인 허가에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결국 상기의 중도매법인 허가는 부적격자에게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 답변 2

중도매업 법인전환 허가는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적격 여부판단 또한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표자의 사망이 당해 법인의 중도매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공사의 “중도매법인관리운영 지침”은 시장의 영업관행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해 정한 업무처리 기준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 지침의 위배를 들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행정행위를 무효화할 수 없음.

###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지정조건과 관련한 문제

#### 가. 시장도매인 주주의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행위(지정조건 제7호)와 관련하여

지정조건 위반이 있게 되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3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처분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도매인은 해당 원인 발생 책임 임원을 해임하여야 하고(농안법 제36조 제2항,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행정처분(경고, 지정취소)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3).

이렇게 지정조건 위반과 관련하여 시장도매인 해당 임원을 해임하게 되면 그 임원이던 시장도매인 주주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 귀 공사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 의하면, 시장도매인의 현실상 법인 임원의 해임이 있게 되면 이에 의하여 법인 주주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견서에서는 시장도매인 임원 해임시 이로 인한 시장도매인 주주변동은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지정조건 제8호 위반이 되어 농안법 제82조 제2항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즉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원 해임 요구와 이로 인한 주주변동으로 인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시 행정처분을 가하여야 하는지 문제).

#### 나. 시장도매인 일부 주주가 스스로 주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시장도매인 일부 주주의 주주 포기 . 주주 포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나, 본건에서 그 의미는 해당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주주로서의 지위 및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주 변동이 있게 되면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농안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다. 질의의 요지

귀 공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전제 아래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장도매인 주주 변동이 있으면 이는 지정조건 제8호 위반에 해당하는데 조건 위반(특히 본 건의 경우에서처럼 임원해임에 의한 주주변동, 주주포기로 인한 주주변동)로 인하여 시장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 . 귀 공사는 "지정조건에 따라 행정조치를 이행할 때 상위법인 농안법과의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적용 우선 순위 여부"에 대하여도 질의하셨습니다. 이러한 질의 취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조건 위반으로 시장도매인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또 이로 인한 주주변동을 원인으로 시장도매인에게 행정처분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본 건의 사유(임원 해임, 주주포기)로 인하여 주주변동이 일어날 경우에도 지정조건 및 농안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될 것이어서, 본 의견서에서는 따로 질의를 구분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 라.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 1) 시장도매인 주주의 주주포기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검토

#### □ 농안법 및 지정조건의 내용

지정조건 제8호에 의하면, 시장도매인은 정관 내용에 따라 주주변동을 할 수 없고, 시장도매인 정관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주를 변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에게 특별한 경우 아닌 주주변동이 있게 되면 이는 지정조건 위반에 해당되어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안법 제82조 제2항).

그러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주주포기로 인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일부 주주가 스스로 주주권을 포기할 경우가 지정조건에서 적시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시장도매인 주주의 주주포기가 지정조건에서 적시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조건 제8호에서는 특별한 경우의 예로 '사망, 장기입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사망, 장기입원 등은 해당 주주가 자신의 주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때로써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주도 어쩔 수 없이 주주권 행사가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에서처럼 주주가 스스로 주주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정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건 시장도매인 주주의 주주포기가 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자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지정하여 이를 근거로 시장도매인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가함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주 개인에 대하여는 그의 자유 및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 그리고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 □ 시장도매인 주주의 주주포기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 ○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우리 헌법 제10조(인권의 보장) 및 제23조(재산권의 보장) 규정에 의하면 국민은 자신 소유 재산권 처분에 자유를 가지며, 우리 상법 규정(제335조, 제341조 등)에 의하면 특별히 정관 규정으로 주식 양도시 이사회승인을 거치게 하는 경우나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 소유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관으로 주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태로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6판, 348쪽)

그러므로 도매시장 개설자가 우리 헌법 및 상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주주로서의 주주 지위 이전 금지라는 내용을 시장도매인 지정조건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가함은, 위 지정조건 설정이 우리 헌법 및 행정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당결부금지원칙」 .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인근 공원에 미화사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호텔건축의 허가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자체가 위헌·위법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비례원칙 위반

시장도매인 주주의 주주포기로 인하여 시장도매인이 행정처분을 받게 됨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시장도매인에게는 전혀 책임 없는 사유(예를 들어, 시장도매인 주주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농안법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가함은, 즉 시장도매인 주주의 일방적인 주식양도로 인한 해당 지정조건 위반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이를 막을 수도 없었던 시장도매인에게 도매시장 개설자가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해당되어 우리 헌법 및 행정법의 원칙인 「비례원칙」 . 비례원칙이란, 행정작용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침해적이어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소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도매인 법인의 일부 주주의 주주포기가 있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하여 나머지 시장도매인에게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함은 우리 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결부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농안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도매인의 지정조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여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유재량이며, 동법시행령 별표3(1.일반기준 마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반사항의 내용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 주주가 스스로 주주포기를 하더라도 그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법령에 반드시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2) 시장도매인 일부 주주의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검토

### □ 시장도매인 주주의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건 지정의타당성 여부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농안법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농안법 제2조 제8호), 도매시장에서의 농수산물 영업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를 가진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지정조건 제7호)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라는 농안법 취지상 양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 헌법상 보장된 영업자유의 원칙(제15조)에 비추어 시장도매인 주주에 대하여서까지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강서시장 개설 당시 상황 및 시장도매인 주주의 영등포시장 영업 허가시 시장도매인 아닌 다른 상인의 상대적 불이익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도매인이 책임질 수 없는 주주의 일방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시장도매인이 지정취소등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례원칙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시장도매인 주주가 영등포시장에서까지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영등포시장 내의 다른 영세상인들의 영업권 침해라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시장도매인 주주의 영등포시장에서의 영업 제한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합당한 재량판단으로 보고 아래의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지정조건 제7호 위반으로 인한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장도매인이 지정조건 제7호를 위반하게 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안법 제82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시장도매인에게 경고, 업무정지3월, 지정취소 처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안법 제3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도매인은 위 처분의 이유가 된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에게 임원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도매인이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게 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에게 경고, 지정취소 처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별표3).

#### □ 임원해임으로 인한 주주변동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농안법 제3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도매인이 해당 임원을 해임하게 되면 그 임원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시장도매인 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도매인 주주의 변동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조건 제8호 위반을 이유로 시장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본 건 임원해임으로 인한 주주변동은 지정조건 제8호의 "특별한 경우에 의한 주주변동"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특별한 경우"라 함은 해당 주주가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때라고 할 때, 본 건 주주변동은 해당 주주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주주권 행사 곤란이므로 지정조건 적시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중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정조건 제7호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임원이 해임되고 시장도매인이 농안법 제82조 제2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다시 주주변동을 이유로 하여 시장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 소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장도매인 주주가 영등포시장에서 영업을 하여 지정조건 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을 해임하여야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시장도매인에게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임원의 해임과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지정조건이 강서시장 개설 당시의 상황과 다른 영등포시장 내의 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 해임으로 인한 시장도매인 주주변동은 지정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러한 때에는 주주변동을 이유로 재차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4. 7. 12.-

#### 4. 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기준

##### □ 사실관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서울시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각 규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 공사는 중도매인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중도매인의 대금결제 능력의 미비 등을 우려하여 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 대하여 기존의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제채납 여부 등)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 질의내용

- 공사는 ①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받고자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행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② 실질적 심사기준을 지침으로 제정할 경우 어떠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

##### □ 법률자문 결과

- 상기 허가는 법률적 성질이 '특허'로 판단되며, 공사 내지 서울특별시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중도매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일정요건을 자격을 추가로 심사하여(실질적 심사)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만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판단함
- 지침 제정과 관련 허가신청 공고 시 허가신청 외 실질적 심사를 위한 취지, 관련 서류 제출(과거\_년간 신용불량자가 아님 등)과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명확히 공고하여야 함.

## 5.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위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의 요지 및 답변]

(질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반입 즉시 시장이 지정하는 반입신고소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였을 경우 불법 개인위탁행위(농안법 제31조 제2항)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질서위반행위(농안법 제74조)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 (답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인 농안법 제3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품목을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허가이므로, 그 기간 내에 허가된 품목을 거래하면서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래수량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에서는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에게 반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상장예외품목 허가조건 이행각서에도 반입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바, 반입신고의무의 이행은 중도매인의 준수사항일 뿐만 아니라 허가의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매시장 개설자(가락농수산물시장의 경우 서울시장)가 정한 규정이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의제할 규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반입신고의무 불이행의 경우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입신고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농안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3.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반입신고의무의 이행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이는데, 반입신고의무의 위반이 지속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면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중도매인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관련

### □ 사실관계

- 중도매인 A는 2004.9경부터 2004.10경까지 거래실적이 없어, 공사에서는 A (점포폐쇄로 인한 점포 내 부재)를 만날 수 없는 사정으로 2004.11.26 전화로서 A에게 2개월 무실적거래 사실과 이로 인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통보 하였는바
- 중도매인 A는 2004.11경에도 거래실적이 없어 “3개월 무실적”에 해당하는 경우임으로 공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제 82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시장에게 중도매인 허가취소를 요청

###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장은 중도매인 A에 대하여 거래실적이 없음으로 주의 및 경고 처분할 때 A에게 주의장 및 경고장을 발송하지 못하고 전화로서 위 행정처분 내용 및 허가취소 가능성을 통보한 사정이 있는바, 현재 ADP 대한 3개월 무실적거래를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 법률자문 결과

- 중도매인 ADP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농안법상 중도매인의 3개월 무실적 거래를 요건으로 하고 A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와는 그 직접적인 법률적 관계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에서 A에게 위 주의나 경고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3개월 무실적거래를 이유로 한 ADP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다만, 중도매인 A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문서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으로 판단함

## 7. 도매시장법인 경영표준안 도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귀 공사는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법인을 통하여 도매시장법인 경영표준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자본금 증액(50~80억원)
-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성 자산 보유(현금 배당 제한)

귀 공사는 위 도매시장법인 경영표준안 도입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1)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위 경영표준안 준수를 명할 수 있는지, (2) 위 경영표준안 준수를 도매시장 법인 지정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3) 위 경영표준안 내용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합니다), 그 하위법령 또는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 [질의의 요지 및 답변]

#### □ 도매시장법인들에게 경영표준안 준수를 명할 수 있는지

##### ○ 관련 규정

농안법 제 81조(명령)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구체적 검토

위 조항에 의하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장에게 업무처리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서울시장은 도매시장법인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업무처리의 개선”에는 출하자인 농어민의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가락농수산물시장의 거래 활성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농어민 보호, 거래 활성화 및 합리화를 위한 경영표준안의 도입도 “업무처리 개선”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할 경우 도매시장법인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반발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고지를 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경영표준안 준수를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관련규정

농안법 제 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

농안법시행규칙 제 16조 (업무규정)

① 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정조건)

서울특별시장이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지정조건 부가에 대한 일반론

위 각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도매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로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영표준안의 내용이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경영표준안의 내용을 지정조건으로 부가하여도 무방합니다.

## ○ 경영표준안을 지정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귀 공사의 경영표준안은 10가지가 넘는 새로운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을 지정조건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정조건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전항에서 언급한 명령 등으로 도매시장법인들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귀 공사가 주로 언급한 3가지 사항을 지정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본금을 매출액에 따라 50~8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영표준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규모는 위 조례 시행규칙 제 5조에서 정한 지정조건에 해당하므로, 위 자본금 규모 유지를 지정조건으로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위 조례 시행규칙 제 8조 제1항 [별표2]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최소 자본금을 50억원, 수산 및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최소 자본금을 30억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기존 도매시장법인들은 10년 이상 위 조항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 조항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많은 최소 자본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들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거나 경영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귀 공사는 수산 및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50억원 미만의 최소자본금을 적용할 수도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경영표준안이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은 더욱 더 낮다 할 것입니다)



둘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영표준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의 자격은 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지정조건에 해당하므로, 임원 중에 사외이사를 두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사외이사제도는 상법에도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상법 제38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험업법(제15조)등 다수의 법률에서는 강제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을 투명화하여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거래의 활성화 및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외이사제도를 지정조건으로 포함시켜 이를 강제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현금성 자산 보유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경영표준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한 기존의 제도로는 거래보증금제도가 있고, 거래보증금은 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거래보증금은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바, 최근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 부도시에 미지급 출하대금이 거래보증금의 20배 정도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출하대금 담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① 거래보증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채택하거나 ② 현금 보유액 유지를 채택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만 현금으로 보유하게 하고 기존의 거래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현금 보유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그 금액이 클 경우 경영권이나 재산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를 강제하는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거래보증금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 경영표준안 내용을 농안법, 그 하위법령 또는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위와 같은 경영표준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을 제약하는 면이 있으므로, 서울시장의 행정처분(지정조건에 포함)으로만 규율하기보다는 농안법 시행규칙 또는 서울시 조례나 그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농안법에 위 경영표준안의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기존 농안법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부적절하다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쉽게 개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사료됩니다.

## 8. 시장도매인의 과세 문제와 관련

### □ 질의사항

귀사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고 합니다)상의 시장도매인의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1) 농안법상의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위탁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바, 농안법상의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도 위탁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되는지 여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2) 농안법상의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바, 농안법상의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위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 □ 검토의견

#### ○ 부가가치세 면제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합니다)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0호,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의 제20호는 도매시장법인의 위탁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에 관하여는 면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시장도매인의 위탁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도매인도 위탁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20호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특례 문제

중도매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869호) 제19조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4조에 의하여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의 특례규정의 내용은 소득세법상의 특례규정과 동일합니다. , 시장도매인의 경우 법인이므로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에 관하여만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은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법인을 이로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120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위 가산세 적용 제외법인으로 하고 있고,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4조에서 중도매인에 대하여 위 가산세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중도매인에 대한 위 가산세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도매인에 대하여서 중도매인에 대한 위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은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4조의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으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의견들을 드리오니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 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서는 위에서 살펴본 사안과 쟁점에 국한하여 의뢰인의 업무 판단 및 처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용도에 또는 의뢰인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이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 사무소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4.16, 2008.07.30)

제2조(도매시장의 개설)(개정 2001.04.16)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04.16, 2008.07.30)

제2조의2(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신설 2001.04.16)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정 기 휴 업 일	영 업 시 간
양 곡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7:00 ~ 18:00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0:00 ~ 24:00
화 회 부 류 약 용 작 물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0:00 ~ 24:00
축 산 부 류	일요일, 법정공휴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9:00 ~ 18:00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 ①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1.04.16, 2008.07.30)
- ②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01.12.31)

구분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거래금액의 1천분의 10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화회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거래금액의 1천분의 30
수산부류	선어·패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건 어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	소: 거래금액의 1천분의 13 돼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 기타: 거래금액의 1천분의 10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③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제2항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2001.04.16 개정)
- ④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품의 범위는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1.12.31, 개정 2008.07.30)

제3조의2(장려금 등의 지급)(신설 1989.03.30)

-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1.04.16 개정)
-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04.16)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은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04.16, 2008.07.30)

제3조의3(전자거래) (신설 2008.07.30)

-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로 하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중도매업의 허가 등)

-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6, 2008.07.30)
- ② 중도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6, 2008.07.30)
- ③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6, 2008.07.30)

제5조(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 부류별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조개정 2004.03.30)

구분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개인	법인	
양곡부류	300가마/80kg	1,000가마/80kg	-
청과부류	2,500만원 (특수품목은 1,500만원)	6,500만원	1억원
수산부류	선어,패류	2,500만원	-
	건어	1,600만원	-
축산부류	5,000만원	8,000만원	-
화훼부류	200만원	-	-
약용작물부류	200만원	-	-

제6조(경매사 관리 및 매매참가인 신고) (개정 2001.04.16)

- 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1.04.16 개정)
- ② 도매시장에서 도매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그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6, 2008.07.30)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거래참가증을 발급한다.(개정 2001.04.16, 2008.07.30)
-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01.04.16 개정)

제6조의2 삭제(2001.04.16)

제7조(관계인의 영업제한 등)

- ①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 개설구역 안에서 도매시장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하지 못한다. (개정 2001.04.16)
-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를 수탁하거나 도매시장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001.04.16 개정)
- ③ 중도매인은 중도매업무가 허가된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중개 또는 판매하거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1995.06.10)
- ④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이 식품위생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04.16)

제8조(시설의 용도 지정 등)

-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영업인이 사용하는 도매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조건은 시장이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 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1.04.16, 2008.07.30)
- ②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2001.04.16 개정)
- ③ 도매시장내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1985.09.10, 2008.07.30)
- ④ (삭제 1995.06.10)
-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전기, 가스, 상하수도, 그 밖의 시설 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의 매월분을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한다. (개정 2001.04.16, 2008.07.30)
- ⑥ 제5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04.16, 2008.07.30)
- ⑦ 시설사용자가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1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1.04.16 개정)
- ⑧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반입·반출 구역을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07.30)

제9조(시설의 전대금지, 시설의 반환 등)

-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1.04.16, 2008.07.30)
-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 도매시장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도매시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하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04.16)

- ③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 도매시장시설 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6, 2008.07.30)

#### 제10조(관리책임 및 처분제한)

-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 및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1.04.16, 2008.07.30)
- ② 도매시장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그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폐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 제11조(시설사용의 규제)

-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개정 1999.06.30)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 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개정 1999.06.30)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개정 1999.06.30, 2008.07.30)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개정 1999.06.30)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개정 1999.06.30)
  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개정 1999.06.30)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8.07.30)
  8.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신설 2008.07.30)



## 제12조(대금결제)

- ①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위탁매매 대금의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01.04.16 개정)
-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의 범위 안에서 그 대금을 지급한다.(2001.04.16 개정)

제1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자간 담합 등 정상적인 가격 형성에 저해되는 행위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6.30)

## 제14조(신고)

- ① 삭제(2001.04.16)
- ② 중도매인은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1995.06.10, 2007.03.08)

## 제15조(영업보고, 감독)

-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을 익월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6, 2008.07.30)
-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6, 2008.07.30)
- ③ 시장은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과 거래질서 유지 또는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경매사, 매매참가인, 부속영업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1.04.16)

제16조(권한의 위탁)(신설 1985.09.10)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서울특별시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1.04.16, 2003.09.25)

1. 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등의 관리(개정 2001.04.16, 2008.07.30)
2. 제2조의2에 따른 정기 휴업일 및 영업시간의 조정(개정 2001.04.16, 2008.07.30)
3. 제3조제4항에 따른 규격출하품의 범위 결정 (신설 2001.12.31, 개정 2008.07.30)
- 3의2. 제3조의3에 따른 전자거래시스템 사용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7.30)
4. 제4조에 따른 중도매인 휴업신고의 접수 및 처리 (개정 2001.12.31, 2008.07.30)
5. 제6조에 따른 경매사 임면 관련서류, 매매참가인 신고서, 변경신고서의 접수·처리 및 거래 참가증의 교부 (개정 2001.12.31, 2008.07.30)
6. 제8조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1.12.31, 2008.07.30)
7. 제9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의 전대사용, 신·증축 등의 승인, 시설물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1.12.31, 2008.07.30)
8. 제11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사용의 규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01.12.31, 2008.07.30)
9. 제12조에 따른 대금결제 청구의 접수 및 처리 (개정 2001.12.31, 2008.07.30)
10. 제13조에 따른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개정 2001.12.31, 2008.07.30)
11.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 및 감독 (개정 2001.12.31, 2008.07.30)
12.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조치 (신설 2001.12.31, 개정 2008.07.30)

제16조의2 삭제 (2001.04.16)

제17조(시행규칙)(개정 1985.09.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2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12.10, 서울특별시규칙 제37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9.08.06)

제3조(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한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공판장 중도매인·공판장 매매참가인 등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4조(상한 수)

-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조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지정절차 등)

- ① 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법 시행령 제 1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이하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 공사사장(이하 “농수산물공사사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공사사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
  2. 제1항에서 정한 신청 서류의 사실 여부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시장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⑥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 ⑦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법인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법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 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⑧ 시장은 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⑨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⑩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요건과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및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제8조(자본금 규모)

- ① 도매시장별 법인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조(보증금 납부)

- ① 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연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③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나 정액 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시장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반환)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나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 제11조(순자산액 비율)

- ① 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율은 전연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 ② 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 제12조(법인의 인수·합병)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이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법인 및 합병이 되는 법인의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의 입증서류
- ② 시장은 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부비치)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표준송품장
  2. 판매원표
  3.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4. 표준정산서
  5. 매수 상장기록부
  6. 정가·수의매매 기록부

-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으로 입력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이나 그 내용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법인의 관리) 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공사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경영업무)

- ① 법인이 법 제35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 업무 수행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인이 경영 사업을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내용과 뚜렷이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휴·폐업 신고)

- ① 법인은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면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농수산물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출하자·유통인 및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법인이 폐업할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경매사 관리)

- ① 법인은 그 소속 경매사 중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경매사를 해임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제18조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경매사의 금지행위)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출하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등과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결정
3. 거래 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경매에 참여시키거나 낙찰시키는 행위
4.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5. 경매순서 조작
6.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7.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8. 그 밖에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9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안의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경매사 수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간 거래 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에 따른다.

제20조(시설사용 면적결정)

- ① 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중도매인

제21조(상한 수)

- ① 도매시장별 중도매인(중도매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 ② 시장은 품목 특성에 따라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을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허가조건)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하려면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 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3조(허가절차)

- 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공사사장이, 그 밖의 도매시장은 법인이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시장에게 중도매업 허가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상한 수 범위 안에서 중도매업을 허가하며, 허가 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4조(보증금 납부)

- ① 중도매인은 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 납부나 담보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도매인과 법인의 협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중도매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25조(보증금 관리)

- ① 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법인은 보증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27조(중도매법인의 관리)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공사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시설사용면적 결정)

-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면적 배정과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중도매법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4장 시장도매인

제30조(상한 수)

- ①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및 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및 농수산물 유통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지정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지정절차 등)

-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공사사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시장도매인 지정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
  2. 제1항에서 정한 신청 서류의 사실 여부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⑤ 시장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정여부는 제6조 제5항을 준용한다.
- ⑥ 지정유효기간은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⑦ 시장은 제30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며, 지정한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⑧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도매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전 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⑨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요건과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임원의 자격)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이나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및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제34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35조(보증금 납부)

- ① 시장도매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보증금을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연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출하 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나 정액 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시장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도매인이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37조(순자산액 비율)

-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 ②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않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38조(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39조(장부비치)

- ①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표준송품장
  - 2. 판매원표
  - 3.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 4. 표준정산서
  - 5. 판매기록부
-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으로 입력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이나 그 내용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시장도매인의 관리)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수산물공사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휴·폐업 신고)

- ① 시장도매인은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면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농수산물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공사사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출하자·유통인 및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장도매인 폐업시 이를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2조(시설사용 면적결정)

-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장 매매참가인

제43조(매매참가인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에 대한 거래참가증 발급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4조(경매참가)

-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매매참가인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 제45조(산지유통인 등록)

-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 2.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⑤ 시장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산지유통인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 2.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3. 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 4.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5. 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6.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7.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제47조(출하자 신고)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하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내줄 수 있다.
- ④ 시장은 신고절차 등 출하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출하예약 우대 조치) 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산지유통인 또는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불량 출하자 제재) 시장은 속박이·수량·중량 등 품질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준화 검사 등을 실시하여 불량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하 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수탁거부 등)

-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표준규격화가 미비하거나, 쓰레기발생 등 도매시장 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고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고시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으로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수탁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51조(매매방법)

- ① 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 위탁 또는 중개를 할 때에는 출하자과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③ 시장도매인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 금액, 매수 대금 지급일, 중개 상대자 등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

-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을 거래하려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양재동양곡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농수산물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공사사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교부한다.
- ④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표준송품장과 함께 반입 즉시 시장이 지정하는 반입신고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내역은 반입신고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제3항 및 이 규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제64조제1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 ⑥ 그 밖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3조(매매방법의 예외)

- ①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출하자의 동의하에 경매시작 전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도매시장별 거래여건 및 유통실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축산부산물물의 가격은 법인별로 부산물가격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부산물가격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출하자와 구매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4조(거래실적 등 관리)

- ① 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정산창구는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은 분기별로 분석 관리한다.

#### 제55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의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 ①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대량입하품
  - 2.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 3. 예약출하품
  -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
  -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 8.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 9.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농산물
  - 10. 파렛트(pallet) 적재 출하품 및 규격 포장출하품
- 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법인 및 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7조(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 ①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법인·중도매인에게 각각 판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 법인·시장도매인·기간 및 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법인·중도매인에게 각각 판매를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 ① 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수량,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 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한다.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한다.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경매절차) 경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상(차상)경매 등 경매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출하주)별, 품목별, 등급별, 개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 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 실시
  -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른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른 경매실시
  -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 라. 경매사가 출하자, 품목, 수량, 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60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장소)

-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는 별표 5와 같다.
-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정가 및 수의매매 절차)

- ① 정가 및 수의매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반입물품의 하차(경매장)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정가 및 수의 매매
  5. 판매원표 작성(낙찰자 및 낙찰단가, 금액 기재)

- ②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62조(판매원표 관리)

- ①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판매원표는 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 포함)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 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6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 ① 시장은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대금결제 내역 또는 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정산창구의 형식, 운영 및 관리방법은 도매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4조(대금결제)

- ① 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6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순자산비율을 확보한 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 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이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9조 및 제35조에 따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 제65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 ① 시장은 제9조 및 제35조의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 제66조(표준정산서)

- ① 표준정산서는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 ② 정산창구 또는 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제67조(표준송품장)

- ① 표준송품장의 서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②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표준송품장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 ① 시장은 제64조 제2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69조(출하자 손실보전금)

- ① 시장은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연도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0조(법인 등 공시내용)

-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변동사항
  3.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71조(시장사용료)

-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익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장사용료의 법인별 배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2.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제72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9.08.06)

### 제73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 ① 시장은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 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기 등 포장규격기준 이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않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2. 도매시장에서 다듬거나 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에서 다듬거나 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발생 행위별로 시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법인·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필요 경비를 법인·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재구입비 지원 사업
  2. 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장려금, 시장시설개선·장비구입·교육 및 홍보사업
  3. 쓰레기 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⑥ 부담금의 부과·징수·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4조(거래관계자의 표지)

-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6의 거래 참가증과 일정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75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6조(거래단위)

- ①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축 부산물은 생체 또는 지방이 포함된 고기의 중량을 기준한 품목별 등급을 설정하여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구분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러 품목을 통합하여 거래할 수 있다.

#### 제77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③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8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 ① 시장은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제79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위생 검사 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6)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명된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폐기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06)

### 제8장 시장시설

#### 제80조(관리비 등)

-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의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 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부기한 15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 ③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체납기간별 징수요율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 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 제9장 보 칙

제82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제8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 ① 법인·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도매시장 안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법인·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 제84조(평가의 실시)

- ① 시장은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사용 시설의 위치·면적·사용료 차등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평가 결과를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 제85조(환경의 유지)

-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시장이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쓰레기 적치, 오물투기 등으로 환경을 저해한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7조(명령) 시장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또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8조(벌점제도) 시장은 도매시장의 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특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른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9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의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등을 접수·처리한다.

제90조(권한의 위탁 등)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양재동양곡도매시장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농수산물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1. 제4조에 따른 법인의 상한 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법인의 지정 조건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법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법인의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폐업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상한 수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중도매인 허가에 관한 사항
10. 제26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
11. 제27조에 따른 중도매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30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제31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4. 제32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5. 제38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
16. 제40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제41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폐업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부 칙 (200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1]

[별표 2] [별표 2]

[별표 3] [별표 3]

[별표 4] [별표 4]

[별표 5] [별표 5]

[별표 6] [별표 6]

[별표 22] [별지 제22호서식](제58조 관련)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

[서식 2] [별지 제2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서식 3] [별지 제3호서식] 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서식 4] [별지 제4호서식] 경영 업무 수행 보고서

[서식 5] [별지 제5호서식] 휴업신고서

[서식 6] [별지 제6호서식] 폐업신고서

[서식 7] [별지 제7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증

[서식 8] [별지 제8호서식]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신청서

[서식 9] [별지 제9호서식]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

[서식 10] [별지 제10호서식] 시장도매인 신청서

[서식 11] [별지 제11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서식 12] [별지 제12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

[서식 13] [별지 제13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

[서식 14] [별지 제14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서식 15] [별지 제15호서식]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

[서식 16] [별지 제16호서식] 표준송품장

[서식 17] [별지 제17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서식 18] [별지 제18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

[서식 19] [별지 제19호서식] 월별 거래 실적 보고서

[서식 20] [별지 제20호서식] 거래특례 신청서

[서식 21] [별지 제21호서식] 거래특례에의한 판매결과 보고서

[서식 22] [별지 제22호서식] 거래성립 최소 가격 신청서

[서식 23] [별지 제23호서식] 판매원표

[서식 24]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정산서

[서식 25] [별지 제25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서식 26] [별지 제26호서식] 일일시황표

[서식 27] [별지 제27호서식] 거래확인서